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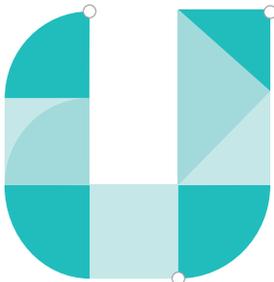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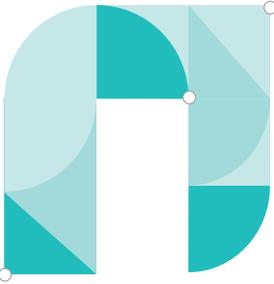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김수암 | 강채연 | 박진아 | 윤보영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구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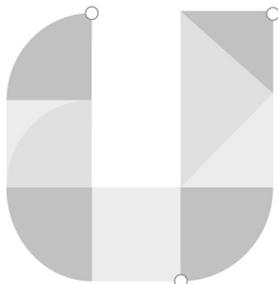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채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위원)

윤보영 (동국대학교 강사)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KINU 연구총서 20-03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저자	김수암, 강채연, 박진아, 윤보영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인도협력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주)현대아트콤(02-2278-4482)
I S B N	979-11-6589-017-9 93340
가격	9,000원

© 통일연구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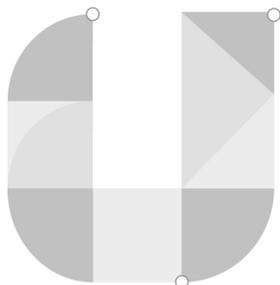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9
I. 서론 김수암·강채연·윤보영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방법	20
II. 정보의 자유의 국제적 보호와 북한의 관련 법제	
박진아	37
1. 국제인권법상 정보의 접근	40
2. 정보접근에 관한 북한의 법제도	58
3. 소결	80
III.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와 북한당국의 통제	
강채연·윤보영	85
1. 정보의 수집: 경로와 유형	87
2. 정보에 대한 해석과 보관	107
3. 정보의 교환: 공유와 확산	130
4. 정보의 변형: 가치판단과 응용	136
5. 정보접근에 대한 대응: 작용과 반작용	146
6. 소결	164

IV.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증진 방향 김수암	171
1.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추진 전략과 동향	173
2.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추진 방향	179
V. 결론 김수암	185
참고문헌	19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3

표 차례

〈표 I-1〉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32
〈표 I-2〉 심층면접 질문항목	33
〈표 I-3〉 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34
〈표 II-1〉 북한 법체계	59
〈표 II-2〉 북한이 비준·가입한 조약(2020.10. 기준)	82
〈표 III-1〉 사회주의문명 논의 구조	108
〈표 III-2〉 북한 개정형법을 통해 본 외부정보의 확산 동태	148
〈표 III-3〉 정보의 수집경로와 유형	166
〈표 III-4〉 핵심주제별 비교분석 및 평가 방식	169
〈표 IV-1〉 2019년 NED 지원 중 정보의 접근 관련 지원	178

그림 차례

〈그림 Ⅰ-1〉 정보의 가치 순환(data value cycle)	28
〈그림 Ⅰ-2〉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 연구 모형	29
〈그림 Ⅲ-1〉 북한 거주 시 한국제품 사용 현황	168

현재 북한 내 북한 주민과 북한당국의 이해가 가장 심각하게 충돌하는 영역이 바로 ‘정보’이다. 시장화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이 빠르게 증대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수, 보관, 공유, 처리 및 변환하는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둘러싼 주민과 당국의 이해충돌이 표출되는 대응 양식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과 양상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5년 OECD가 발표한 정보 중심의 역할분석체계 모형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모형을 조작적으로 도출하였다. 즉, 정보의 수집, 정보의 처리, 정보의 교환, 정보의 변형, 정보접근에 따른 대응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5단계 연구 모형을 조작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2018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먼저 국제인권법 체계에서 정보접근이 권리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사회권 규약 및 주요 지역 인권조약 등에서 독립된 개별 조항을 통해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표현의 자유, 공무에 참여할 권리, 건강권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안에 내포된 권리로서 인정되거나 이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국제인권법상 정보접근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접근 관련 북한의 관련 법제를 살펴보았다. 형식적으로는 국제인권법상의 정보접근권을 국내 입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의 자유 또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라기보다는 북한이라는 공동체가 향유하는 권리로 인식하며, 개인의 정보접근권은 이러한 집단의 권리

실현을 통해 보장된다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

연구 모형에 따른 정보접근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첫째, 외부정보는 국경지역을 넘나드는 공식·비공식적 사람, 상품, 공간, 매체뿐만 아니라 경험, 뉴스, 통제, 학습 등의 직간접적인 수단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북한사회에 전파된다. 김정은 정권 들어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통신기기의 진화로 보다 빠르고 신속한 외부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당국의 2중, 3중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부정보를 통한 한국과의 문화 접촉이 20년 이상 축적되고 장기화되면서 외부정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처음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은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하나하나의 의문점들이 쌓여가고 나뉘는 대로 해석하면서 궁금증을 점차 증폭시키는 기폭제(spark)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정보는 초창기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자신들의 삶의 재발견,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다양한 방식의 변형과 공유 방식을 거치며 이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생활환경과 문화의 공유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셋째, 외부정보를 받아들이고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 농촌이나 일부 산골지역을 제외하고 도시 간 격차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의 규모나 소장, 적용 방식, 그리고 전달 체계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빠른 속도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남포, 평양, 혜산, 함흥 지역을 비교할 때 지역별 특징도 일부 관찰되었다.

넷째, 정보접근에 대한 통제를 둘러싼 당국과 주민들의 상호 작용에서 뇌물이 여전히 주된 방식이지만 관련 법조항들에 따른 상호 대응 방식으로 변화하는 특징도 일부 발견되었다.

다섯째, 외부정보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시기별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처벌 규모나 강도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정보접근 증진전략이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기본 목표로 설정한 북한당국의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이 수행하고, 정보유입활동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등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유입의 일방향적 관점을 넘어 정보접근의 수혜주체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보접근 전략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문제는 권리의 측면, 삶의 질 측면, 남북한 통합의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 정보의 접근은 북한 주민이 향유해야 할 핵심 권리이지만 다른 자유권 침해와의 연관성 또한 핵심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정보는 북한 주민의 건강권, 식량권 등 사회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다.

셋째, 외부정보의 접근을 통한 남한과의 문화공유 확산 현상은 남북한 이질감 해소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남북한 통합의 자산이 된다는 점이다.

주제어: 북한 주민, 정보, 정보접근권, 증진, 통제

A Study on North Koreans' Right to Information Access

Kim Sooam et al.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looked into a series of processes over North Koreans'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types of processes on North Koreans' information access, the author utilized an information data value cycle released by OECD in 2015 to adaptively draw a research model of North Koreans' access to information.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ly to August 2020 with 20 North Korean defectors who defected after 2018.

The analysis based on a research model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the risk of getting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Kim Jong Un took power, outside information has been shared more promptly and rapidly thanks to advancements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devices.

Second, outside information has made a continuous impact on changing the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s despite the

double- and triple- controlling system of North Korean authorities as cultural contact with South Korea via the sharing of outside information has accumulated over the last two decades.

Third, the gap in how to accept and share outside information between populated areas does not seem that large except for some rural and remote regions.

Fourth, although bribery still remains as a major force in driving interactions over a control of information between the authorities and residents, changing trends of mutual responses between them have been found as governed by some of the provisions in related laws.

In spite of a variety of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strategy of enhancing information access from the outside has yet to induce a change of attitude from the North Korean state whose basic objective has been to maintain a socialist regime. Going beyond a one-way perspective in terms of information inflow, it is necessary to set the focus of a strategy of information access toward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North Koreans who will be the beneficiaries of information access. North Koreans' access

to information should be approached with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or various aspects of rights, a quality of life, and inter-Korean integration.

Keywords: North Korean, Information, Rights to Access Information, Enhancement, Control

1. 서론

김수암 통일연구원

강채연 통일연구원

윤보영 동국대학교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대는 정보사회이며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은 현대인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상호의존적이고 개방된 국제사회의 흐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정보는 개인의 직업, 지적재산, 경쟁, 삶의 질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수집된 정보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그러므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가 개방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국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을 들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북한당국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 문제가 국내외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현재 북한사회에 북한 주민과 북한당국의 이해가 가장 심각하게 충돌하는 영역이 바로 ‘정보’이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외부정보에 대한 비공식 접근은 비교관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은 체제와 정권의 유지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북한의 언론매체는 정부가 선별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선전도구가 되거나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내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바깥 세계의 소식이 전달된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당국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비공식적 방식으로 외부정보에 접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화의 확산과 맞물려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즉, 시장화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북한 주민과 북한당국의 이해충돌 현상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화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이 빠르게 증대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수, 보관, 공유, 처리 및 변환하는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부정보가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에서 차지하는 가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도 주목할 요소이다. 정보에 접근하는 일련의 과정의 변화 속에서 북한당국의 대응도 정보통신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교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둘러싼 주민과 당국의 이해충돌이 표출되는 대응 양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대해서는 특정 범주를 중심으로 실태 분석이나 연구가 진행되었다. 외부정보를 둘러싼 북한 내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외부정보에 대해 북한 주민이 접근하는 일련의 과정과 이해충돌로 인한 주민과 당국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에서는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과 양상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방사회에서 정보접근은 정보의 추구, 접수, 전달(공유 및 확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사회에서는 외부정보에 대해 북한당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 북한당국의 통제와 북한 주민의 대응도 정보접근 전체 과정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개방사회의 일반적인 정보접근의 과정과 폐쇄적인 북한사회에서의 당국과 주민 사이의 통제와 대응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당국의 규제 사이에서 틈새를 찾아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며, 타인과 공유하면서 자신의 삶에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권리의 관점에서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국제인권조약 체계에서 정보접근이 권리로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법률을 검토하면서 실태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은 관련 국제인권법의 근거와 국제사회 논의 전개 상황을 토대로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국제인권법 체계에서 정보접근이 권리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정보 확산의 특징과 성격의 변화에 따른 북한당국의 대응에 대해 관련 북한 법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북한 주민이 정보에 접근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기존 연구동향과 연구 모형

(1) 기존 연구동향

외부정보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 북한사회의 변화, 체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가장 1차적인 관심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의 실태에 두어졌다. 정보접근 실태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문 연구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와 연구논문, 전반적인 북한인권 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정보접근이 포함되는 보고서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의 보고서 및 연구논문은 아래에서 보듯이 다양한 관점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후자의 보고서로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인권백서』, 미 국무부의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접근 실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의 변화와 연관 속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연구는 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시청 및 청취 실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초창기 실태 분석은 북한 내 정보유입을 위한 대북방송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국내 민간대북방송의 경우 국내 민간대북방송 현황, 재정, 주파수, 콘텐츠, 방송환경을 중심으로 진단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의 대북 방송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¹⁾

1) 이원웅,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북한 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미국무부는 이례적으로 미디어 컨설팅 업체 인터미디어(InterMedia)에 북한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포괄적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그 결과를 2012년 5월에 공개하였다. 텔레비전, 라디오, DVD 등 세 가지 미디어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모바일 폰, 컴퓨터, MP3 플레이어, USB 드라이버 등 첨단 미디어 기술이 엘리트 사이에서 이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USB, SD카드 등 이동저장 매체, 핸드폰, 인터넷 등 북한 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정보접근 문제를 다루는 실태 보고서들이 증가하였다.²⁾

외부정보의 콘텐츠, 특히 생산지역으로서의 남한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과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류’라는 관점에서 남한 영상매체가 북한 내에서 유통되는 경로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강동완·박정란(2010)은 지역 간, 대인 간 연결 구조를 중심으로 북한 내에서 남한의 영상매체의 유통 경로를 잘 분석하고 있다.³⁾ 임석준·강동완·김현정(2014)은 ‘한류’라는 관점에서 북한 내 남한문화의 유통 및 수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 북한 내 한류에 대해 연구 대상자로서의 북한 이탈주민, 북한 주민, 수용미디어의 종류로써 선전미디어와 상업

2009); 이광백, “민간대북방송 진단과 제도개선 방안,”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11. (2012) 등.

2) 2011년 7월 5일 NK지식인연대는 『대북미디어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 강동완, “대북전단, DVD, USB 콘텐츠 제작 및 투입상황과 개선방안,” 현인애, “북한주민의 외부 미디어 수용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Nat Kretchun and Jane Kim, *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InterMedia (2012); Yonho Kim, “Cell Phones in North Korea: Has Entered the Telecommunications Revolution?”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 Voice of America Report*, 2014; 김연호,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 『KDI북한경제리뷰』, 2016년 12월호 (2016); 김민관, “최근 북한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시사점,” 『주간 KDB 리포트』, 제890호 (2020) 등.

3)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미디어로 구분하여 네 가지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⁴⁾

북한 내 특수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남한 영상매체의 접근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강동완·김현정(2015)은 북한 내 특정 집단, 특히 기율과 통제가 가장 강한 군대 내의 영상물의 유포, 유통 경로 및 접근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⁵⁾

외부정보, 특히 한국 대중문화의 유입과 북한사회 및 북한 주민의 인식(의식)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남한방송을 포함한 대북방송이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초기 관심의 대상이었다.⁶⁾ 남한 TV드라마가 북한 주민의 남한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진행되었다.⁷⁾ 보다 정교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외부정보, 특히 남한 대중문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강동완·박정란(2010)은 구조와 기능이라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사회의 이완-통제, 지역-계층간 경계 허물기, 동일 언어 사용매체에 대한 몰입, 의식 변화를 들고 있다.⁸⁾ ‘숨겨진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가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전문연구도 수행되었다.⁹⁾

4) 임석준·강동완·김현정, “북한의 한류연구: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10권 제2호 (2014), p. 87.

5) 강동완·김현정,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통일과 평화』, 7집 1호 (2015).

6) 이주철, “북한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의식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0호 (2003); 이주철,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수용 태도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46호 (2008) 등.

7) 이민규·우형진,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문화 계발 효과와 문화 동화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8권 6호 (2004).

8)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p. 111. 강동완의 다음 연구도 참조. 강동완, “북한의 정보화 실태 및 파급 영향: 한류 및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선진화정책시리즈』, 2014년 2월호 (2014).

9) Baek, Jieun, *North Korea's Hidden Revolution: How the Information Underground is Transforming a Closed Society*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6).

새로운 시도로 북한당국이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와 차단 일변도의 정책에서 관영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외래문화가 수용되는 특징을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전미영(2014)은 북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외래문화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의 관영매체를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정보의 전달을 다루고 있다.¹⁰⁾ 이주철도 같은 맥락에서 조선중앙TV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접근 확산에 따른 대응을 분석하고 있다. 이주철에 따르면 조선중앙TV의 변화는 체제선전을 위해 방송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비공식 외부정보 확산 속에 조선중앙TV는 일방적 체제선전방송과 드라마의 재방송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수 있도록 외국 축구 등 스포츠의 소개, 중국드라마의 방영, ‘선정적’인 공연 등 오락의 확대와 증진을 위한 경제 선동 프로그램 확대, 외부 세계와 첨단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등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¹¹⁾

본문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듯이 북한당국은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에 대해 철저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미 북한인권위원회(HRNC) 등 국제인권단체에서 북한당국의 정보제한 실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외부 미디어 유입에 대해 정보 기술을 활용한 북한당국의 대응을 분석하고 있다.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북한 국경을 넘은 외부 콘텐츠의

10)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1) 이주철, “조선중앙TV 2000년대 프로그램 변화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2011); 이주철, “김정은 시대 북한 방송언론의 변화: 조선중앙TV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대량 확산의 결정체라고 한다면, 북한당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똑같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북한당국이 정보통제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당국은 외부 정보유입에 대해 세 가지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¹²⁾

- 첫째, 체포, 처벌을 포함한 국가 통제 법률 레짐
- 둘째,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감시 및 검열을 포함한 첨단 기술
- 셋째, 북한 주민에 대한 일관된 이념 메시지를 포함한 선전

북한당국의 정보통제 정책을 분석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정보접근 증진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¹³⁾ 특히 외부로부터의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행위주체의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정보유입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¹⁴⁾

위에서 살펴본 실태보고서 및 연구논문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공통으로 평가한다. 국가별 정보의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통하여 북한 주민의 정보자유에 대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Freedom in the World*:

12) Amnesty International, *Connected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2016); Martyn Williams, *Digital Trenches: North Korea's Information Counter-Offensive* (Washington D.C.: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pp. 7~8.

13) 국가인권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제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박대광·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2) 등을 참조.

14) 이원웅,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김연호,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 등.

2020에서 전 세계 국가의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상황을 기술하는 부분 중 시민적 자유의 D항목이 ‘표현과 신념의 자유’이다. 그 중 접근에 대한 장애, 콘텐츠에 대한 제한, 사용자 권리 침해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인터넷 자유 점수’를 평가하는데, 북한 부분은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¹⁵⁾

둘째, 영국의 정보통신 IT전문 보안업체 ‘컴패리티테크(Comparitech)’는 2020년 1월 15일 “인터넷 검열 2020: 세계 인터넷 통제지도 (Internet Censorship 2020: A Global Map of Internet Restriction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조사대상 181개 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다.¹⁶⁾

셋째, 2019년 12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 (Social Progress Imperative)’는 “2019 사회진보 지수(2019 Social Progress Index: SPI)”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지수는 ‘복지의 기반(foundations of wellbeing)’ 등 3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지의 기반’은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 등 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의 세부 지표는 핸드폰 가입, 인터넷 사용자, 온라인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 미디어 검열 등의 요소로 평가하는데, 북한은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에서 조사대상 149개국 중 149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¹⁷⁾

넷째, 영국의 미디어 분석 전문 업체 ‘위아소셜(We Are Social)’

15) Freedom House, “Internet Freedom Scores,” <<https://freedomhouse.org/countries/freedom-net/scores>> (검색일: 2020.10.6.).

16) Comparitech, “Internet Censorship 2020: A Global Map of Internet Restrictions,” <<https://www.comparitech.com/blog/vpn-privacy/internet-censorship-map>> (검색일: 2020.10.6.); “북한, 세계 최악의 인터넷 검열 국가,” 『미국의 소리』, 2020.1.16.

17) Social Progress Imperative, “2019 Social Progress Index; Korea, Democratic Republic of,” <<https://www.socialprogress.org/?tab=2&code=PRK>> (검색일: 2020.10.6.).

과 캐나다의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인 ‘훗스위트(Hootsuite)’는 “2020 디지털: 국제현황(2020 Digital: Global Digital Overview)”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212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다.¹⁸⁾

다섯째,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without Borders)가 2020년 4월 발표한 “2020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북한은 평가 대상 180개국 중 최하위인 180위로 평가되었다.¹⁹⁾

(2) 분석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정보 접근은 정보의 추구, 접수, 전달이라는 종합적인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의 측면에서의 정보접근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함께 외부정보를 체제 위협 요소로 보는 북한당국의 통제와 북한 주민의 대응도 정보접근의 전체 과정의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정보접근을 구성하는 한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²⁰⁾ 본 연구에서는 정보접근의 일련의 과정 전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접근

18) We are Social & Hootsuite, “2020 Digital: Global Digital Overview,” <<https://wearesocial.com/digital-2020>> (검색일: 2020.10.6.); “북한, 세계 유일의 인터넷 금지국…휴대전화 가입자 452만 명,” 『미국의 소리』, 2020.2.4.

19) Reporters without Borders, “2020 World Press Freedom Index,” <<https://rsf.org/en/ranking?>> (검색일: 202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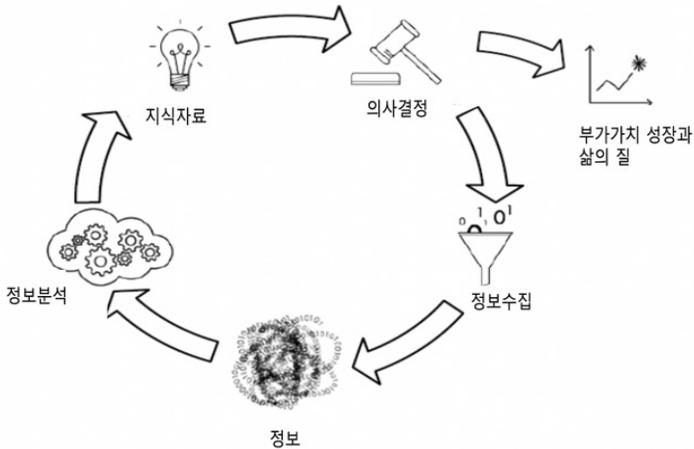
20) 강동완·박정란의 연구는 구조와 기능이라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의 과정,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과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구 모형의 관점에서 볼 때 정보접근의 전체 과정을 포괄하지는 않고 있다.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연구 모형을 활용하여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는 외부정보에 접근하는 북한 주민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OECD의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지식정보 기반 사회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정보는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보다 더 핵심적인 생산 또는 창조의 기본요소가 되었다.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하며 이용할 수 있는지가 인간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²¹⁾ OECD는 정보의 가치에 주목한다. 정보, 특히 빅데이터가 인류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복지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OECD는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혁신이 경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술과 수집된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래를 점점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변화에 대한 준비 역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석된 정보는 지식자료로 가치를 획득하여 국가주도 사업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전통적이고 소규모인 분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정보는 단순히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멈추지 않는다. 인류의 복지와 행복, 즉 인간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가 단순히 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OECD의 논의는 다음 그림과 같다.

21) 홍석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44권 (2009).

〈그림 1-1〉 정보의 가치 순환(data value cycle)



출처: OECD, *Data-driven Innovation: Big data for Growth and Well-being*, 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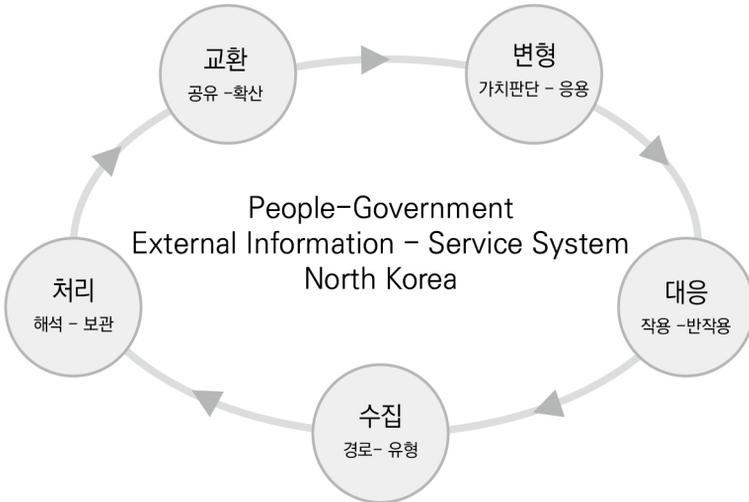
〈그림 1-1〉에서와 같이 정보는 수집되고 분석되며 지식자료로 가치를 획득한다. 지식이 된 정보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반영되며 인간의 삶의 질을 성장시킨다. 정보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기여는 그것을 정확히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인류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기여하고 있다.²²⁾ OECD의 정보에 대한 시선은 국가와 지역단위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즉 북한 주민이 어떻게 정보에 접근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떤 지식을 얻게 되는지, 수집된 정보가 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의 단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이 단순히 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각자의 방법

22) OECD, *Data-driven Innovation: Big data for Growth and Well-being* (Paris: OECD, 2015), pp. 27~33, <www.oecd.org/sti/data-driven-innovation-9789264229358-en.htm> (검색일: 2020.10.12.).

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주목하려는 시도이다. 북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통제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통제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작은 균열을 내며 각자의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이 북한 안에서 정부로부터 생성된 정보와 공식/비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서 인입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인생에 어떻게 투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북한사회 내/외부 정보수집의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을 탐색한다. 여기에 주민의 정보접근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OECD의 모형에 정부와 주민의 대응을 추가했다. <그림 1-2>는 북한당국과 주민의 대응을 포함하여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의 전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OECD 논의를 확대 변형하여 도출한 연구 모형이다.

<그림 1-2>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 연구 모형



출처: 북한 분석을 위해 <그림 1-1>을 활용하여 필자가 모형을 도출.

위의 연구 모형은 북한에서 정보에 접근했던 각 개인들의 개인적 경험 체계를 외부정보에 대한 수집-처리-교환-변형-대응의 다섯 가지 전달 체계로 구조화한 것이다.²³⁾ 수집(collection)은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과정과 정보의 유형에 관한 문제다. 처리(treatment)는 다양한 외부정보를 받아들이는 해석의 방식과 보관에 관한 문제다. 교환(exchange)은 취득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확산시키는지에 대한 문제다. 변형(transform)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 획득한 ‘지식(knowledge)’의 가치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주변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응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착된다. 대응(respond)은 정부(혹은 제도, 기관 등)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외부정보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규칙과 외부정보 사이에서 제도-관료-주민들 간의 밀고 당기기 게임의 결과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들을 통해 현재 북한의 외부정보 재현 방식과 그에 따른 통제 효과, 사회변동의 흐름과 핵심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에서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20개의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탐색적인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① 북한 주민은 어디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가? ② 수집된 각각의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③ 그러한 정보들은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떻게 공유되는가? ④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⑤ 국가의 다양한 규제 속에서 개인들의 우회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모형과 함께 본 과제는 ‘정보’의 범주도 설정하고자 한다.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북한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23) 교환: 공유-재생산과 관련하여 강동완·박정란(2010)은 ‘돌러보기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으로서 정보 단절, 소극적 확장, 적극적 확장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보유한 정보와 북한외부로부터의 정보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제2장에서 보듯이 공공정보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청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 주민이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주는 두 가지, 공식정보(공공정보)와 비공식정보(외부정보)의 틀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정보는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비공식적으로 북한 주민이 접근하는 정보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기존 연구동향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당국이 관영매체, 강연회 등을 통해 제공하는 외부정보를 북한 주민이 접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북한당국이 제공하는 외부정보와 북한 주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접근하는 외부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정보에 대한 정보접근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외부정보를 접하는 방식과 형태의 문제이다. 제2장에서 후술하듯이 국제인권조약은 정보가 담긴 형태에 대해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 및 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도서, 영상, 음악, 방송 등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를 접수하고 보관하고 공유하는 저장매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주민이 접근하는 외부정보의 출처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 다룬 북한 주민이 접하는 외부정보의 출처는 ‘외부사조’, ‘외래문화’라는 전체 외부정보를 포괄하는 관점과 ‘한류’로 특화되는 관점으로 대별될 수 있다.²⁴⁾ 본 과제에서는 남한을 포함한 모든 외부정보를 출처로 포괄하되 남한으로부터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4) 박대광·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0권 (2014); 임석준·강동완·김현정, “북한의 한류연구: 동향과 과제” 등.

나. 연구 방법 및 연구내용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참여자의 견해에 의존하고 인용, 보고하지만 해석은 연구자의 관점으로 한다. 면접을 통해 종합된 자료들을 통합함으로써 말을 하는 사람과 이를 해석하는 연구자 간의 협동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면접은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참여자가 질문과 답변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비구조화 된 공간에서 실행하였다. 이는 연구가 참여자 혹은 연구자의 일방적 해석에 갇히지 않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과 해석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더욱 많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해 2018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모집단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직업군, 지역군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표본 집단과 명단을 확보하였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론은 <표 1-1>과 같다.

<표 1-1>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구분	내용
연구 대상	2018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0명
접근	문지기를 통한 눈덩이 굴리기 표집(snowball sampling)
표본추출 전략	신변 보호 등의 특성상 확률표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확률표집 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눈덩이 굴리기 표집(snowball sampling, 누적표집)을 사용함

구분	내용
자료 수집	생애주기사적 경험을 토대로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
자료 형태	인터뷰, 기록물, 자신에 대한 메모(온&오프라인)
정보 기록	현장노트, 면접과 관찰, 녹취
자료 저장	개인별 포트폴리오, 녹취록

심층면접에 따른 질문 항목은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총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1-2〉 심층면접 질문 항목

질문항목		
수집	1	어떤 유형의 정보를 경험했는가?
	2	주변 사람(가족, 친구 등)은 어떤 정보를 경험했는가?
	3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는가?
	4	정보를 습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었는가?
	5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지역/계층 간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처리	6	정보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가?
	7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8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뒤집어 읽기, 비교 관찰하기)
교환	9	습득한 정보는 다른 사람과 공유했는가?
	10	다른 사람들은 각자 습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교환한다고 생각하는가?
	11	습득한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가?
변형	12	정보가 자신의 생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13	정보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14	정보가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방식은 어떠한가?
	15	정보가 자신의 정치관, 경제적 활동, 승진 등에 미친 영향이 있는가?
대응	16	정보수집 과정에서 단속 혹은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17	단속이나 처벌과정에서 뇌물이나 인맥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18	각 유형별 단속기관에 따른 통제방식은 어떠한가?
	19	주변 사람들이 단속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20	주변 사람들이 단속이나 처벌 때문에 뇌물이나 인맥을 이용하는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생명 윤리위원회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통일연구원의 생명윤리심의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에 참여해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연구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공지하였다. 녹음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면접이 시작된 이후에도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 후에 면접을 시작하였으며 면접 후에도 자신의 이야기에서 걱정되는 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고, 참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에 대한 약속을 설명했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녹음해제를 위한 녹음파일을 보안 설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표 1-3〉은 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이다. 면접 대상자 인적사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북한 거주지, 직업군, 탈북 및 입국연도, 면접일을 제외하고 성명은 익명으로 표기하였다.

〈표 1-3〉 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코드	성별	나이	북한 거주지역	직전 직업	탈북	입국	면접일
사례 1	남	40대	자강도	외화벌이	2019	2019	7.24.(금)
사례 2	남	20대	양강도	군인	2019	2019	7.25.(토)
사례 3	여	30대	양강도	자영업	2019	2019	7.26.(일)
사례 4	남	30대	양강도	자영업	2019	2019	7.26.(일)
사례 5	여	40대	평양직할시	사무원	2018	2019	7.27.(월)
사례 6	여	20대	양강도	교원	2019	2019	7.30.(목)
사례 7	남	30대	양강도	건설기업소	2019	2019	8.1.(토)
사례 8	남	20대	함경남도	군인	2019	2019	8.2.(일)
사례 9	여	20대	함경북도	대학원생	2019	2019	8.8.(토)

코드	성별	나이	북한 거주지역	직전 직업	탈북	입국	면접일
사례 10	남	20대	양강도	군인	2019	2019	8.8.(토)
사례 11	남	40대	자강도	외화벌이	2019	2019	7.23.(목)
사례 12	남	20대	자강도	학생	2019	2019	7.23.(목)
사례 13	남	40대	양강도	공무원	2019	2019	7.25.(토)
사례 14	여	40대	함경북도	자영업	2019	2019	7.28.(화)
사례 15	여	40대	함경남도	군인가족	2019	2019	7.28.(화)
사례 16	여	30대	양강도	인민위원회	2019	2019	7.29.(수)
사례 17	여	20대	양강도	대학생	2019	2019	7.29.(수)
사례 18	여	40대	함경북도	자영업	2019	2019	8.4.(화)
사례 19	여	40대	평안남도	자영업	2018	2019	8.4.(화)
사례 20	여	30대	양강도	자영업	2019	2019	8.5.(수)

본 과제는 서론, 결론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기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과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정보의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OECD의 정보의 순환 논의를 활용하여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일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섯 단계의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모형에 따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중심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정보접근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인권조약, 지역인권조약 및 법원, 조약기구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견해 및 보고서 등을 통해 논의의 추세와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와 정보와의 관계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보접근과 관련한 북한의 법제에 대해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통제의 관점에서 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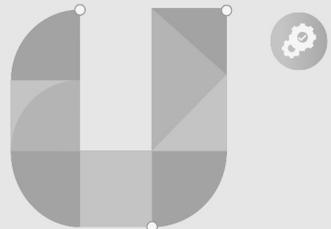
제3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분석틀과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의 전체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에서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정보의 자유의 국제적 보호와 북한의 관련 법제

박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개인이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인권의 향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수집·전파·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국제인권법 형성 초기부터 정보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1946년, 유엔 총회 제1차 회기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유엔에 주어진 모든 자유의 초석”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²⁵⁾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생산·수집·유통·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 이러한 정보의 생산·수집·유통·활용 전반에 걸친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정보에 접근할 권리(이하 ‘정보접근권’)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정보통제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에 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국가의 정보통제 자체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을 비롯한 비민주적 독재 체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정보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 언론에 의해 체제 유지 및 선전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자유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매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발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의 보호 실태를 논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보접근권의 국제인권법적 근거와 내용을 살펴본 후 북한의 법제를 검토한다.

25) UN Doc. A/RES/59(I) (14 December 1946); UN Doc. A/64/Add.1 (31 January 1947).

1. 국제인권법상 정보의 접근

가. 국제적 논의 현황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인권의 목록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주요 핵심 인권문서와 조약 등에서 정보접근권을 독립 조항(개별 인권 목록)으로 명문화한 문서를 찾기란 어렵다. 즉,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및 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등 일명 국제권리장전과²⁶⁾ 주요 지역 인권조약인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이하 ‘유럽인권협약’)과 추가의정서, 1969년 「미주인권협약」과 추가의정서, 1981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이하 ‘아프리카 인권헌장’) 등에는 정보접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독립 조항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인권법이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정보접근권은 이미 인권조약의 다른 권리 조항에 의거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역 인권조약과 이들 조약감시기구 또는 인권재판소와 위원회는 다양한 맥락에서 인권조약상의 관련 규정이 정보접근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²⁷⁾

정보접근권이 아직 국제인권법에서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기보다는 주로 표현의 자유에 내포된 권리로 설명되고 있는 데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국가들이 정보접근과 관련된 기본권과 개별 법률을 발전시켜나가다 보니 용어 사용과 그 권리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26) OHCHR, “Fact Sheet No. 2 (Rev.1),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2Rev.1en.pdf> (검색일: 2020.10.15.).

27) Maeve McDonagh, “The Right to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uman Rights Law Review*, Vol. 13 (2013), p. 26.

있다. 따라서 정보접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를 지칭하는 표현과 그 권리의 범위에 대해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접근권 그 자체를 지칭하거나 주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용어로는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FOI)’, ‘정보에 대한 접근(정보접근, Access to Information: ATI)’, ‘정보에 대한 권리(또는 정보권, Right to Information: RTI)’, ‘정보에 접근할 권리(정보접근권,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정보를 추구할 권리(또는 정보추구권, right to seek information)’, ‘알 권리(right to know)’ 등이다.²⁸⁾ 국내적으로는 이들 용어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²⁹⁾ 국제적 논의에서는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³⁰⁾

국내법적 차원에서도,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결합된 권리로 이해되었던 알 권리가 정보사회의 도래 이후 정보 자체에 관한 독립된 권리로 다뤄질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정보에 관한 다양한 권리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권,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이 전통적으로 알 권리의 범주에 있던 정보 관련 권리들과 자신의 정보에 관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자기

28)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으로 액세스권(Right to Access)이 있다. 영미법계에서 유래한 이 표현은 대중매체 액세스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과 언론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언론매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권리(광의) 또는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해명 또는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권리(협의)를 말한다. 명재진·이한태,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정보화정책』, 제18권 제1호 (2011), pp. 3~23; 서경미,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의 기본권성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2호 (2018), pp. 317~346.

29)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3), p. 8 이하 및 해당 각주 참고.

30) Victoria L. Lemieux and Stephanie E. Trapnell,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for Development: A Guide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ight to Information Law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up, 2016), p. 1.

결정권, 대중매체 정보에의 접근, 의견 표명 및 반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액세스권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을 함께 묶어서 정보기본권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³¹⁾

정보에 대한 권리가 다양하고, 그 권리의 보장 범위 역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은 한편으로는 정보에 대한 권리의 확장 또는 논의의 다양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권리의 실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 보장 또는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정보접근권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접근권의 개념적 정확성을 높이고 연구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정보접근권의 핵심적 주제인 알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정보접근권을 검토 하도록 한다.

알 권리의 차원에서 정보접근권은 ①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령·수집할 권리, ② 공개되지 않은 공공기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집할 권리, ③ 공개되지 않은 사회집단 또는 개인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집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접근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생산 주체 혹은 관리 주체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고 수집할 권리는 국가 기밀, 기업 비밀과 같은 사적 재산, 프라이버시권 등이 그 한계로 작동할 수 있다.

31) 김상겸, “정보기본권의 체계와 보장에 관한 연구-정보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0), pp. 71~92; 김배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 범위에 대한 고찰-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pp. 199~232.

나. 국제인권법상 권리의 근거와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권규약과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인권헌장 등 주요 인권조약에서 ‘정보접근권’ 또는 기타 앞서 언급한 정보 관련 인권을 지칭하는 권리가 독립 조항으로 명문화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와 지역 인권보장체제인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³²⁾ 미주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위원회 등이 인권조약의 해석과 개별 사건의 판단을 통해 정보접근권을 인정했다. 이들 인권조약상의 권리 목록 중에서 특히 표현의 자유와 공무에의 참여에 의거하여 정보접근권을 인정했으며, 이외에도 차별 금지, 생명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로부터 정보접근권을 도출해냈다.³³⁾ 이하에서는 이들 인권조약상에 명시된 권리 목록을 통해 어떻게 정보접근권을 인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의 토대가 되는 권리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는 국제권리장전과 지역 인권협약 모두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포괄적 조항(umbrella clause) 아래에 정보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정보

32) 참고로 유럽인권위원회는 1998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에 대한 제11의정서」(서명일 1994.5.11., 발효일 1998.11.1.) 채택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에 흡수·통합되었다.

33) 박진아, “인권조약상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2019), p. 241.

접근권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정맥을 따라 흐르는 피”와³⁴⁾ 같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국제인권문서와 인권활동에서 오랫동안 연계되어왔다. 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인 Ambeyi Ligabo와 Frank La Rue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자유권규약의 표현의 자유 틀 안에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한 바 있다.³⁵⁾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권리로서 정보접근권을 인권으로서 명시하였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로서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접수할 자유’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서도 반복되며, 다른 인권협약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³⁶⁾

34)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Case of XYZ v. Victoria Police (General) [2010] VCAT 255, Judgment of 16 March 2010.

35) UN Doc. E/CN.4/2005/64 (17 December 2004), para. 39; UN Doc. A/HRC/11/4 (30 April 2009), para. 60.

36)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13조 제2항

1983년 발표한 자유권규약 제19조에 관한 「일반논평 10: 제19조 (의견의 자유)」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제2항은…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이를 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후 2011년에 위원회는 제19조에 대한 새로운 일반논평, 「일반논평 34: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발표했는데,³⁷⁾ 동조 제2항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³⁸⁾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9조를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제25조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에는 매체의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접근권과³⁹⁾ 일반 대중이 매체 생산물을 받을 권리가⁴⁰⁾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⁴¹⁾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0조 (표현의 자유) 제1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000년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11조 제1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969년 「미주인권협약」 제13조(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1항 “모든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인쇄물, 예술의 형태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981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1981) 제9조 제1항 “모든 개인은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7) UN Doc. CCPR/C/GC/34 (12 September 2011) (이하 각주에서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4」); 국어 번역은 국제인권소식 “통”, “일반논평34: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서 가져옴, <<http://www.tongcenter.org/ccpr/cp11-1>> (검색일: 2020.10.15.).

38)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4」, para. 18.

39) UN Doc. CCPR/C/65/D/33/1995 (5 May 1999) (이하 ‘UN Human Rights Committee, *Robert W. Gauthier v. Canada* (633/1995)’).

40) UN Doc. CCPR/C/95/D/1334/2004 (29 April 2009).

41)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4」, para. 18.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9조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정보접근권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익적인 정부 정보를 공공 영역에 축적하도록 해야”하며,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에 쉽게, 신속하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⁴²⁾

유엔 인권조약감시기구와 지역인권법원 및 위원회가 인권조약의 발효 초기에는 표현의 자유 안에 정보접근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은 표현의 자유 내에 정보접근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대표적인 예가 자유권위원회의 *Gauthier v. Canada* 사건으로 캐나다 의회가 언론인 Gauthier의 의회 기자실 접근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유권위원회는 제19조 제2항이 정보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⁴³⁾

유럽인권법원도 초기에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 제1항의 “정보 및 사상을 접수하고 전달할 자유”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고⁴⁴⁾ 협약에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⁴⁵⁾ 점차 ‘정보를 접수할 자유’를 넓게 해석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접근권도 이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했다.⁴⁶⁾ 유럽인권법원은 여기서 한

42)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4」, para. 19.

43) UN Human Rights Committee, *Robert W. Gauthier v. Canada* (633/1995), para. 13.5.

44)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Groppera Radio AG and Others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10890/84), Judgment of 28 March 1990, A.173, p. 22.

45)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Loiseau v. France* [Translation-Extracts] (Application no. 46809/99), Judgment of 18 November 2003 [Section II], para. 7.

46)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Társaság A Szabadságjogokért v. Hungary (Application no. 37374/05), Judgment of 14 April 2009, para. 35;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République tchèque* (Application no. 19101/03), Judgment of 10 July 2006; P. van Dijk

걸음 더 나아가, *Özgür Gündem v. Turkey* 사건에서 협약 제10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진정한 실효적 행사는 단순히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의무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주인권법원 역시 제13조(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왔으며, *Claude Reyes v. Chile* 사건에서 “협약 제13조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적극적인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확인했다.⁴⁷⁾

2004년에는 유엔·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미주기구(OAS)의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들이 합동으로 공공당국이 보유한 정보접근권(right to access information)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공동선언서를 발표했으며, 최대공개원칙에 입각한 포괄적인 입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효과가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했다.⁴⁸⁾ 2010년, 유네스코는 「브리즈번 선언, 정보의 자유: 알 권리」에서 정보에 대한 권리(right to information)는 표현의 자유의 필수적 부분이며,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민주 생활 참여, 정부 감시, 투명성과 책임의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⁴⁹⁾ 2009년에

and G.J.H. van Hoof, *Theory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3rd edition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p. 559.

47)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 Case of Claude Reyes et al. v. Chile, Merits, Reparations and Cost, Series C No. 151, Judgment of 19 September 2006.

48)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International Mechanisms for Promoting Freedom of Expression; Joint Declaration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and the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6 December 2004,” <<http://www.oas.org/en/iachr/expression/showarticle.asp?artID=319&IID=1>> (검색일: 2020.10.15.).

49) UNESCO, “Brisbane Declaration: Freedom of Information, The Right to Know (3 May 2010),” <<http://www.unesco.org/new/en/unesco/events/prizes-and-celebrations/celebrations/international-days/world-press-freedom-day/previous-celebrations/2010/brisbane-declaration/>> (검색일: 2020.10.15.).

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공문서 접근에 관한 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조약 제205호)」을⁵⁰⁾ 채택했다. 이 조약은 비록 지역 조약이고, 아직까지 미발효 상태이지만, 공적 정보에의 접근권을 규정한 최초의 단일 조약이다.

정리하면, 인권조약감시기구와 법원,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 조항에 근거하여 정보접근권을 인정해왔는데, 일차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공개된 정보, 주로는 매체를 통해 공개된 정보접근권을 인정했으며,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정보접근권까지 발전해나갔다.

이처럼 정보접근권은 표현의 자유의 권리 안에 포함된 권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에서 정보접근권을 표현의 자유 안에 포함된 권리가 아니라 독자적 권리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⁵¹⁾ Abid Hussain 전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은 2000년 연례보고서에서 정보를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할 권리는 단지 의견과 표현의 자유의 결과가 아니며, 이 권리는 ‘권리 그 자체’임을 강조하였다.⁵²⁾ 그러나 Abid Hussain 특별보고관과 달리 Ambeyi Ligabo 특별보고관과 Frank La Rue 특별보고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접근권을 표현의 자유의 틀 안에서 인정하는 것을 지지했다.⁵³⁾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정보제공자’, 특히 언

50)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CETS 205,”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205>> (검색일: 2020.10.15.). 지난 2020년 8월, 우크라이나가 열 번째로 본 조약을 비준했으며, 이에 조약 발효 기준인 10개국 요건이 충족되어 본 조약은 2020년 12월 1일에 발효된다.

51) Maeve McDonagh, “The Right to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p. 25~55.

52) UN Doc. E/CN.4/2000/63 (18 January 2000), para. 42.

53) UN Doc. E/CN.4/2005/64 (17 December 2004), para. 39; UN Doc. A/HRC/11/4 (30 April 2009), para. 60.

론매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이 정보접근권에 집중한 반면에 정보에 대한 권리는 정보의 잠재적 수령자를 개념의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상의 기타 관련 조항

2011년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4」에서 정보접근권의 요소들이 자유권규약의 다른 규정에서도 다뤄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먼저,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7조,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개인 신상자료가 자동화된 자료파일에 저장됐는지 여부와 저장되었던 어떤 신상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저장됐는지를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확인할 권리가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봤다.⁵⁴⁾ 그러나 이때 정보접근권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것으로 알 권리의 차원에서 정보접근권과는 그 근거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알 권리의 차원에서 정보접근권에 있어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개인정보)를 국가가 다른 개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로 정보접근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54)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4」, para. 18;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16, 제17조: 사생활에 대한 권리」, para. 10: “10. 컴퓨터, 데이터 뱅크 및 기타 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공공기관 또는 개인, 사실 단체를 불문하고 반드시 법률로써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그것을 획득, 소지, 사용할 법률상 권한이 없는 자의 손에 닿거나, 동 규약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당사국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자동 정보 파일(automatic data files)에 저장되었는지, 저장된다면 어떠한 정보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저장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개인은 또한 어떤 공공기관 또는 개인 또는 사실 단체가 그들의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파일이 부정확한 개인자료를 포함하거나 또는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 처리되었을 경우 모든 개인에게 수정 및 삭제 요청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일반논평 16」의 국어 번역은 국가인권위원회,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고문방지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6), p. 41 참고).

정보접근권은 공무에 참여할 권리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정보는 ‘민주주의의 산소’로 불릴 만큼 민주주의에 필수적 요소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 유권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무에 참여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⁵⁵⁾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25, 제25조: 정치에의 참여와 투표권」에서 자유권규약 제25조가 보장하는 권리의 충분한 향유를 위해 공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보와 견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⁵⁶⁾

이외에도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2, 제14조: 법정과 재판소 앞에서 평등할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형사상 범죄 피의자가 가지는 정보에 대한 자격들을 열거했다.⁵⁷⁾ 「일반논평 23, 제27조: 소수자의 권리」에 의거해 당사국의 의사결정이 소수 집단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봤다.⁵⁸⁾ 또한 자유권규약 제10조에 따라 재소자는 자신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해석했다.⁵⁹⁾

55) Joseph E. Stiglitz, “On Liberty, the Right to Know, and Public Discourse: The Role of Transparency in Public Life, Oxford Amnesty Lecture,” (January 27, 1999), <<http://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436941546609601734/pdf/WP-Stiglitz-right-to-know-OUO-9.pdf>> (검색일: 2020.10.15.).

56) UN Doc. CCPR/C/21/Rev.1/Add.7 (27 August 1996) (이하 각주에서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5」), para. 25.

57) UN Doc. CCPR/C/GC/32 (23 August 2007), para. 33; C.G. Weeramantry, “Access to Information: A New Human Rights, The Right to Information,”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 (1994), p. 103.

58) UN Doc. CCPR/C/95/D/1457/2006 (24 April 2009).

59)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4」, para. 18.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및 기타 인권조약

앞서 언급한 권리 목록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보접근권은 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의거하여 인정됐으나, 최근에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실현과 정보접근권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9, 사회보장권(제9조)」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인과 집단이 모든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⁶⁰⁾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14,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제12조)」에서 건강권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식량권, 주거권, 교육권, 인간존엄성, 생명권, 비차별권, 평등권, 고문금지, 사생활, 결사·집회 및 이전의 자유 등의 인권 실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⁶¹⁾ 사회권위원회는 또한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에 정의된 건강권에 건강 관련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⁶²⁾ 건강권의 필수적 요소로서 정보접근성은 “건강 문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권리를 포함”한다.⁶³⁾

인권 분야의 비정부간기구인 아티클나인틴(ARTICLE 19)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공적 정보접근권은 이들 권리와

60) UN Doc. E/C.12/GC/19 (4 February 2008), para. 26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para. 27 (Physical access), para. 35 (Indigenous Peoples and Minority Groups).

61) UN Doc. E/C.12/2000/4 (11 August 2000), para. 3.

62) *Ibid.*, para. 11.

63) *Ibid.*, para. 12.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권리를 실현하는 전제 조건”이라고⁶⁴⁾ 주장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보접근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향유해야 하지만,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기존의 인권 취약계층이 그대로 정보 부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외에도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등 특정 주체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보접근권의 주체로서 이들을 보호한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에서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명시했다.

다. 정보접근권의 제한

국가는 특별한 법적인 목적을 위해 권리의 향유에 있어 일정한 제한(restrictions)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 제한(ordinary limitations)’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명 ‘유예(derogation)’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특별히 심각한 위기 상황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별한 제한(extraordinary limitations)’이라고도 불린다. 통상적 제한과 특별한 제한은 별개의 제한이라기보다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

64) ARTICLE 19, *Access to Information: An Instrumental Right for Empowerment* (London: ARTICLE 19, 2007), pp. 17~18, <<https://www.article19.org/data/files/pdfs/publications/ati-empowerment-right.pdf>> (검색일: 2020.10.15.).

나의 ‘법적 연속체(continuum)’라고 할 것이다.⁶⁵⁾ 정보접근권이 인권조약의 기존 권리 목록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만큼, 정보접근권도 인권조약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1) 비상사태 시 권리 제한

정보접근권을 인권조약상의 권리 목록에 근거하여 인정한다면, 해당 인권조약의 권리 제한 규정도 정보접근권에 적용된다. 자유권규약은 제4조에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당사국이 일방적 그리고 제한적으로 자유권규약상의 권리를 유예하는(derogating)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허용 한도와 절차도 함께 규정한다.⁶⁶⁾ 자유권규약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65) Anna-Lena Svensson-McCarthy,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nd States of Excep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ravaux Préparatoires and Case-Law of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rgans* (The Hague/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p. 49, p. 721,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New York/Geneva: United Nations, 2003), p. 814”에서 재인용).

66) 「자유권규약」 제4조 제1항.

이와 거의 동일한 조항이 유럽인권협약(제15조 제1항), 미주인권협약(제27조 제1항) 및 유럽사회헌장(제30조)에도 있다.

자유권규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의 비상사태 시에도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 제1항 및 제2항(노예·예속상태·강제노동의 금지), 제11조(민사구급의 금지),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 제16조(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및 제18조(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 보장을 유예할 수 없다. 제19조 표현의 자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 표현의 자유와 같이 유예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도 당사국이 제4조를 원용하여 정보접근권을 유예할 때에는 먼저,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상황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에 이를 정도여야 하며, 다른 하나는 당사국이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야 한다.⁶⁷⁾ 이때 어느 정도로 권리가 유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4조 제1항에서 해당 비상사태에 대해 필요한 정도로만,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권리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상황의 긴급성과 유예되는 권리 간에 비례성 원칙이 적용된다.⁶⁸⁾

(2) 표현의 자유의 제한

주요 인권조약에서 정보접근권을 포함하는 권리 목록—표현의 자유,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정치 참여와 공무의 취임 및 선거권 등—은 권리의 제한(restrictions)에 관한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은 자유권규약의 모든 권리 조항을 통틀어 유일하게 권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는 권리 행사에 있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67) UN Doc. CCPR/C/21/Rev.1/Add.11 (31 August 2001), para. 2.

68) *Ibid.*, para. 4.

자유권위원회는 두 가지 한정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신용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와 관련된 영역이다.⁶⁹⁾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3항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즉 이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고 제3항의 세부항목 (a)와 (b)에 기술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하며,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만족해야 한다.⁷⁰⁾

그러나 당사국은 제3항이 명시한 조건에 따라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첫째,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제한이 국가의 법에 의해 충분히 그리고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타인의 권리나 신용 혹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그리고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비례성의 한 요소로서 ‘필요한(necessary)’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필요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69)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4」, para. 21.

70) 위의 글, para. 22; UN Doc. CCPR/C/87/D/1009/2001 (8 August 2006).

이 중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제한이다. 표현의 자유 내에 정보접근권이 있음을 인정한 대표적인 예인 *Gauthier v. Canada* 사건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캐나다 의회가 언론인 Gauthier의 의회 기자실 접근을 거부한 것이 의회 절차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공공질서의 합법적인 목적에 해당하며, 기자실 출입 인가제도를 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가제도가 공공질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비례적인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국이 제19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⁷¹⁾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가 남용되고 있으며, 진정으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당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⁷²⁾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서 공중도덕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는 *Hertzberg et al. v. Finland* 사건에서 제1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정보와 사상을 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안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 상관없이 자신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제19조 제3항의 공중도덕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국가는 이 사실을 고려해서, 편견이 계속되게 하거나 편협함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자유권위원회는 어떤 정보가 다수를 공격하고, 어지럽히고, 충격에 몰아넣을지라도 소수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

71) UN Human Rights Committee, Robert W. Gauthier v. Canada (633/1995).

72)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2nd revised edition (Kehl/Strasbourg/Arlington, Virginia: N.P. Engel, 2005), p. 466.

라서 핀란드의 형법 제20장 제9항이 지배적인 도덕 관념을 반영했더라도, 그 자체로 제19조 제3항에 의해 정당화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⁷³⁾

(3)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정보접근권이 주로 자유권규약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인정되지만, 사회권규약의 건강권과 같은 권리에서도 도출된다는 점에서 사회권규약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또한 정보접근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권규약 제4조는 동 규약의 모든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limitations) 규정으로 다음과 같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사회권규약 제4조는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다음의 세 가지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첫째, ‘그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당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사회권규약은 자유권규약의 제4조 제2항처럼 유예할 수 없는 권리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권규약의 모든 권리는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며, 다만 그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하는 한도라는 조건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general welfare)를

73) UN Doc, CCPR/COP/1 (2 April 1982), pp. 124~127.

증진시킬 목적'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건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각 당사국이 한다는 점에서 남용의 여지가 크다. 실제로 독재국가들이 인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공공복리'를 주장했으며,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해서도 '공공복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를 했기 때문이다.⁷⁴⁾ 셋째,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 정한 제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접근권이 건강권에 근거하여 인정된다면, 이 경우 정보접근권에 대한 제한은 사회권규약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정보접근에 관한 북한의 법제도

가. 북한 법의 체계와 특수성

법 형식 관점에서 북한 법체계를 정리해보면, 크게 헌법, 부문법, 규정, 세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법 형식은 일정한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⁷⁵⁾ 법 형식의 위계 내에서는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⁷⁶⁾

74) 채형복, 『국제인권법』 (서울: 높이깊이, 2009), p. 97.

75) 김정옥, “규범적법문건의 명칭을 정하는 데서 나서는 립법기술적요구,” 『력사·법학』, 제48권 제4호 (2002), p. 65; 송인호·최귀일,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북한의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9), p. 237.

76) <표 II-1>의 부문법, 규정, 세칙의 개념은 북한 법제정법 제2조에서 정의한 내용이며, 북한 헌법 및 법제정법상 제·개정 권한을 정리한 것이며 다음의 논문에서 인용하였음: 이승택,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동아법학』, 제86호 (2020), p. 14.

〈표 II-1〉 북한 법체계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⁷⁷⁾ - 개정권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
부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주권기관이 헌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부문의 사회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형식”⁷⁸⁾ 제개정권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권한 행사 가능, 다만 중요부문법에 관해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사후승인 필요) - 명칭: “법”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법을 전국적범위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거나 부문법을 제정할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문에서 법적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형식”⁷⁹⁾ - 제개정권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 명칭: “시행규정” 또는 “규정”
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법이나 규정을 일정한 부문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제하는 법형식”⁸⁰⁾ - 제개정권한: 내각 위원회, 성, 도(직할시)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 명칭: “법시행세칙”, “규정시행세칙”, “세칙”

출처: 이승택,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p. 14.

북한의 정보접근 관련 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법체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 헌법에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⁸¹⁾ 및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일정한 정보접근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를 법률에서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77) 북한 「사회주의 헌법」, 1972.12.27. 채택, 2019.8.29. 수정보충(이하 헌법), 전문.

78) 북한 「법제정법」, 2012.12.19. 채택, 제2조 제2호.

79) 북한 「법제정법」 제2조 제3호.

80) 북한 「법제정법」 제2조 제4호.

81) 북한 「헌법」 제64조.

것은 자유주의적 기본권관을 전제하는 태도이다.⁸²⁾ 북한 헌법상 권리의 의미와 내용을 북한체제 내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헌법의 성격과 북한 법체계 전반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북한 헌법 및 북한 법체계의 전반적인 특수성을 간략히 정리하고 북한의 정보 접근에 관한 법제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 헌법과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은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제와 같이 공동체 구성원의 국가를 향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는 것으로 개인적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⁸³⁾ 또한, 북한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⁸⁴⁾ 것으로 수령영도주의를 헌법 전체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⁸⁵⁾ 이러한 전제에서 북한 헌법과 헌법상 기본권 규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아닌 북한식 사회주의를 통해 형성된 국가상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는 도구적 의미를 갖는 것이며,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집단이 함께 실현해가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헌법을 토대로 체계화된 북한의 법질서도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

82) 북한 「헌법」 제67조.

83) 북한 「헌법」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84) 북한 「헌법」 서문 마지막 문단.

85) 북한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럽다. 실제로 북한 법질서의 구체적 작동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법원의 판례 등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국민의 권리 침해 문제 및 부문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법제도 분석은 기본적으로 북한 법체계의 특수성을 전제하고, 현재 취득할 수 있는 북한 법제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정보접근권과 관련이 있는 북한 헌법 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문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법 규정이 북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북한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북한 법체계에 요구되어야 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는 일정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북한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제약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나. 정보접근 관련 북한 법제도 현황

(1) 정보접근 관련 헌법 규정

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정한 인간 지적활동의 결과물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동 또는 능동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접근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보접근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민주적 시민으로

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근거로 보장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및 수령영도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헌법상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선언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북한도 원칙적으로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와 유사하게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민주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이러한 규정은 북한 주민들도 원칙적으로 공동체 내외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헌법 제8조의 인권 존중과 보호 규정은 기본적으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다양한 인권에 대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제67조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또는 정보접근에 관한 권리를 헌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⁸⁶⁾ 학문, 예술의 자유 등과 같이 인간의 다양한 정신활동에 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북한 헌법 제74조는 내재적으로 연구를 한 다양한 연구 정보접근권, 예술과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한 예술 작품과 활동 정보접근권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⁷⁾

이 밖에도 북한 헌법은 문화에 관한 규정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문화 관련 활동에 대한 국가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한다. 특히 공동체 구성원의 창조적 능력 향상과 문화적 수요 충족에 관한 국가 목표 규정,⁸⁸⁾ 문화예술 발전 및 창작가와 예술인의 창작활동 확대에

86) 북한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87) 북한 「헌법」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88) 북한 「헌법」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관한 국가 목표 규정,⁸⁹⁾ 근로자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국가 목표 규정⁹⁰⁾ 등은 다양한 인간의 정신활동을 통해 형성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되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도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 헌법을 일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북한 헌법과 북한의 법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식 인권관을 보여주는 북한 헌법 제63조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북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성립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집단적 인권관은 개개인의 권리로 인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함께 향유하는 권리인 동시에 집단이 함께 형성해가는 의무로 인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 규정을 근거로 북한 공동체 구성원이 북한체제 내에서 자신의 정보접근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사실적 측면에서 불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는 북한 헌법 제3조⁹¹⁾ 및 전 인민을 사상적으로 통일하여 하나의 결합된 집단으로 형성할 것을 명령하는 헌법 제10조,⁹²⁾ 국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 수호 의무를 규정

89) 북한 「헌법」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90) 북한 「헌법」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91) 북한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92) 북한 「헌법」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

헌법 제81조⁹³⁾ 등은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수집·활용하는 행위가 어디까지나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 및 인민의 사상적 단결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헌법은 민주적 헌법국가 체제에서 최고 규범의 지위를 갖는 다른 국가의 헌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규약과 당의 지시, 국무위원장의 명령 및 국무위원회의 결정 등 북한 헌법보다 규범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여러 규범과 명령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를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도체제 및 운영원리를 변경하고 명시하고 있는 과정들을 볼 때 북한 헌법이 북한 내 다른 법 형식들을 지도하는 지도적 규범의 성격을 가진 것은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북한 법체제 전반에서 정보접근에 관한 법제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 헌법의 명시적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북한 헌법의 근거를 토대로 구체화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접근에 관한 법제도를 북한의 법률에 해당하는 부문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93) 북한 「헌법」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94) 이승택,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pp. 11~12.

(2) 정보접근 관련 부문법(법률)

(가) 신문 및 출판물에 관한 부문법

북한의 법제도에서는 신문에 관한 독자적 부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출판물과 함께 「출판법」⁹⁵⁾에 의해 일괄적으로 규율한다. 근대 이후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매개체이자 정보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은 북한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당과 국가의 선전도구적 의미의 기관지로서 신문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⁹⁶⁾ 시민사회의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신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사회 내의 정보 유통은 매우 단절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성격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출판법은 신문, 잡지, 도서, 지도, 역사 등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범으로(제3조),⁹⁷⁾ 기본적으로 국가통제주의를 취하여 출판기관 등록주의(제12조)⁹⁸⁾ 출판활동 승인주의(제17조)⁹⁹⁾

95) 1975년 8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로 채택되었고, 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되었다.

96) 북한의 신문에는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기관지 『청년전위』 등의 중앙지와 시·도당위원회가 발행하는 10여 개의 지방지가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분야별로 『체육신문』, 『교원신문』, 『철도신문』, 『조선인민군』 등의 신문이 있다. 이러한 신문들은 정보전달이나 소통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당과 정권의 선전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인 북한사회 내의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20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0), pp. 297~298.

97) 북한 「출판법」 제3조 출판물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사회를 문명하게 하는 힘있는 사상문화수단이다. 출판물에는 각종 신문, 잡지, 도서, 지도, 력서 같은것이 속한다.

98) 북한 「출판법」 제12조 출판기관은 등록하여야 출판사업을 할수 있다. 출판기관의 등록은 새로 조직되었거나 그 성격과 임무, 사업범위가 달라진 경우에 한다. 출판기관을 등록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출판지도기관이 한다.

99) 북한 「출판법」 제17조 출판계획은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세운다. 출판계획의 승인은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및 제30조¹⁰⁰⁾)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의 발행 및 도서 간행에 대한 철저한 국가 통제를 명시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은 저작 또는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제6조)”와 같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같은 규정을 함께 두고 있음은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법제에서 의미하는 자유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외부적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자유주의적 의미의 자유와는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이다. 즉 북한 법제에서의 자유는 국가 혹은 주민(국민) 집단 전체가 함께 실현하고 향유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향유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출판법의 특징을 좀 더 분석해보면, 먼저 북한은 출판 과정에 있어서 출판계획이라는 국가계획에 의해 출판물에 관한 전반적 국가 통제를 실행하고 있으며(제16조), 국가에 등록된 출판기관만이 출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출판설비는 몰수하는 출판 기관 등록주의를 통하여 출판 주체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한다(제12조 및 제50조). 또한 출판활동 전 과정에 대해 국가가 지도 및 감독·통제하도록 한다(제45조 및 제47조). 그리고 출판법 위반에 의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규정을 통해 이상의 국가 통제를 형사적 처벌로 강제한다(제50조).

이러한 출판과정에 대한 국가 통제가 절차적 측면의 규제라고 한다면 내용적 측면의 규제도 존재한다. 북한 출판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출판활동의 내용으로는 반동적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

100) 북한 「출판법」 제30조 출판물을 인쇄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출판물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판물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유포 행위가 있는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는 일체의 사상과 문화, 생활상에 대한 표현 전반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사회 내에 ‘반동적’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작동하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매우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적 규제는 출판물을 통한 다양한 정보접근을 매우 위축시키고 중대하게 제약하는 규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방송법

북한의 방송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북한 방송은¹⁰¹⁾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규율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법」이¹⁰²⁾ 있다. 북한의 방송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방송법제의 내용도 방송 조직과 권한,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방송법에 따르면 북한 방송의 목적은 첫째, “인민들을 사상 문화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며(제1조), 둘째, 대외적으로 북한사회를 보여주는 선전행위이다(제4조). 특히 북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을 “나라의 목소리이고 얼굴”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태도는 방송이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정보 제공 및 문화 형성의 도구라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외부 세계에 북한이라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101) 북한 방송은 크게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는 ‘조선중앙방송’, ‘평양유선방송’ 등이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은 ‘조선중앙텔레비전’, ‘만수대텔레비전’, ‘용남산텔레비전’, ‘체육텔레비전’ 등이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20 북한 이해』, pp. 304~305.

102) 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7호로 채택되었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방송은 기본적으로 북한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보다 대외 선전용으로 만들어지는 측면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 방송법은 국가가 승인한 방송기관만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기관 승인주의를 취하고 있으며(제10조), 이러한 방송기관은 중앙, 지방, 부문 단위로 나누어 조직한다. 예외적으로 방송기관이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구내방송이나 현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그 이외의 방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방송기관 승인주의 및 승인 없는 방송 금지 원칙을 통해 방송기관 자체를 국가가 거의 장악하고 있음에도 더 나아가서 방송편집물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의와 검열 절차를 두고 있다. 북한 방송법 제31조는 방송편집물의 결재와 심의,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편집 단위 책임일군과 해당기관의 결재, 심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방송편집물은 방송을 금지한다. 일종의 사전 심의 절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승인 없는 방송편집물의 방송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심의라기보다는 사전 검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법 제47조는 이러한 방송사업에 대한 통제가 방송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통제와 검열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철저한 통제 제도 속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위한 하나의 규범적 통로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은 동법 제49조이다. 동법 제49조는 “청취자, 시청자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방송의 형식과 내용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방송 대상의 의견수렴을 방송 제작의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수렴이 실질적인 다양한 방송 편집물의 제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북한 방송법은 국가 통제

방송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출판법과 공통적인 특징은 방송법에도 형사적 책임을 명시한다는 점이다. 국가기밀 누설은 공통적으로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방송을 통한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국가의 권위와 이익에 어긋나게 방송하였을 경우”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방송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규정한다는 점이다(제54조 및 제55조).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국가에 관한 일체의 비판적 의사표현이 방송을 통해 표출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컴퓨터망에 의한 정보접근 관련 법제도

신문과 방송이 전통적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의 매개체였다면 정보화시대의 총아는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도 일방향적 신문과 방송보다는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 접근·수집·활용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은 기능할 수조차 없는 양의 데이터를 지금도 계속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도 컴퓨터망에 의한 정보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보통제적 관점에 있어서도 가장 주의를 기울여 통제하고 있는 부문이 컴퓨터망에 의한 정보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³⁾ 먼저 「컴퓨터망관리법(이하 컴퓨터망관리법)」^상¹⁰⁴⁾ 컴퓨터망은 우리의 인터넷망과 인트라넷망 및 컴퓨터 운영 및 보안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엄격한

103) Amnesty International, *Connected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pp. 18~19.

104)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9호로 채택되었다.

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컴퓨터망 이용을 금지한다(컴퓨터망관리법 제17조). 컴퓨터망을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기관 등은 체신기관에 등록하고 IP주소를 할당받도록 하고 있으며(컴퓨터망관리법 제11조), 기관 등은 컴퓨터망운영실의 출입질서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컴퓨터망보안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체계를 갖춰야 한다(컴퓨터망관리법 제14조 및 제35조).

북한은 한편으로는 컴퓨터망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수집·교환·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화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컴퓨터망을 활용하고자 하지만(컴퓨터망관리법 제24조 및 제27조) 비밀에 속하거나 기타 불건전한 자료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부과한다(컴퓨터망관리법 제32조 및 제49조).

또한 와이파이와 같은 고성능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기통신 영역도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접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 북한도 부문법으로 「전기통신법」을 제정하여 전기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송수신 등을 규제한다.¹⁰⁵⁾ 북한의 전기통신법에 따르면 북한도 전기통신시설의 현대화를 추구하며(제24조), 전기통신망을 통해 과학기술보급, 원격교육, 원격의료봉사, 화상회의 등을 실행하도록 한다(제25조). 그러나 전기통신망 이용에 있어서는 체신기관에 의한 엄격한 허가주의를 취하며(제26조 및 제27조) 비밀에 속하거나 불건전한 자료의 유통 및 전기통신시설의 무단 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제31조 및 제32조). 아울러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8조 및 제39조).

앞서 살펴본 출판, 방송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망과 무선통신 영역

105)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7호로 채택되었다.

도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받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건전한 자료’라는 매우 불명확한 개념으로 정보수집 및 유통·접근을 제약하고 있는 북한 법제의 태도는 국가에 의해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언제든지 ‘불건전’이라는 표현으로 처벌될 수 있어서 개인의 정보접근권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보통제 관련 법제도

(가) 기밀법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정보접근 관련 법제는 일정한 언론, 출판, 방송, 컴퓨터망 등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 제도를 형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었다. 그러나 제도 형성적 측면에서 제정된 부문법에서조차 매우 강한 정보통제 제도를 규정한다. 이하에서는 특정한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차단할 목적으로 제정된 부문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정보통제 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정보통제 법제는 「기밀법」이다.¹⁰⁶⁾ 기밀법에서 통상 통제되는 정보로서 기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질서 유지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엄격하게 제약하는 영역이다.

북한의 기밀법은 우리나라의 군사기밀보호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제라고 할 수 있지만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정보를 기밀정보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북한 기밀법에 따르면 기밀대상은 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106) 1997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7호로 채택, 2017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되었다.

없는 중요사실과 문서 등의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기관에 의해 ‘절대비밀’, ‘비밀’, ‘기관안에 한함’ 등의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제2조 및 제7조). 북한 기밀법이 어떤 수준의 정보를 기밀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기밀법의 내용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기밀대상에 대한 정확한 등록의무를 각 기관 등에 부과한다는 점에서(제3조 및 제7조) 정보의 공공활용성을 강조하여 기밀을 최소화하기보다는 공공정보 전반에 걸친 기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 기밀법은 기밀 누설 금지 의무를 기관 등 뿐만 아니라 개별 공민에게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3조).

(나) 정보접근 관련 형사법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정보접근 관련 법제는 철저하게 국가 통제주의에 입각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철저하게 북한 공동체의 정보접근을 제약하는 규범은 북한의 형사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형법」¹⁰⁷⁾ 인민의 정보 접근 행위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명목과 형식으로 정보 관련 범죄를 규정한다. 가장 중한 범죄는 반역죄이며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비밀을 넘겨주는 행위를 반역의 하나로 보고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제63조). 또한, 국가안보 관련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외국인이 북한을 정탐하여 비밀을 탐지·수집·제공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제64조). 그리고 그 밖에 중요 국방 비밀 누설과 일반적 국방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나누어 국방비밀

107) 본 법은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 보충된 것이다.

누설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기밀에 대한 보호는 우리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나 제99조의 이적행위죄 및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만의 특별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기밀법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의 비밀은 매우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형법상 반역죄나 간첩죄의 적용 범주도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형법은 체신사업질서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컴퓨터망관리 및 전기통신 행위 등이 모두 체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망을 이용한 정보접근 행위를 기관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158조).

그리고 퇴폐적 문화반입 및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북한 형법 제183조 및 제184조는 음란 표현물 규제 법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란한 내용의 표현물만이 아니라 이른바 ‘퇴폐적’이라는 개념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외래문화 전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¹⁰⁸⁾ 북한 형법 제183조 및 제184조는 북한 주민의 외래문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북한 형법 제185조는 적대방송청취 및 수집·보관·유포 행위를 모두 처벌하며, 이를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비법적인 국제통신죄를 규정하여 국경을 넘은 통신 행위는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범죄로 처벌한다(제222조).

이 밖에도 정부나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컴퓨터망을 이용한 정보

108) 북한의 노동신문은 외래문화 유입에 대해 “인간의 건전한 넋을 흐리게 하는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유포시켜 우리의 사상진지를 허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노동신문』, 2013.7.18.)이라고 보며, “부르조아 제국주의자들이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왜곡해시키기 위해 날뛰다”(『노동신문』, 2014.5.14.)라고 주장한다.

접근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92조), 출판법을 위반한 출판물의 인쇄, 발행, 보급 행위 등도 처벌한다(제214조). 또한 허위정보 입력 행위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형법 규정과 함께 행정처벌법에서도 정보접근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허용을 받지 않는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은 앞서 살펴본 출판법, 방송법, 컴퓨터망관리법, 전기통신법 등에서 이미 일정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처벌법은 별도의 구성요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각 영역별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적용 절차를 제시하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형법 및 행정처벌법과 함께 북한사회의 법질서 준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규범으로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이 있다.¹⁰⁹⁾ 인민보안단속법은 “준법교양과 법적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미리 막”기¹¹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규범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를 어긴 자”에게¹¹¹⁾ 적용된다.

인민보안단속법은 형사책임이 발생하기에 앞서 범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예방적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권한 행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보안단속법에서는 제9조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고

109) 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2호로 채택, 2007년 2월 27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2144호로 수정·보충되었다.

110) 북한 「인민보안단속법」 제3조.

111) 북한 「인민보안단속법」 제7조.

다의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자의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처럼 국가 권력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손쉽게 적용되어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민보안단속법은 제22조와 제31조 등에서 정보접근 관련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체 내에서 폭넓게 정보를 수집·보관·배포하는 행위 및 수단은 모두 국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으며, 국가가 예정하고 있거나 허락해준 것이 아닌 이상 정보접근 및 활용 행위는 사실상 대부분 형사 처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을 기준으로 국경 밖 세상과 북한사회 사이의 정보 교류는 국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주민은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의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의 한계와 문제점

(1) 사회주의적 정보관과 외부정보통제 원칙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인간의 여러 자유의 기초이다.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물론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의 확산 현상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여론을 오염시키는 문제 등이 존재하여 이를 전통적인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나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초한 자정론 등에 기대어 수인하고 있기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판이 늘면서

정보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 필요성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시민이 국가와 독립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보관·재생산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기본권 제한과 마찬가지로 항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정보관은 이러한 정보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북한식 인권관 자체가 인권을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의 권리로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도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라기보다는 북한이라는 집단적 공동체가 향유하는 권리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개인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그 자유가 실현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정보관에서 외부 세계 정보는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영화, 소설, 음악 등 문화 콘텐츠조차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들어졌으면 그것만으로 퇴폐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차단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즉 정보가 사람의 다양한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체제는 그 공동체 내의 단결과 일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 자체를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형법의 ‘퇴폐적’ 문화반입 및 ‘적들의’ 방송 청취 행위를 금지하는 태도가 이러한 관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법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보급 이후 수많은 국가들에서 국경은 더이상 정보의 장벽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일정한 기술적 조치들을 통해서 각 국가가

제한하는 정보들이 있지만 인터넷 기술이 가진 수많은 우회로 속에서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이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북한사회는 외부 세계의 정보 자체를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통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출판법, 방송법, 컴퓨터망관리법, 전기통신법 등 다양한 법제를 통해서 북한식 정보통제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통제 체제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는 과거와 다른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사실적 측면에서 무선 전기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물리적인 정보 차단에 허점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법적 측면에서 국가의 허락 없는 정보접근이 모두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국가 정보통제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내부 정보의 독점과 통제

북한의 정보통제는 비단 외부 세계의 정보유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출판법과 방송법은 국가 통제주의를 원칙으로 제도화되었는데, 특히 방송은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출판의 경우에는 출판기관 등록주의와 출판활동 승인주의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를 통해서 북한당국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당국이 원하는 정보는 널리 유통되지만 반대로 당국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대중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 이러한 정보의 독점과 통제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오랜 기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 밖의 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매체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상황

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비판적 관점을 형성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정부는 공영방송이나 친정부적 언론매 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나 업적을 선전하는 행위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적 정보전달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이 취사· 선택하는 정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고 전달되는 정 보의 대다수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 용 면에서 대동소이하고, 따라서 비교를 통한 선택의 문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의 구현 문제는 북한 체제의 유지,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경계하는 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하는 영 역이다.

(3) 자율성을 상실한 공론의 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는 신문과 방송의 자유는 없다. 비록 북한 헌법 제67조에서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지 만 그 자유와 권리가 개인이나 사회의 임의 단체에게 보장되는 권리 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에 존재하는 공식적인 공론의 장 은 북한의 당과 정부가 형성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당과 정부의 주 도 하에서 운영되는 공론의 장은 언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언론은 정부의 선전기관일 뿐이며 북한사회 안팎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은 애 초부터 부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율성 없는 공론의 장은 정부 선전의 장에 불과하다. 결국 어디에서도 설자리를 찾지 못하는 공론은 형성될 수도 없고,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시적인 단위에서만 형성될 뿐 공동체 전반에 그러한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을 향한 여러 방송매체 등을 만들고 전파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 또한 북한 내부의 자율적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북한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형성의 내적 원천은 존재하지 않고 형성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공론의 장을 통한 정보의 매개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정보의 형성은 매우 더디고 한정적이다. 공론의 장 스스로 여러 정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메타 정보들이 구축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국가에 대한 실제적 이해는 불가능한 것이며, 피상적이고 파편화된 이해만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에서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4) 인터넷과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접근의 제한

초연결사회는 21세기 시대적 변화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힌다. 북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 보급과 컴퓨터망 확장을 시행해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는 존재하지만 법제도의 방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정보접근을 위한 물리적 환경은 다른 국가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닮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에 의한 전면적 통제는 매체를 구별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

물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파를 법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불법적 국제통신 행위 자체를 범죄로 구성

하고 있으며, 정부의 허가 없는 컴퓨터망 활용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형사법적 통제를 통해 기술에 의한 연결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정보접근 관련 법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달된 기술로 강화된 연결성을 법에 의해 차단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북한당국의 정보통제와 독점이 점차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²⁾ 그러나 이것이 북한사회에 어떤 방향의 변화를 형성할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이 장에서는 알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인권으로서 정보접근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와 권리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접근에 관한 북한의 법제를 조사 및 분석했다. 정보접근권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사회권규약 및 주요 지역 인권조약 등에서 독립된 개별 조항을 통해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권리 즉, 표현의 자유, 공무에 참여할 권리, 건강권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안에 내포된 권리로서 인정되거나 이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추후에 정보접근권이 발전권이나 평화권과 같이 독립된 개별 인권으로서 논의될 필요성을 차치하더라도 이미 국제인권법상 정보접근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임이 틀림없다. 또한, 정보접근권이 기존 인권조약상의 독립된 권리 목록에 의거하는 만큼, 이들 권

112) 정보기술 발달의 관점에서의 북한당국의 정보접근 통제의 대표적 연구로는 Martyn Williams, *Digital Trenches: North Korea's Information Counter-Offensive* 참조.

리에 적용되는 권리의 제한 역시 정보접근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북한은 2020년 10월 현재, 당사국의 보고의무가 있는 9대 핵심인 권조약과 2개의 선택의정서 중 5개의 조약과 1개의 선택의정서에 비준 또는 가입했으며,¹¹³⁾ 당사국으로서 이들 조약을 준수 및 이행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갖는다. 자유권규약은 제2조 제1항에서 동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동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제2조 제2항의 요건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하며, 당사국은 국내의 정치·사회, 문화 또는 경제적 사정을 근거로 이 의무의 비준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권위원회의 입장이다.¹¹⁴⁾

113) 핵심 인권조약 9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CPR, 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 사회권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인종차별철폐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고문방지협약),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CRC, 아동권리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CMW,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CPED, 강제실종종협약) 등) 및 선택의정서 2개(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14) UN Doc. CCPR/C/21/Rev.1/Add.13 (26 May 2004), para. 14.

〈표 11-2〉 북한이 비준·가입한 조약 (2020.10. 기준)

조약명	상태	가입/비준일	발효일	유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	1981.9.14.	1981.12.1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	1981.9.14.	1981.12.14.	
아동권리협약	비준	1990.9.21.	1990.10.21.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2014.11.10.	2014.12.10.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2001.2.27.	2001.3.29.	제29조 제1항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16.12.6.	2017.1.5.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 및 수령영도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형식적으로는 국제인권법상의 정보접근권을 국내 입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북한식 인권관 자체가 인권을 개인의 권리가 아닌 집단의 권리로 사유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향유를 기본으로 하는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적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자유 또는 정보 접근권 역시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라기보다는 북한이라는 공동체가 향유하는 권리로 인식하며, 개인의 정보접근권은 이러한 집단의 권리 실현을 통해 보장된다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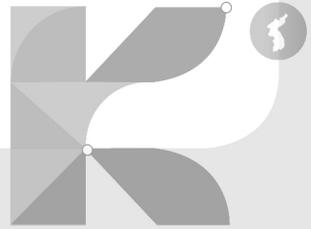
국제인권법상 정보접근권의 가장 기본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공개된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령 및 수집할 권리이지만, 북한 법은 사실상 정보의 수집·보관·배포 행위 및 수단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정보접근 및 활용 행위는 사실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북한정부는 사실상 북한 영

토 밖에 존재하는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 북한 주민은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정보접근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식 인권관을 구현한 북한 법률이 보장하는 정보접근권은 주요 인권조약상의 권리와는 괴리가 크며, 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은 입법적 조치를 통해 인권조약상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북한체제의 유지와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어 북한정부가 매우 경계하는 인권 논제라는 점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입장에서조차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접근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Ⅲ.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와 북한당국의 통제

강채연 통일연구원
윤보영 동국대학교



1. 정보의 수집: 경로와 유형

가. 정보의 수집경로

그동안 통일연구원,¹¹⁵⁾ 국가인권위원회,¹¹⁶⁾ 국제앰네스티¹¹⁷⁾ 등에서 수행한 많은 연구는 북한정부가 언론과 방송매체를 어떻게 독점하고 있으며,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북한 주민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있는지, 국가의 정보통제와 주민 처벌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 독립된 언론은 없으며 북한 주민은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다고 분석한다.¹¹⁸⁾

그러나 북한정부는 외부정보를 통제하고 동시에 전달한다. 북한에서 외부정보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적대국에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낸 침략의 무기, 사회주의 정신을 침식하고 사회를 변질시키는 독소로 설명된다.¹¹⁹⁾ “조선의 파멸은 시간문제”라 떠들며 정보를 침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¹²⁰⁾ 정보는 북한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왜곡하여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체제를 부정하게 만들 것이며, 자본주의의 세계관을 주입하는 두려운 무기이다.¹²¹⁾ 북한

115)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등.

116)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편, 『제2회 북한인권 개선공청회: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증진방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117) 국제앰네스티,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런던: 국제앰네스티, 2016).

11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7~8.

119)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은 전군중적인 사업,” 『로동신문』, 2020.3.10.

120) “자주로 승리떨치는 조선: 인터넷 국제토론회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로동신문』, 2020.10.18.

121) 북한의 외부정보에 대한 해석은 다른 나라의 사례로도 자세히 설명된다. “로씨야

정부는 외부정보의 불순한 의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동시에 교육에 도움이 되는 외부 정보는 선별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전달한다.

북한 주민은 전 생애에 걸쳐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완성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학교, 직장, 조직생활 그리고 일상에 전시되는 많은 표어는 북한 주민에게 개인의 행복보다 전체 인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인재가 될 것을 요구한다.¹²²⁾ 무조건적인 사대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선진 정보를 배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¹²³⁾ 이러한 북한정부의 시각은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¹²⁴⁾ 김정일의 말로 요약된다.¹²⁵⁾

국방성 부상이 5일 한 회의에서 서방이 자국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리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로씨야와 로씨야 인민을 반대하는 그러한 심리전의 하나가 바로 력사 외국 책동이라고 까밝히면서 서방이 제2차 세계대전발발의 책임은 이전 소련과 파쑈도이츨란드 쌍방에 다 있다는 인식과 이전 소련이 동유럽을 침략하였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강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로씨야 청년들이 정보심리전의 기본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로씨야의 력사가 외곡되고 암흑 속에 묻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 서방의 심리전을 폭로,” 『로동신문』, 2020.10.8.

122) 김일성은 1955년 7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방문하여 교육에서의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는 강조와 함께 세계의 새로운 분석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공분야의 학습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교육의 전당에 깃든 어버이사랑 인민의 대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3), pp. 59~64.

123)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가르치면서 다른 나라의 것에 대한 옳은 입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낡은 과학과 기술은 선진적인 기술로 바뀌워진다. 날로 발전하는 선진적인 과학기술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을 위한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해설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8), p. 31.

124)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 입구 김정일의 글,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 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 2009.12.17., <<http://www.ryongnamsan.edu.kp/univ/ko/about/organization/units/library>> (검색일: 2020.10.19.).

125) 예를 들어 농업에서 물을 절약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필요한 외부정보는 적극 받아

북한 주민이 외부정보를 접촉하게 되는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에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를 크게 (1) 북한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2) 비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인입된 정보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외부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수집되는 경로를 탐색했다.

(1) 북한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가) 신문 및 방송

신문은 대표적인 당기관지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새날신문, 인민조선, 평양신문 등이 있다. 북한과 공산주의 진영의 긍정적인 소식과 남한과 자본주의 진영의 부정적인 소식이 선별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신문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이나 사실 정보보다는 정부정책을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¹²⁶⁾ 신문은 학교, 직장, 사회단체 안에서 북한 주민이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¹²⁷⁾ 인기는 없다.¹²⁸⁾ 텔레비전 방송에는 조선중앙텔레비죤과 어학을 비롯한 교육적인 내용을 다루는 룡남산텔레비죤, 국제경기와 스포츠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들어진다. 리철호, “물질약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가물을 극복하고 알곡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누계 174호 (2017), pp. 29~30.

126) “로동신문에는 자기네(북한) 실상을 아주 되게 발전하고 위상이 높은 것처럼 나오는 데 모든 거 하나하나 인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고. 그런데 문 열고 나가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현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8 (통일연구원, 2020.8.2.).

127) “신문은 많이 챙겨봤어요. 워낙 보는 습관이 붙어가지고. 글 쓰려면 신문 많이 봐야 되잖아요. 정책에 맞게 글 쓰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거의 365 매일이다시피 빠짐 없이 봤어요. 사설도 보고, 정론도 보고, 한국 소식도 보고, 국제 소식도. 완전 제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현실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9 (통일연구원, 2020.8.8.).

128) “보들 안 해요. 자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USB로 영화, 노래 이런 거나 보지. 외부 것들을 보지. 북한 거를 안 봐요 잘.”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 (통일연구원, 2020.7.25.).

체육텔레비존이 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방송은 세계 각국의 사건사고나 풍물 그리고 외국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만수대텔레비존이다.¹²⁹⁾

만수대TV 일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까지 국제 소식을 해서 사람들이 딱 시간을 맞춰서 다 보죠. 인도네시아에서 싸움이 있고 어느 나라에는 화산이 분출했고. 어떻게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사례 6)

만수대TV에서는 국제 소식도 나오고 조선중앙TV보다 더 외국 소식이 많이 나와요. 국제 소식, 과학기술 상식, 세계여행 다큐멘터리. (사례 9)

외국영화도 많이 들어와요. 만수대TV로 돌리거든요. (사례 15)

‘만수대텔레비존’에서 국제 소식을 방영하는 일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많은 북한 주민이 ‘만수대텔레비존’을 시청한다. 방송에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제 소식과 과학기술 실험과 같은 교육적인 내용, 그리고 여행기와 영화가 등장하는데 내용이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 사이에 인기가 많다. 북한 주민은 공영방송을 통해 흥미로운 외부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나) 도서·전자자료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은 도서와 전자화된 텍스트를 통해 외부정보를 수집하고 있다.¹³⁰⁾ 북한 주민

129) “북한TV도 다채널화, 외국영상 견제?” 『자유아시아방송』, 2020.6.12.

130)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9 (통일연구원, 2020.8.8.).

은 공식적인 공간에서 정보수집에 한계가 발생할 경우 뇌물을 동원하여 자료를 빌리기도 하고¹³¹⁾ 아예 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정보수집을 시도한다.¹³²⁾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민대학습당이 있다.¹³³⁾ 북한 최대 규모 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은 외국에서 출판된 문학소설과 학술자료까지 매우 다양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 외부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물리학을 전공했던 사례 9는 학교 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 그리고 과학기술전당에서¹³⁴⁾ 수집한 외부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³⁵⁾

책을 통해서도 바깥 세상을 보죠. 한국 책이 아니고 그냥 북한에서 출판한 책을 통해서. 『교육과 인재』, 『세계 교육추세』. 저는 그 책을 계속 읽고 또 읽었던 거 같아요.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인디아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대학과 대학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교육한 인재들이 어떻게 세계로 나가는가. 과학기술전당이 새로 설립돼가지고 논문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영어 원문을 보는 거예요. (사례 9)

사례 9는 북한에서 발행되는 책을 통해 북한 외부에서는 어떻게 인재를 교육하는지, 성장한 인재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공부

131)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5 (통일연구원, 2020.7.27.).

132)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 (통일연구원, 2020.7.24.).

133) 평양시 중심부에 위치, 3000만 권의 도서와 6000석의 좌석, 23개의 열람실, 14개의 강의실 등 600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운영체계가 컴퓨터화 되어 있어 하루 평균 1만~1만 2000명의 학생과 근로자가 이용한다. 김지호, 『조선에 대한 리해 (문화)』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p. 16.

134) 2016년 1월 1일 준공, 북한은 세계최상급의 과학기술 보급기지로 소개(조선의 오늘, 2016.1.22.). 10만㎡ 면적의 원자구조 모양 건물로 기초과학기술관, 과학탐구관, 첨단과학기술관, 응용과학기술관 등으로 구성됐다. “北 '세계 최상급' 과학기술전당에 어떤 시설 있나,” 『연합뉴스』, 2016.1.22.

135)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9 (통일연구원, 2020.8.8.).

하며 마음속으로 동경했다. 그녀는 세계를 누비는 인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학술논문과 소설을 영역에 가리지 않고 많이 읽었다. 특히 과학기술전당에 전공과 관계된 많은 자료가 있었다.¹³⁶⁾ 북한 주민은 공식적인 정보제공 공간에서 비공식적 방식으로 외부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사례 5는 인민대학습당에서 뇌물을 주고 도서를 대여한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¹³⁷⁾

책은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람하고 그 날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책을 보기 시작하면 더 보고 싶죠. 아는 사람한테 담배 한 막대기(보루), 한 3~4만 원 정도 비싸야 7~8만 원 정도. 한 막대기 주고 “나 이거 보름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보름 너무 길어. 열흘만 보라.” 몰래 주거든요. (사례 5)

인민대학습당은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여하거나 복사할 수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그 공간에 가서 책을 읽을 수만 있다. 그러나 사례 5는 도서관이 문 연 시간 안에 책을 다 읽을 수 없었을 때 인민대학습당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은밀하게 뇌물을 주며 부탁을 해서 며칠 동안 대여할 수 있었다.¹³⁸⁾ 책을 대여하는 것을 넘어 전자화 된 자료를 구매하기도 한다. 사례 1은 인민대학습당에서 뇌물을 주고 도서파일을 구매한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민대학습당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책은 다 있어요. 노벨문학상 받은 소설도. 대출은 못해, 카피(복사)도 못하고, 그런데 전자도서화를 실현해요. 바로 페이(뇌물)가 동원되면서 유출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에 6달러씩, 유출되면 그 다음에는 유포되는 거지. (사례 1)

136)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9 (통일연구원, 2020.8.8.).

137)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5 (통일연구원, 2020.7.27.).

138)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5 (통일연구원, 2020.7.27.).

사례 1은 인민대학습당에서 외부정보가 담긴 책을 많이 읽었다. 인민대학습당은 모든 자료를 전자파일로 만들고 일부는 홈페이지에 원본을 탑재해서 북한 주민이 온·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접근에 제한이 있는 도서는 승인제도를 통해 인민대학습당 안에서 읽고 반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사례 1은 접근이 통제된 도서에도 뇌물을 활용해서 접근했으며 소장하고 싶은 도서는 뇌물을 통해 전자파일로 전달받았다. 그리고 입수한 파일은 주변에 공유하고 싶은 사람에게로 전달했다.¹³⁹⁾

(다) 이동전화

이동전화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보접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손전화기는 항상 몸 가까이 있는 물건”이라고¹⁴⁰⁾ 설명되기도 하고 북한 주민도 이동전화를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¹⁴¹⁾ 무리를 해서라도 장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¹⁴²⁾

북한 주민은 이동전화의 여러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정보에 접근하고 있다. 이동전화에는 국내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과¹⁴³⁾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프로그램이 있다.¹⁴⁴⁾ 자본주의

139)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 (통일연구원, 2020.7.24.).

140) “손전화기를 소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 2020.4.3.

141) 중국과 북한의 국경마을에 거주하며 장사를 했던 30대 여성 사례 3은 청소년을 포함한 주변 북한 주민이 모두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3 (통일연구원, 2020.7.26.).

142)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6 (통일연구원, 2020.7.30.).

143) 북한의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2020년 9월 10일 하나음악정보센터가 이동전화와 블루투스 마이크를 연결하여 국내외의 음악, 무용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화면반주 음악프로그램 ‘정서1.0’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하나음악정보센터, 휴대폰용 화면반주음악프로그램 ‘정서1.0’개발,” 『NK경제』, 2020.9.10.

144)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게임을 복제하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모바일 게임으로 알려진 앵그리버드는 고무총쏘기라는 이름

국가의 소설과¹⁴⁵⁾ 학술 서적도 제공된다.¹⁴⁶⁾ 이는 북한 주민의 유희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외부정보를 정부가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이 부분적이지만 현 시대의 대중 문화 속에 담긴 문화적 요소를 지적·정서적으로 외부와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료 프로그램보다 더 빠르게 소식을 전해주고, 더 많은 양의 외부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를 소유한 주민도 경제력에 따라 정보접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¹⁴⁷⁾

돈을 내면 조선중앙통신 앱을 깔아줘요. 로동신문보다 먼저 뜨거든요. 국내 소식, 국제 소식, 대외활동 소식, 동영상, 사진. 로동신문 나오기 전에 먼저 뜨거든요. 어떤 거는 로동신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조선중앙통신에는 실리거든요. 내용이 국민적인 감정에 좋지 않은 거는 나오지 않아요. 조선중앙통신, 우리 직장에 두 명 있었구나. 한 명은 통신사 사장 딸. 한 명은 생활에 여유가 많은 아이.
(사례 5)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대 보도기관으로 조선중앙방송과 로동

으로 복제되어 이동전화에 탑재된다. 이는 북한 주민이 세계인들이 즐기는 게임을 함께 즐기며 게임 속 스토리와 캐릭터에 담긴 맥락을 공유하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5 (통일연구원, 2020.7.28.). 이러한 상황은 남한의 언론에서 북한의 스마트폰 아리랑 151을 확보하여 타국의 유명게임이 불법 복제되어 탑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핀란드의 게임회사 로비오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게임 앵그리버드가 ‘고무총쏘기’로, 일본 세가(SEGA)에서 개발한 소닉은 ‘고속조약’과 같이 복제되어 탑재되어 있었다. “북한 ‘앵그리버드’ ‘소닉’까지 베껴,” 『NK경제』, 2018.6.5.

145)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9 (통일연구원, 2020.8.8.).

146) 예를 들어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국내외의 선진과학기술자료를 수집하여 생산과 기술발전기에 기여하는 40여만 건의 자료를 북한 주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컴퓨터와 이동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과학기술자료들을 널리 보급,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로동신문』, 2020.6.12.

147)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5 (통일연구원, 2020.7.27.).

신문 등 내부언론과 세계 각지 언론에 북한에 대한 기사를 전달한다. 홈페이지와 앱에 조선중앙통신은 해당일의 기사가 탑재되며 로동신문은 하루 전의 기사가 게재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기사도 선별하여 게재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3일 김정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에게 위문전문을 보낸 기사는 조선중앙통신에만 등장하고 로동신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해당기사는 조선중앙통신 이용료를 지불한 북한 주민에게만 전달된다.¹⁴⁸⁾

(2) 비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인입된 정보

(가) 통제와 협력하기

외부정보를 통제하는 북한 주민과 통제 사이를 비집고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의 협력을 통해 외부정보가 북한으로 들어온다. 북중 접경지역의 국경경비대는 밀수를 감시하면서 동시에 눈감아주는 통제권을 갖는다. 밀수를 시도하는 주민은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비대와 권력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 관행이다. 밀수하는 주민은 경비대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빨래를 해주며, 언제든지 집에 방문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집 열쇠를 주고 외부영상을 준비해둔다.

밀수꾼 집에 밥 먹으러가요. 이쪽 집에서 빨래 해주대하면 그럼 이쪽 집에서는 빨래해주고 밥도 먹여줘. 그럼 이쪽 집에서는 뭘 사줘요. 시아버지 모시듯 하죠. 안하면 밀수 안 해주죠. “영화 좋은 거 있어요?” 밥 먹고 옷도 갈아입고 드라마 좀 보면 말하죠. “오늘

148) 위문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신과 령부인이 코로나바이러스검사서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당신과 령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과 령부인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0.10.3.

집 있는데 뽑을 수 있냐?” 기분 좋으면 “오늘 뽑아요.” 기분 나쁘면 “아니 못 뽑아.” “못 뽑아요”하면 “어카니, 어카니” 군대한테 완전 사바사바. (사례 10)

통제권을 소유한 경비대원은 마을 주민 중에 더 잘해주는 집을 골라서 편의를 제공받는다. 경비대원의 만족도에 따라 집주인은 밀수를 허락받기도 하고 통제받기도 한다. 허락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밀수업자는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완곡한 어법으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한다. 만약 해당 경비대원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다른 경비대원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그 집은 한 달 동안 밀수를 아예 할 수 없게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밀수는 경비대의 통제와 허가의 영역 아래에 있다.¹⁴⁹⁾ 북중 접경지역에서 밀수란, 경비대원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시도되기보다는 허가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다. 다음은 국경경비대원이었던 사례 10과 밀수를 했던 사례 2의 이야기이다.

카바비(밀수라는 불법(비법)행위를 cover해 준다는 뜻으로, 일종의 허가에 대한 대가) 받거든요. 1명이 80kg, 중국 돈 30원에서 100원. 중국에 80톤 넘어가면 1000명 계산하잖아요. 대북제재라고 하지만 밤에 불 환하게 켜놓고 밀수하거든요. 제가 있던 소대 구간으로 하룻밤에 30톤 트럭 10대, 200톤 나갔어요. 그럼 중국에서 차가 들어와서 한 번에 500kg씩 실어 나르거든요. 군인은 먼발치에서 구경하고 있죠. (사례 10)

강 사이에서 물건만 왔다갔다해요. 밤에 많이 했죠. (질문: 왜 밤에만 해요?) 중국에 걸리죠. (사례 2)

149)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0 (통일연구원, 2020.8.8.).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는 외부정보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온 중고 컴퓨터가 있다. 사례 2는 중고 컴퓨터에는 기존 사용자가 보던 영상과 음악 파일을 비롯한 외부정보가 담겨있다고 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 들여온 컴퓨터에 한국드라마, 중국드라마 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컴퓨터 100대, 200대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친구들 불러다가 “컴퓨터에 있는 영화 마음껏 잡아가라.” 저는 돈 주겠다는 소리도 안 해요. 친구들은 영화 잡아가면 핑퐁인 거예요. (사례 2)

사례 2는 친구에게 컴퓨터에 남아있는 자료를 지우는 일을 시키면서 대신 각자 마음껏 가지라고 했다. 그러면 친구는 돈을 주지 않아도 자료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쁘게 일을 했다. 컴퓨터 안에는 그 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보던 자료들, 중국과 남한의 음악, 문서, 영상 파일이 매우 많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외부정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전달된다.

(나) 친밀한 관계

북한 주민은 외부정보를 공개적인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친밀하게 아는 사람과 빌려주고 빌리며 수집하고, 비교적 안전한 집에서 읽고 보는 것을 선호한다. 외부정보가 담긴 이동식 기억장치를 굳이 돈을 주고 사지 않거나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쉽게 접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장장치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져서 은닉에 용이하고, 저장용량은 더 커졌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수집하는 외부정보의 양은 확장되고 있다.¹⁵⁰⁾

150)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를 했던 20대 여성은 남한의 문화콘텐츠를 매우 쉽게, 많이 보면서 성장했다. 그녀는 이동식 기억장치를 돈을 주고는 사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식 기억장치는 서로가 믿을 만큼 친한 친구인지를 확인하고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재이며¹⁵¹⁾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수집을 분명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다) 주민교양 과정을 통한 간접적 정보 취득

외부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는 공공연히 북한 주민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 특히 남한의 정보를 소지하고 있다가 외부정보단속반에 걸리면 공개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발표할 후 벌을 받게 된다. 이른바 공개폭로모임이다. 그러나 공개폭로모임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영상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일종의 선전으로 받아들여진다.¹⁵²⁾

술한 주민들 모아놓고 공개폭로모임을 해요. 딱 죄목까지 찍어요. “한국드라마 몇 부작짜리를! 내용은 어땠다! 이런 거를 봤다! 이 놈은 몇 년!”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영화가 나왔대” 서로 수군거리고 “그거 재 있을 것 같다” 홍보거든요. 보지 말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웬걸 뒤에서 소문 나. 선전사업 많이 해요. (사례 7)

외부정보를 보다가 단속에 걸린 사람은 어떤 외부정보를 봤으며 그에 해당되는 죄와 벌은 무엇인지 북한 주민을 모아놓고 진행되는 공개폭로모임의 연단에 서야 한다. 그러나 폭로모임을 듣고 있는 북한 주민은 그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장 친한 친구 5명이 각자 어디선가 빌려오고 빌려주면서 새로운 이동식 기억장치를 가져왔고 그걸 함께 보면서 성장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6 (통일연구원, 2020.7.30.).

151) 북한 주민은 이러한 관계를 ‘알쌌’이라고 표현한다. 알쌌은 조그맣게 물건을 포장한 소포를 이르는 북한어이지만, 생선의 알이 얇은 하나의 막에 폭 싸여있듯 드러나지 않아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한다.

152)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7 (통일연구원, 2020.8.1.).

영상'을 보았고 '어떤 내용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며 주변에 '누가 소유하고 있을지' 유추하고, 자신도 보기 위해 애를 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다.¹⁵³⁾

외부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가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또는 돈이 있더라도 문제가 벌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와 그의 가족의 이력에 남게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주민은 외부정보를 일방적으로 받거나 주지 않고 교환의 방법으로 수집한다.¹⁵⁴⁾

그냥 팔지 않아요. 교환해서 보면 봤지. 저는 남한테 그냥 안줘요. 자기만 카피(복사)하겠다고 하면 제가 카피 안 시켜줘요. 보다 잡히면 나를 물거짱아요. 근데 교환하면 사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서로가 엮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자연적으로 알아요. 점점 똑똑해져요. 국가에서 봉쇄를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책안이 다 나와요. (사례 2)

북한 주민은 일방적으로 한 쪽만 사거나 파는 방식으로 외부정보를 다루지 않고 교환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자신에게 외부정보를 가져간 북한 주민과 그에게서 가져간 또 다른 북한 주민 누군가 검열에 걸리면 출처를 밝힐 수밖에 없다. 외부정보는 전달받은 사람보다 유포한 사람에게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은 폭탄을 돌리듯 정보를

153) 사례 7은 탈북을 시도한 죄로 노동단련대에 수용된 경험이 있다. 그는 새로 단련대에 들어온 사람의 죄명이 외부정보를 시청한 데에 있으면 다음과 같이 어떤 내용을 보았는지 듣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우린 고참이니깐 물어봐요. 109로 들어왔다고 하면 잘 때도 옆에다 놓고 드라마 본 거 계속 (얘기)시켜요. 1부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요.”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7 (통일연구원, 2020.8.1.). 109 상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주 216 참조.

154)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 (통일연구원, 2020.7.25.).

전해준 사람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출처 고백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이 교환이다. 교환은 외부정보를 단순히 전달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유포했다는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쉽게 교환 상대자를 밝히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경감하려는 노력과 같은 강도로 교환 상대자를 보호하게 된다. 국가에서 외부정보 단속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틈새를 파고드는 북한 주민의 정보수집 방법과 자기방어 기법은 점점 진화된다. 교환은 북한 주민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세심한 책략인 것이다.

나. 정보의 유형

(1) 교육 정보

북한 주민,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교육적인 내용이 담긴 외부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만수대텔레비전은 교육과 오락 프로그램,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방영한다. 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하기 때문에 평양 주민과 외국인에게만 허용되었으나 2016년부터 모든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었다.¹⁵⁵⁾ 만수대텔레비전에 방영된 미국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녀교육에 활용한 사례 5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교육적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만. ‘과학, 압력의 법칙’ 외국인이 하는 실험이 있어요. 아주 재미나게 만들었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김정은이 “온 세계가 디즈니를 보는데 우리 사람이라고 못 보겠냐” 해서 외국어교육용 만화영화 ‘얼음공주’ 열사 나오는 거.¹⁵⁶⁾ 평양 시외국어학원에서 ‘얼음공주’ 암송하는 통달

155) “北, 외국인 전용 만수대TV 모든 주민에 개방,” 『연합뉴스』, 2016.5.18.

156) 미국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2013년

경연을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 특출하게 영어 잘 하는 아이들은 평양 중앙외국어학원에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 아니면 종합대학 외문학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명예죠. 부모도 좋고 자기도 좋고. 한국이나 북한이나 그거는 같은 거 같아요. (사례 5)

만수대텔레비존은 외부에서 현재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보다는 과거에 제작된 영상자료 중 북한 주민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만 선별해서 방영하기 때문에 외부정보가 실시간으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재로써 외부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북한 주민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위해 제공된 외부정보를 적극적으로 학습한다.¹⁵⁷⁾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외국어 엘리트 양성학원에서 운영하는 암송 경연대회 교재이며 이 대회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학생과 부모에게 큰 명예이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은 북한 주민에게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은 중요한 교재이다.

도서에도 외부정보가 담겨있다. 북한정부는 외부문헌에 대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공서적은 신청한 사람 중에 승인받은 사람에 한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공분야별로 필요한 외부

개봉한 영화 중 해당 연도 세계 흥행 1위와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순위 1위를 기록했다. 한창완 외 2인, “세계 애니메이션 백과,” <[https:// terms.naver.com/list.nhn?cid=58544&categoryId=58544](https://terms.naver.com/list.nhn?cid=58544&categoryId=58544)> (검색일: 2020.10.15.).

157) 미국 디즈니의 만화 캐릭터는 2012년 모란봉악단의 공연에 등장한 바 있다. 김정은이 관람한 2012년 7월 6일 ‘모란봉악단 공연’ 무대에는 디즈니 만화 인기 캐릭터인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우 인형탈을 쓴 사람들이 올라왔고, 무대 뒤에는 백설공주와 미녀와 야수 등 디즈니 만화영화 영상이 상영되었다. “北 김정은마저 홀린 디즈니 캐릭터 미키마우스,” 『조선일보』, 2012.7.9.

문헌을 선별하여 100부만 출판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100부도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사 중에서도 내가 이 부분을 연구하겠다하면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서적을 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백부도서라고 있거든요. 승인받은 사람만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질문: 뭘 읽고 증권시장을 연구한 거예요?) 영문 잡지, 내각 경제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 도서, 한국도서도 있던데, 갖다가 보자 이래가지고, 거기 선생님도 사실 저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사바사바해서, 자료가 없는데 내가 증권시장을 본 적이 있나요. 그래야 수적인 자료가 나오거든요.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가 논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 없잖아요. (사례 5)

대학원에서 자본주의 증권시장 연구를 했던 북한 주민은 북한의 문헌만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논문을 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별해놓은 백부도서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후에 읽었다. 그리고 경제부문 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제전문 영문학술지를 비롯한 서적을 공부했다. 그녀는 승인받기 어려운 자료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꼭 봐야했는데 그럴 때는 도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¹⁵⁸⁾

(2) 정치·경제 정보

북한 주민이 수집한 정치와 경제 부문 정보는 북한정부가 제공한 정보가 대부분이다. 심층면접에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경험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을 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은 해당시기에 북한의 언론보도를

158)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5 (통일연구원, 2020.7.27.).

통해 접한 소식과 그에 대한 북한 주민의 상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에서 해당 내용을 접한 경험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제공한 정보는 매우 부분적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국내외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부가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평양에서 연설한 거 요란스럽게 다 보도, 통신, 방송수단 통해서 선전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참가한 사람만 들었죠. 북한 주민 중에 몇 %나 돼요. 5만 명이 참가해서 들었다 칩시다. 명문화 되지 않은 연설이 귀에 몇 마디 남을 것 같아요? 그게 전파가 되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문재인이 아리랑 공연을 참관했습니다” 로동신문에 사진 한 장 나오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어~ 북한에서 보여줄 거 아리랑 밖에 없지. 아리랑 봤으면 문재인이가 좀 감탄했잖나?’ 북한사람들 다 몰라. (사례 1)

북한 주민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것을 알고 있다.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존을 비롯한 여러 매체가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어떤 인사를 전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로동신문에는 남한 대통령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한 후 “동포애의 정으로 자기들을 따듯이 맞아주고 극진히 환대해준 평양시민들에게 진심어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적 미래를 앞당겨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고만 언급되고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는다.¹⁵⁹⁾ 조선중앙텔레비존도 연설내용을 방송하지 않는다.

159)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2018.9.20.

‘봄이 온다’ 절대로 못 봐요. TV에 그런 거 안 해요. 대학생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고 주고 해서 40명이 본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공개폭로모임에서 “왜 봤니? 그거는 왜봤니?” 남한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왜 못 보게 하지? 평양사람은 공연에 참가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보는데 왜 우리는 보면 안 돼? 왜 우리만 못 봐? (사례 6)

201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합동콘서트도 언론매체에서 방영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이 영상을 은밀하게 공유하며 시청하지만 단속에 걸리면 공개폭로모임에서 죄의 심각함에 대해 규탄을 받아야 한다. 북한 주민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며 남한 대통령과 북한 영도자가 손도 잡으면서 왜 북한 주민은 영상을 못 보게 하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깊게 의심한다.

북한의 변화와 외부세계에 관심 있는 북한 주민은 전문서적을 수집해서 공부하려고 애쓰기도 한다.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세계는 어떠한지 알고 싶어 국가가 접촉을 통제하는 정보를 열심히 수집한 사례 1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한 경제학 책 본 거 있어요. 2019년 논문이더라고. 지금은 자본주의가 권력과 재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권력과 재력의 화합물이 국가가 될 것이다. 말귀가 이해하기 힘들고. 근데 봤지. 내가 좀 관심이 있던 분야니까. 앞으로의 발전된 사회가 권력과 재력의 융합체로 나올 것이다. 말하자면 뭐 “정주영 사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거나 같거든. (사례 1)

북한 주민이 접촉한 외부정보에는 남한의 경제학 학위논문이 등장한다. 사례 1은 인민대학습당에서 뇌물을 주고 전자파일을 구매하기도 하고, 100부 도서를 읽을 수 있는 해당 부문 전문가, 연구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그로부터 자료를 얻기도 했다. 사례 1은 남한 경제학 논문을 읽으며 자본주의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을 위시한 세계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했다.

(3) 문화적 정보

심층면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외부정보는 영화, 드라마, 음악과 같은 문화적 정보이다. 사례 3은 북한사회에 남한의 드라마, 영화, 음악은 통제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듣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당성을 확보해주는 자신의 관찰을 말했다.

북한말은 명령식으로 “해!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애들이 한국말로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이렇게 ‘요’ 자를 쓰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사례 3)

사례 3은 외부정보에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을 썩게 만든다’며 보면 안 된다고 통제받지만 공산주의 붉은 사상이든지 자본주의 황색 사상이든지 어떤 의도가 들어간 영상이든 남한에서 만든 드라마는 다 재밌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몰래 본다는 쾌감까지 크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많이 보고 있으며 그 사실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변해가는 언어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은 검열에 단속될 만큼 노골적으로 남한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가족 혹은 친구끼리만 있는 자율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암호와 같은 언어, 은어, 몸짓, 노래, 의복 등을 쉽게 표현한다.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기억하면 불편한 점도 있어요. 잘못하면 잡힌다. (부지불식중에) 튀어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잘 기억안하고 그냥 은어. 행동으로 말해주고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하면) ‘아~ 그 사람’ 이렇게. 영화를 너무 보니까 다 암송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맥주 마신다거나 이럴 때 나와요. (질문: 직장에서는요?) 거기는 엄격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사례 2)

학교, 거리, 공공장소와 같은 밀착된 감시 공간보다는 집이 일종의 비밀 아지트로 활용된다. 이곳에서 친한 친구와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금지된 말이나 노래, 도박, 농담, 춤을 교류할 수 있다. 작은 규모이지만 저항적 하위 문화의 사회적 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심층면접에서 남한노래가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등장한다. 북한에서 남한노래를 공공연히 듣고 부르지 못하게 하더라도 북한 주민은 몰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논다.¹⁶⁰⁾ 사례 2는 친구 40여 명과 함께 집에서 남한음악을 틀어놓고 노래하며 춤을 춘 경험을 이야기했다.¹⁶¹⁾ 남한음악을 즐기는 북한 주민은 청소년, 민간인, 군인 등 성별과 계층이 구분되지 않는다.

남한노래 들었습니다. 군대도 노동할 때 음악 틀어놓는 게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네끼리(친밀한 관계) 일할 때는 남한노래. 새 것에 민감하니까. 궁금한 게 많고, 한국노래 틀어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도 그냥 좋게 듣는 거죠. (사례 8)

군인이었던 사례 8은 힘든 일을 할 때는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흥겨운 음악을 듣는데 친한 동료끼리만 일을 할 때는 몰래 남한노래를 들으며 일을 했다. 젊은이는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기

160)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 (통일연구원, 2020.7.24.).

161)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 (통일연구원, 2020.7.25.).

마련이고 북한의 군인도 그런 젊은이들이라는 것이다. 남한영상에 등장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경향은 젊은 연령대의 문화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남한의 언어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례 6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구끼리 있을 때 진짜 한국말 많이 해요. “아 진짜 옛 같은, 야 쪽팔려” 이런 말은 진짜 일반말로 진짜 많이 해요. “짜가지 없는 년”도 많이 하고. (질문: 원래 북한에 없던 말이에요?) 네. 남자들은 “야~ 어디가~”, “야~ 있잖아~” 사랑사랑 말하고. 남자들은 ‘상속자’ 최영도 말을 제일 많이 따라하는 거 같아요. “나 차였어. 복수해야지. 약 먹었어? 돌았어? 미쳤어? 어우 귀엽다~ 재 왜 저렇게 귀여워?”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점점 심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니까. (사례 6)

사례 6은 남한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보며 성장했다. 그녀는 청소년 사이에 남한영상에 등장한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유행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남한영상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례 6은 남한의 욕이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고 있으며, 무뚝뚝하게 말하던 남학생들이 말을 부드럽게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 정보에 대한 해석과 보관

가. 정보에 대한 해석

(1) 문명에 대한 해석

심층면접에는 외부정보를 통해 문명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북한사회에서 문명은 비문명적인 행동에 대한 예시와 함께 북한 주민이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으로 교육된다. 사회주의문명 담론은 북한 주민이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문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한다.¹⁶²⁾ 2019년 로동신문 사설에 논의된 사회주의문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¹⁶³⁾

<표 Ⅲ-1> 사회주의문명 논의 구조

지향: 사회주의문명건설			
목적	주요 활동	조건과 환경	수정사항
전체 인민의 사회주의 문화 생활	문화지식/소양	학습/문화정서생활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으로 생활
	건강한 체력	학교, 기관, 기업소 대중 체육활동	체육 사업 개선
	도덕품성	건전한 생활, 민족자부심	이색적인 사상문화/생활양식
	보건	의료기구, 설비, 병원 현대화	의료생활 질 제고

출처: 필자 작성

북한정부는 북한 주민이 문명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¹⁶⁴⁾ 북한 주민은 문명한 조건 속에서 건강한 체력과 도덕품성을 지키며 문화지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어려운

162)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 문명국입니다.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장군님이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 보건, 문화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3.1.1.

163) “사설,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2019.1.26.

164) 대표적으로 스키장과 온천, 승마장, 물놀이시설 등이 사회주의문명한 생활조건으로 구비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송고한 인민사랑속에 펼쳐지는 사회주의문명의 새 화폭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을 더듬어,” 『로동신문』, 2019.5.14.

환경이더라도 각자 처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밤새 일을 하더라도 잠잠이 책을 읽고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한 사람은 예의 있게 대화하고 공공장소에서 품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문명에 대한 강조와 비문명적 행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어떻게 교정해야 할지에 대해 요구하는 방식은 중국에서도 같은 결로 다뤄진다.

2012년 11월 시진핑은 낙후하면 수모를 당하기 마련이라며 중국을 문명한 국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연설한 바 있다.¹⁶⁵⁾ 주요 문건은 문명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비문명적 행위에 대한 예시는 언론 그리고 거리 곳곳에 전시된 현수막 표어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길을 걸으면서 침을 뱉는 행위,¹⁶⁶⁾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¹⁶⁷⁾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등¹⁶⁸⁾ 낙후한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고 비위생적인 시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⁶⁹⁾ 문명에 대한 강조와 비문명적

165)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난날을 돌이키면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락후하면 수모를 당하기 마련이며 발전만이 자강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을 분석해보면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도모가 운명을 결정하며 한갈래 정확한 길을 찾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정확한 길을 따라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청사진을 현실화하려면 아직도 아주 먼 길을 걸어 나가야 하며 아직도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습근평: 중화민족의 부흥 곧 중국꿈,” 『길림신문』, 2012.11.30.

166) 중국정부는 문명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문명한 시민이 되자〉, 〈나쁜 습성을 타파하고 위생을 지키며 공덕을 지키고 문명을 숭상하자〉, 〈국가급위생도시를 건설하여 전민의 건전한 자질을 향상시키자〉, 〈마구 침을 뱉지 말자〉와 같은 표어를 담아 거리에 현수막을 전시한다. “요즘 연결시 거리나 주요 길목들에 〈국가급위생도시를 건설하자〉,” “연길거리의 현수막,” 『길림신문』, 2010.6.16.

167) “공공버스 탑승도 문명하게,” 『길림신문』, 2010.6.24.

168) “연변주 〈문명한 연변사람〉 주제활동 가동,” 『길림신문』, 2010.3.29.

169) 문명을 남한에서 이야기하는 매너라고 해석해주는 탈북민의 인터뷰를 이해하기 위해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1일 밤, 남아공월드컵 G조 제 2회 조별리그 포르

행동에 대한 지적은 올림픽, 엑스포와 같이 중국의 대외적인 공식행사가 있을 때 더 강해진다. 문명하지 못하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으로부터 낙후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 수모를 당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주요 문건에는 문명에 대한 큰 담론만 나열될 뿐 비문명적 행위와 시설에 대해 어떻게 교정해야 하는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과 TV, 『천리마』, 『조선녀성』과 같은 간행물에는 고상한 언어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자세한 행동지침이 전달된다. 고상하지 않은 언어생활, 즉 야비하고 몰상식한 말을 쓰는 것, 외국어를 마구잡이로 쓰고 사투리로 말하는 습관,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 습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태도는 비문명적인 행동이다.¹⁷⁰⁾ 공공장소에서 옷차림과 몸단장을 단정하고 문명인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상점이나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할 때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여 다른 사람의 감상에 지장을 주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것 역시 비문명적 행동임을 알려주는 것이다.¹⁷¹⁾

북한이탈주민도 심층면접에서 문명을 예절과 매너라고 표현했다. 20대 남성 사례 10은 군복무하기 전까지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청소년이기에 남한드라마를 많이 봤다. 그는 네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교차되는 남한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했다. 사례 10은 남자 주

투갈과의 경기에서 조선팀은 경기 시작부터 주동적인 공격으로 드센 기세를 보였으나 빠른투갈팀의 진공이 더욱 효율적이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조선팀은 지난 브라질팀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문명표현을 계속 이어갔다. 선수들의 몸 놀림이 지나치게 깨끗하였다. 전반경기에서 반칙이 3차, 상대방 18차 반칙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문명》이 조선팀의 통제 불능 국면을 조성했다.” “월드컵-조선 지나친 문명으로 꿈을 깨버렸다.” 『길림신문』, 2010.06.22.

170) “고상한 리상과 지향으로 아름다운 우리생활 사회주의문명건설과 높은 문화수준,” 『로동신문』, 2020.5.31.

171) “공공장소에서의 레절,” 『로동신문』, 2020.4.19.

인공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꽃을 선물하며 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행동 양식을 보며 문명하다고 생각했다.

‘폴하우스’ 기억에 납니다. 진짜 엄청 재미나게 봤어요. 연애적
이잖아요. 북한에 삼각관계 없잖아요. 엄청 재미나죠. 엄청 미치
죠. 꽃도 선물하고 프리포즈도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놀라가지고 감탄을 하고 그런 데
이용되죠. 남자들이 따라 배울 건 배우죠. 문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나 너 좋아하니까 사귀자” 하는 것보다 꽃한송이 주면서 “사
귀자” 하면 화려하고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히 북한
은 여자를 단방에 꺾지 못하면 남자새끼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있
거든요. 여자가 “안 사귄래” 하면 “어 좋아. 며칠 시간 주겠어. 그때
는 답해” 강다짐이죠. “나 남자친구 있어” 하면 그 남자친구 때려놓
는 거예요. 여자라는 게 센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자 앞
에서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술적으로 하려고. 똑똑한 사
람이면 예술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사례 10)

사례 10은 북한에서 청소년기 싸움을 많이 했다. 그는 북한은 남
자라면 싸움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싸움
끝에 상대편이 크게 다쳐도 남한과 비교하면 경미한 비용의 손해배
상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학교와 사회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많이 싸워봤고 경험적으
로 센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한드라마에
는 삼각관계일지라도 힘이 센 남성이 경쟁하는 남성을 무리하게 굴
복시켜서 우격다짐으로 여성을 쟁취하지 않는다. 남자 주인공은 꽃
과 선물을 동원한 고백으로 마음을 표현하여 여성의 마음을 얻는다.
사례 10은 폭력으로 여성을 상대방 남자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과정과 노력이 더 문명하게 보였고, 자신을 포함한 북
한남자들이 그러한 점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2) 문명의 관점에 삶을 비교하기

북한 주민의 시선은 외부정보로부터 북한보다 좋아 보이는 부분을 단순히 배우거나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와 외부를 비교하는 지점으로 나아간다. 교원이었던 20대 여성 사례 6은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과 비교했을 때 남한이 더 문명해 보였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사례 6은 부자인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등장하는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 주인공보다 여자 주인공을 주목했다. 가난한 여자는 부자인 남자에게 주눅 들거나 의존하지 않고 당차게 말하고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고 대학에도 간다.

‘꽃보다 남자’를 제일 감동 있게 본 거 같아요. (부자인) 구준표의 화려한 생활보다 (가난한) 금잔디의 생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굶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 하나로 살면 저렇게도 될 수 있겠다. 자기가 노력해서 대학에 갔고 진짜 열심히 살고, 북한은 아무리 일해도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도 없고, 대가없는 일을 하는 게 너무 허무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쉰다는 날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점심밥 먹고 일하고, 여기는 주말에 가족끼리 놀러가고 영화관도 가고 교통도 발전되고, 북한은 다 집에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문명하다고. (사례 6)

사례 6은 수완 있게 사업하는 어머니 덕분에 풍족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대학까지 졸업하여 교원이 되었다. 그러나 교원이 받는 월급은 비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사례 6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만큼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체제에서 살고 싶었다. 게다가 가난한 여자 주인공은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휴일에는 영화관에도 가고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자신은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적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았다. 문명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녀가 사는 고장에는 문명한 문화시설이 없었다. 그녀는 집에서 남한영상을 보며 문화생활을 했고, 자신이 처한 현실과 비교하며 남한이 더 문명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내부와 외부에 대한 비교는 문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문명할 수 없는 북한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발견하는 지점으로 나아간다. 북중 접경지역 마을에 살면서 장사를 했던 부부 사례 3과 4는 함께 남한드라마를 보면서 주변 북한 주민 특히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과 인사할 때 나누는 언어생활의 변화를 눈여겨봤다. 사례 3과 4는 북한사회에서 남한영상을 본 사람은 남한영상에 등장한 옷차림을 비롯하여 언어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한영상을 본 사람끼리는 서로가 알아본다는 것이다. 사례 3과 4는 북한에서 중요하게 교육하는 예절과 도덕보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한사회와 사람의 행동 양태가 더 예의바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다. 세련된 멋진 태도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세련되게 행동하는 것, 세련되어 보이게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개인의 취향은 그가 속한 가정의 배경과 환경, 가치관, 분위기, 권력, 계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부르디외는 “어떤 특정한 사회적 집단의 모든 행위자들은 일련의 기본적인 지각도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람은 높은(고상한, 순수한) 것과 낮은(저속한, 천한) 것, 섬세함(세련된, 우아한)과 조야함(야비한, 야만적인, 난폭한, 조잡한)으로 표현될 수 있는 취향을 갖게 마련

이다. 그리고 드러나는 취향을 통해 상대의 지위와 계급을 감각한다.¹⁷²⁾ 그러나 북한은 옷차림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마음껏 드러내는 행위를 통제한다.

북한정부는 민족적 감정과 고상한 정서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삶의 양식으로 규범화하여 북한 주민을 교육한다.¹⁷³⁾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매우 까다롭다. 외모를 단장할 때에는 민족적 정서와 감정에 맞게 얼굴 생김새와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고상하고 아름다워야 한다.¹⁷⁴⁾ 고상하지만 검소해야 한다. 지위가 높아

172) 부르디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취향은 사회 속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는 “육화(肉化)된 사회구조”이다. 삐에르 부르디외의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1996), pp. 762~769.

173) “사회주의생활양식은 가장 우월한 생활양식,” 『로동신문』, 2020. 7. 13.; 사회주의생활문화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백옥련, 『사회주의생활문화사연구 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17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머리단장 같은 것은 생김새와 나이, 직업에 맞게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생김새와 나이 등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머리형태는 사람을 보다 젊어보이게 하고 인품을 돋구어준다. 여성들의 머리형태는 머리칼길이에 따라 긴머리형태, 중간머리형태, 짧은머리형태로 나눈다. 긴머리형태는 뒤부분 가장자리머리칼길이가 11~15cm정도로서 뒤머리칼이 어깨높이정도로 드리우게 되는 머리형태이다. 중간머리형태는 뒤부분 가장자리머리칼길이가 6~10cm정도로서 뒤머리칼이 뒤목 7경추부위에까지 드리우게 되는 머리형태이다. 짧은머리형태는 뒤부분 가장자리머리칼길이가 5cm이하로서 뒤머리칼이 아래턱과 거의 일치되는 위치까지 드리우게 되는 머리형태이다. 그러므로 머리형태는 나이와 머리형태상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사회에 진출한 처녀들이나 갓 결혼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긴머리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앞머리칼을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할수 있다. 대학생처녀들은 단발머리, 땡은머리로 단장하는것이 좋다. 중년기에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기호 등이 부단히 변화되며 머리형태에 대한 요구도 점차 달라지게 된다. 이 시기 여성들의 머리형태는 머리칼길이가 길지 않게 굵실굵실한 중간머리형태로 하여 고상하며 산뜻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조건치마저고리를 입어도, 양복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 중년초기의 여성들은 청년에 가깝기 때문에 굵실굵실한 물결모양으로 여러 가지 장식을 주어 단장할 수 있다. 중간머리형태도 나이와 얼굴생김새에 따라 날개형, 제비형, 분수형, 나비형, 구슬형 머리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로년기에는 단정하면서도 위생적인 관리에도 편리하게 짧은 머리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우자 나이에 어울리는 여성들의 머리단장.” 『로동신문』, 2019. 4. 21.

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인민성이¹⁷⁵⁾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범적인 행동의 전형을 가장 큰 권력자가 실천한다. 평범한 북한 주민과 같은 옷을 입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이다.¹⁷⁶⁾

정부가 아무리 통제해도 북한 주민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때 고상하고 검박하게 살아야 하는 양식 속에서도 신중하고 섬세하게 차별화 전략이 시도된다. 40대 남성 사례 1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아직 문명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북한은) 상대방을 만날 때 우선 위압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허술하게 입으면 허술하게 보거든. 나는 장백산 담배를 피는데 저 사람은 제비 담배를 피워. 허술해지잖아. 나는 오토바이를 타는데 저 사람은 자전거를 타. 나는 터치폰 쓰는데 저 사람은 막대기(폴더폰)를 써. 자존심이 꺾이고 사람이 꺾이고. 그러니까 남보다 더 좋은 거를 가지려고 해. 곁에 보이는 걸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라이터, 휴대폰, 담배, 옷 이게 사람의 급수야. (남한은) 외제차를 타도 그것을 누구에게 위협하고 위압하려고 안하고 아무도 그걸 부러워 안하잖아. “멋지구나”하면 끝이고. 할부로라도 사고 싶으면 사는 거야. 신비하지 않지. 으시댈 필요가 없고. (질문: 남한도 그래요) 없지 않지. 그래도 좀 높은 단계야. (사례 1)

곁에 드러나는 물건으로 상대를 위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월감

175)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 또는 품성,” 『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700.

176)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을 찾아가서, 대중을 표현하며, 해결하며, 대중과 같은 의복을 입으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또한 대중을 배워주는,” 김일성, 『김일성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p. 120~121.

을 만끽하기 위함이 아니다. 규범적으로 북한인민은 모두가 평등하고, 당의 일꾼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일상 속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지위가 다름을 조밀하게 경험한다. 검열조는 아무나 검열하지 않는다. 검열을 하면 순응할 지위에 있어 보이는 사람을 검열한다. 북한 주민은 매순간 지위를 겨루지 않더라도 지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일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소속을 밝히고 지위를 겨루지 않더라도 지위가 높아 보일 수 있는 담배, 이동전화, 옷차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옷차림, 예를 들어 정서에 맞지 않는 무늬나 요란한 장식이 있는 옷, 품이 너무 좁은 옷과 같이 이색적인 옷차림을 하면 안 된다.¹⁷⁷⁾ 북한 정부는 옷차림과 머리모양, 말투에서 그 사람의 사상이 건전한지가 드러난다고 교육하며 북한사회에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진 생활검열이 존재한다.¹⁷⁸⁾

매너라고 하는 거 북한에서는 ‘예절이 밝네. 도덕이 밝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면 “아, 재 한국드라마 많이 봤네” 딱 알아요. 도둑놈이 도둑놈을 안다고 우리가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의 매너를 아는 거예요. 예절이 밝고 인사도 깎듯이 하고, (북한) 젊은

177) “사회주의생활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우자 우리이년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로동신문』, 2019. 4. 21.

178) 로동신문의 사설은 사람들이 외부문화, 즉 비사회주의적 문화에 정신을 침식당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이색적인 현상은 사람들의 정신을 침식하고 사회를 변질타락시키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한 형태이다.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지 않게 하고 다니는 현상, 문화어를 쓰지 않고 외래어와 사투리를 섞어가며 언어생활을 망탕 하는 현상 등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침해하는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이다.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사상문화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여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는 계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편승하는 리적행위라는데 이색적인 현상의 해독성과 엄중성이 있다.” 신분진,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은 전군중적인 사업,” 『로동신문』, 2020. 3. 10.

애들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패션도 뭐랄까, 촌스럽게 안 입고, 어린 애들인데 세련되게, 머릿도 딱. 그걸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심지어 가위까지 딱 들고 나와 서있거든요. 진짜 자르거든요. 송덩. 아무리 예절 배우고, 도덕 배우도. (사례 3)

북한 주민은 정부가 문명과 예절을 중요하게 교육하지만 정작 길을 걷다가도 옷차림을 검열 받고 규범에 어긋나는 차림새면 그 자리에서 옷과 머리카락을 잘리는 현실에서 비문명을 느낀다.¹⁷⁹⁾ 심층 면접은 북한 주민이 문명을 자신이 지켜야 하는 고상한 행동규범으로 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사회구조가 문명을 훼손한다는 비판으로 나아간다.

보위원 앞을 지나갈 때 한심한 척, 건방져 보이고 좀 잘난 체 하고 그러면 걸리죠. 될수록이면 눈 마주치려고 안하고 될수록이면 자세를 낮추는 거죠. 눈에 티나게 안하죠. 살면서 배워요. (사례 4)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억압적인 북한사회는 아무리 고상하게 입고 말해도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검열에 대비한 방어적인 태도를 체화하게 한다. 사례 4는 검열하는 사람 앞을 지날 때면 건방져 보이지 않게 몸을 웅송그리며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한심한 척(어리숙한 척)’ 행동했다. 사례 3과 4는 어리숙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북한과 주눅 들지 않고 밝고 세련되게 행동할 수 있는 영상 속 남한을 비교했다. 북한에서 옷차림과 머리 모양과 같은 개인의 취향은 검열의 대상이며, 북한 주민은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외양을 갖춰야 한다. 만약 검열에 걸리면 비사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179)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3 (통일연구원, 2020.7.26.);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4 (통일연구원, 2020.7.26.).

증명하기 위해 어리숙하고 순진한 모습을 연출하여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 사례 4는 북한 주민이 남한영상을 보며 내부와 외부의 사회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의식이 변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표현했다. 개인의 취향에 대한 타인과 자기 자신의 검열 없이 각자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회가 더 문명하게 느껴지고 다른 북한 주민의 시선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외부정보에 등장하는 생활양식을 자신의 일상에 투영한다는 것이다.¹⁸⁰⁾

(3) 외부정보 상징기호를 체화하기

옳고 그른 것을 비롯한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권을 정부가 독점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 각자의 의견을 소외시킨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세심한 방식으로 자신의 취향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본질적으로 유일한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사례 5는 세심한 자기 취향 드러내기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평양의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가장 좋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그녀는 이후 자신과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공부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부부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5는 북한, 특히 평양은 외부정보를 보고 자신이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드러내다가 검열에 걸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위를 상실하는 과정은 비참하다. 공개폭로모임에서 비판을 받고 이 장면은 “중앙방송위원회 기자들이 촬영해서 TV”로 방영된다. 사상투쟁이 끝나면 평양에서 추방되어 지방으로 가게 된다. 그녀는 평양에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정보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더라도 “가장 수수하게 가장 미미하게, 고상하면서 세련되게, 치마도 너무 올라가지 않게 입으면

180)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4 (통일연구원, 2020.7.26.).

서 어딘가 모르게 포인트는 있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세련되게” 입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례 5는 평양에서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며 만용을 부리면 “안 되죠. 그럼 없어지죠. 없는 체 해야죠. 있는 사람은 수수하게 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밝힌다고, 눈에 별나게 띄면 안 되죠. 멋있게 뽐내는 것은 자기 죽기를 자처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권력이 있어도 “금수저면 뭐해요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까딱하단 꼬떡이다. 까딱하려고 하면 꼬떡하고 쓰러진다”며 장성택과 그의 주변 사람에 관해 본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했다.

그러나 사례 5의 이야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그리고 높아 보이게 하는 취향으로 외부정보를 활용한 경험이 등장한다. 그녀는 자녀가 두 부부와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했으며 정부가 규제하는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더만의¹⁸¹⁾ 악보집을 무리하게 취득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피아노 시키려고, 리차드 곡은 북한에서 통제하거든요. 몰래 빌려가지고 복사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있는 거죠. 파일로 돌리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걸로 돼있거든요. 파일이 어디서 나온 건지 마지막까지 추적해요. “대라. 대라. 어디서 냈냐.” “장마당에서 샀습니다.” “장마당 누구냐.” 끝까지 파기 때문에. 유출한 사람이 교화 가거든요. 교화 갔다 오면 운명이 막히니까. 직장에도 취직할 수도 없고, 리차드곡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지. 문명

181)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더만(리샤르 클레테르망)은 1976년 ‘Ballade pour Adeline’을 녹음한 이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1979년 시작한 콘서트 투어는 2017년 기준 아프리카와 북한을 비롯한 몇몇 공산권 국가를 제외한 83개국에서 2,550회 기록 중이다. 특기할 일은 1992년부터는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연하고 (355회) 있으며 특히 1987년 중국 콘서트는 8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봤다는 것이다.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홈페이지, <www.clayderman.co.uk> (검색일: 2020.10.2.).

세계가 발전되고 귀가 트이고 노래를 들으면 “어느 곡이지” 이 정도로 발전되지 못했거든요. (경연에는) 못나가죠. 그저 어디 가서 동무들 앞에서 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의 위상을 좋게 하는 그저 그 하나쯤. (사례 5)

사례 5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국가에서 정해진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시장에서의 돈의 가치 차이가 비현실적으로 큰 격차를 지닌 북한 경제 구조의 모순 때문에 북한 주민이 모두 각자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 5는 좋은 대학에 가야 안정적으로 비공식적 월급을 충당할 수 있는 직업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은 그저 공부가 아니라 생존 경쟁이라고 말했다.

사례 5는 북한사회에서 예술부문이 매우 중요하고 대학마다 예술을 잘하는 학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입시전략으로 공부와 더불어 피아노교육을 선택했다. 그러나 피아노 부문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모두가 연습해서 장기를 사랑하는 연주가 아닌 외부문화에서 온 연주곡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연주곡은 북한에서 금기이지만, 자신처럼 그 곡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유명한 곡이다. 사례 5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곡이 아니라 아는 사람은 서로가 고급한 취향에 접근이 가능한 지위임을 감각할 수 있는, 모르는 사람은 딸의 연주를 주목할 만한 금지된 악보를 위험을 무릅쓰고 입수한 것이다. 사례 5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주민은 외부정보가 담긴 기호에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외부문화를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떤 세련됨을 장착했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지위, 위치, 계급을 드러내는 의사소통의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뒤집어 해석하기

북한 주민은 정부의 언어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역설을 찾아내고, 뒤집어 읽으며 북한의 공식정보를 해석한다.¹⁸²⁾ 북한의 언론매체는 남한주민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하는 소식을 영상과 사진 그리고 시민의 요구와 선언문까지 자세하게 다뤘다. 이 정보에 대해 사례 9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저는 역으로 읽었어요. 우리 신문은 박근혜를 막 욕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떨어지겠어(퇴진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신문 펼칠 때마다 촛불시위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인가는 진짜로 떨어지고 막 징역가고.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굉장히 국민이 세네. 투쟁하니까 대통령도 떨구네.’ 만수대TV에서 한국노인이 어렵게 사는 편집물을 봤는데, 북한에는 노인연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있다 해도 쌀 100g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남한) 노인이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고 나왔는데 먹는 게 라면하고 밥, 찬밥. 보면서 ‘괜찮네! 북한에는 옥수수밥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 가득한데. 저 할아버지는 라면에 흰 쌀밥을 먹네. 우리보다 나은데’ 생각했죠. (사례 9)

남한주민이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서 촛불에 의지하여 얼마나 힘들게 시위하고 있는지 교육하기 위해 전달한 공식정보는 오히려 북한 주민에게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감옥에 보낼 만큼 힘이 있는 남한주민을 발견하게 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남북한을 비교하며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행복했을 사람이 남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받는 고통을 영화와 소설, 그

182) 보리스 그로이스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민중은 근본적으로 잘 믿지 않는 존재들이다.” 보리스 그로이스 지음, 김수환 옮김, 『코뮤니스트 후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7), p. 32.

림으로 설명해주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남한에서 생성된 언론매체의 보도를 편집하여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이를 보는 북한 주민은 북한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세밀한 부분을 관찰한다. 가난한 노인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영상에서 북한노인보다 더 좋은 복지, 즉 홀로 사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남한의 복지 체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모순을 찾고, 내용을 뒤집어 해석하는 경향은 북한의 내부정보를 통해서도 시도된다.

중국은 그래도 반(半)사회주의 아니에요? 다 (개혁개방)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냐. 저희 때 역사교육에서 대원군의 쇄국정책 배웠는데, 딱 보니까 완전 쇄국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린 친구들 역사교과서에 쇄국정책 없어졌어요. 대원군에 대한 거 없었어요. 몽땅 삭제했어요. 대원군이 쇄국정책한 게 지금 북한이랑 똑같거든요. (사례 7)

10년 동안 북한 무기 공장에서 근무했던 30대 남성인 사례 7은 북중 접경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매일 보면서 지냈다. 그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해서 자신들과 비슷하게 가난했던 강 건너 중국주민의 삶은 점점 좋아지는데 왜 북한만 대북제재를 받으며 고립된 채 지내는지에 대해 매우 분개했다. 그는 자신이 무기 공장을 지키는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 무기를 만드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례 7은 무기를 만드는 데 지나치게 돈을 쓰며 봉쇄를 자처하는 북한정부가 역사책에서 배운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같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배운 역사교과서에는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고집해서 조선의 개혁을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표기되어 있었다며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현실과 비교했다.

20대 남성 사례 8은 조선중기 백성을 억압하며 사리사욕을 채웠던 지배권력에 대한 임꺽정의 난을 소설과 영화로 보며 북한의 현실이 조선시대와 같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북한 주민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토로한다.

자유권이 쥐어졌다고 하지만 자유가 없고 밟으면 밟혀야 되고 임꺽정 시대랑 똑같다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꺽정 그래서 못 보게 합니다. 노래도 못 부르게 합니다. 임꺽정은 홍명희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영화도 못 보게 한단 말이야. 일제 강점기 때 일본놈들 폭정하고 탄압하고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놈들보다 더 하잖아. 김정일이가 ‘농촌진지를 강화해서 농장자녀를 다 집에 보내라’ 방침해서 저도 그걸 당하고 김정은이도 지시 내려오고. 만약 제가 군복무 끝내고 함흥시내 살지 않습니까, 직장을 가지고? 그러면 직장 노동과에서 조사합니다. 출신성분 쪽 (조사)해서 다시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사례 8)

사례 8은 농장원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꿈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농장원이 되어야하는 자신의 현실이 소설과 영화 ‘임꺽정’에 나오는 조선시대의 계급적 모순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례 8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공산주의 관련 도서를 읽어보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북한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라면 공산당 선언, 맑스-레닌주의를 배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안 배워(가르쳐)줍니다. (북한)사람들이 원본을 읽으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겠는데요. 그러니까 안 배워주죠. 인터뷰하면서 북한에서 공산당선언 봤다는 분 보셨습니까? 맑스-레닌주의가 전 되게 궁금했습니다. 대체 그 사상이 뭐 길래. 일본놈들이 그렇게 김일성이 독서모임을. 그게 뭘까? (사례 8)

사례 8은 북한에서 김일성의 회고록을 읽고 위대성 교육을 받았던 기억으로부터 대체 왜 북한정부는 사회주의 사상도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통제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회고록에는 김일성이 일제시기 중국의 길림 육문중학교에 다니며 타도 제국주의 동맹활동을 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보다 ‘공산당선언’, ‘자본론’, ‘국가와 혁명’과 같은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저작을 탐독하면서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근로하는 인민들을 잘살게 할 수 있을지 공부했다고 하는데¹⁸³⁾ 왜 정작 북한 주민은 그 책들을 볼 수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사례 8은 남한에 온 이후 공산주의 원서를 찾아보면서 왜 북한 주민에게 이 서적들이 금서인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북한 주민은 김일성을 위시한 수령만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고 교육받는데 공산주의 사상 원서를 읽으면 국가가 표방하는 사상과 현실의 모순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함경북도 강계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했던 40대 남성인 사례 1은 북한에 있을 때 체제 비판적 소설을 쓰며 은밀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자신이 쓴 소설을 출처를 말하지 않고 친구들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넣어두고 나중에 자신도 전달받은 양 혹시 소설을 읽었는지 묻고 그 내용이 어땠는지 소감을 나누며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해소했다. 그는 자신의 소설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남한에도 가지고 왔다.

183)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00~203.

저는 글을 써요.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영상물도 만들고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정치범수용소 가는 대상이거든요. 북한체제에 대한 분석이에요. 경제생활, 정치생활, 인권. 소설이에요. 인간의 운명은 한마디로 사회에 달려있다는 소설. 제가 주장하는 거는 겉에 가리운 것이 핵의 장막일 뿐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같은 인간이 사는 곳이다. 사막에 생명체가 없나.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다.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 뿐이지 맑은 물에 사는 잉어의 생만을 삶이라고 말하지 말라. 감탕(곤죽같이 된 진흙) 속에 사는 미꾸라지도 자기 식의 삶이 있다. 잡혀서 탄압받을 땐 받더라도, 하지 말라고 해도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그 무엇으로도 속박하지 못합니다. 주의할 뿐이지. 북한은 3명 중 하나는 스파이라고 보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IT기술로 빠진 거예요. 암호를 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컴퓨터도 4대나 남아있어요 우리 집에. (사례 1)

사례 1은 외부정보가 담긴 인민대학습당의 책을 불법으로 입수해서 읽으며 공부하고 북한사회의 모순을 발견했다. 그는 북한 주민이 폐쇄된 북한체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부가 가르치는 대로만 사고할 것이라는 외부세계의 시선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에 접촉할 수 없는 폐쇄 공간에 살고 있어도 그 안에서 사람은 저마다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몰래한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리 국가가 결정하고 강제해도 북한 주민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까지 속박할 수는 없다. 사례 1은 컴퓨터를 소유하기 이전에는 소설을 원고지에 작성할 수도 있었지만 원고지는 숨기기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 그러나 컴퓨터는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한 채 자신만의 공간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점을 그대로 써내려 나갈 수 있는 기기이다. 원고지와 다른 점은 더 작고 암호를 걸어둘 수 있는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완벽하게 은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북한사회가 개인의 자기표현을 통제하고 체제 비판을 감시하더라도 북한 주민은 손톱보다 작은 이동식 기억장치에 전복적 언설을 담아 친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작은 공동체와 공유한다. 이러한 시도는 아주 작은 규모라도 피지배 하위문화를 실행하는 실천이다.

나. 정보의 보관

(1) 컴퓨터

컴퓨터를 소유했던 북한 주민은 북한 안에서만 가능한 인터넷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외부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안에서의 정보활동과 영상, 음악, 게임, 문서를 감상하고 읽는 활동을 한다. 북한 내부망도 본인이 결정하면 연결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금기하는 외부정보를 감상하고 읽을 수 있으며, 개인의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열조가 왔을 때 바로 숨길 수 없으며 주된 검열대상이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검열대상인 외부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담은 텍스트와 같은 정보는 검열 받아도 되는 내용만 컴퓨터에 저장하고 단속대상인 정보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위기상황을 대처한다.¹⁸⁴⁾

(2) 이동전화

이동전화에 정보를 보관하여 외부정보에 접촉하는 북한 주민도 있다.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20대 남성인 사례 10은 일상적으로 이동전화를 통해 불법으로 외부정보를 접했다.

184)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 (통일연구원, 2020.7.24.).

(질문: 핸드폰으로 주로 뭐해요?) 그냥 비디오 봤고요.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노래 듣는 앱을 많이 썼거든요. 북한노래하고 중국노래 기본으로 들었죠. 한국노래도 조금씩 듣고, 노래는 흐르는 거니까. 북한노래 사이에 한국노래 섞어서 들죠. (사례 10)

북한에서 이동전화를 가지고 주로 영상재생, 사진촬영, 음악재생 앱을 사용했다. 이동전화는 길을 걷다가도 검열받기 때문에 비교적 데이터의 용량이 큰 외부영상을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음악은 비교적 데이터의 크기가 작고 북한음악 사이사이에 남한음악을 넣어놓으면 검열에서 발각될 위험이 낮아서 북한 주민은 음악파일을 이동전화에 보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동전화는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동시에 검열의 주된 대상이기도 하다. 이동전화에는 누군가와 통화한 흔적, 대화를 나눈 문자, 저장된 파일과 같은 사용 흔적이 고스란히 남으므로 북한 주민은 검열에 걸렸을 때 뺏길 위험까지 무릅쓰며 외부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¹⁸⁵⁾ 이동전화 안에 검열에서 걸릴만한 사유가 발견되면 검열하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뇌물을 쥐서 되돌려 받지만 이동전화의 비싼 만큼 되돌려 받을 때의 뇌물도 단가가 높다. 따라서 이동전화에 외부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3) 이동식 저장장치

정보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넣어 암호를 건 상태로 보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동식 저장장치는 나날이 발전하여 장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185)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3 (통일연구원, 2020.7.26.).

장치에 정보를 넣고 빠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그에 소용되는 전력은 점점 적어진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TV, 노트북과 같이 접촉 가능한 기기도 다양하다. 이동식 저장장치는 컴퓨터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다. USB의 세 번째 표준인 USB 3.0이 북한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USB 3.0은 컴퓨터, TV, 음향기기 등 가정용 전자제품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응용범위가 크고 자료를 전송할 때에도 속도가 빠르다.¹⁸⁶⁾

여기에 평범한 북한 주민도 정보를 은닉할 수 있는 암호기술을 가지고 있다. 20대 청년인 사례 2는 1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이동식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 이동식 저장장치에는 노래 3000개와 많은 외부영상이 담겨 있었는데 외부정보단속반이 검열을 해도 외부정보의 모든 파일에 암호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다. 사례 2는 작은 용량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외부정보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편하고 어차피 중고 컴퓨터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저장된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상이 본인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큰 용량의 저장장치에 외부영상과 노래를 담아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고 들었다. 그는 가족사진을 비롯한 중요한 정보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서 남한까지 가지고 왔다.

186) 북한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올해 2월 발행한 '과학의 세계 2020년 1호'에 'USB 3.0에 대한 자료'라는 글이 수록됐다. 이 글은 USB 2.0과 USB 3.0을 비교하는 내용이다. USB는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입출력 표준 프로토콜을 뜻한다. USB 표준을 적용하면 기기들 간에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것인 소형 메모리 반도체에 USB 표준을 적용한 USB 메모리다. USB 표준은 컴팩, DEC,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NEC, 노텔 등이 1994년 개발을 시작해 USB 1.0이 1996년 선보였다. 그리고 2000년 USB 2.0이 발표됐으며 2010년에 USB 3.0이 나왔다. 과학의 세계는 "컴퓨터 주변 장치 대면부의 하나인 USB가 1996년 처음으로 등장해 컴퓨터, TV, 음향기기 등 가정용 전자제품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USB 3.0 모든 장치집속 표준 될 것," 『NK경제』, 2020.7.27.

노래 3000개 정도 가지고 있고, 드라마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외장하드 있잖아요. 외장하드 1TB, 1000기가짜리를 사가지고 암호를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환해보고 그러거든요. 답이 좀 컸다기보다, 어쨌든 USB는 건사하기도 불편하고, 집에서 봤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컴퓨터 암호, 파일 암호, 보안, 진짜 청와대 보안팀보다 더 훌륭해요. 뚫지는 못해요. 제가 (북한에서) USB 하나 가져온 거 있는데, 내가 암호 3개 채웠거든요. 국정원에서 못 채웠어요. 암호를 내가 풀어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풀자고 몇 개 팀이 달라붙어 푸는데도 암호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도, 평상시 아이들 수준이구요. 암호를 그렇게 잘 채워요. 105(단속반)가 와도 컴퓨터 그냥 줘요. 무슨 파일에다 암호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루스(바이러스)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암호를 기어코 깬어요. 애를 쓰고 깬어요. 깬데 안에 (암호가) 또 있죠. 그럼 사람 진짜 타락이죠. 하하. (사례 2)

사례 2는 자신이 USB에 3중으로 암호를 걸어두었는데, 북한과 남한의 암호 체계가 다르기도 하지만 본인이 워낙 용의주도하게 암호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암호를 해제하지 못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 했다. 그는 북한의 청년과 청소년은 암호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생활화되어 있다며 평범한 북한 주민의 정보능력 기술이 발전해 있음을 강조했다. 외부정보단속반이 검열을 하기 위해 이동식 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해도 보이는 것은 그저 검열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즉 보여줘도 되는 자료일 뿐이고 그 사이에 외부영상과 노래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사례 2는 검열대상 자료는 그냥 바이러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암호를 3중으로 걸어놓기 때문에 단속반에서 애를 써서 1단계 암호를 풀어도 또 암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수고 끝에도 보람이 없어서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다며 매우 웃었다.

3. 정보의 교환: 공유와 확산

정보의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은 습득한 정보 혹은 콘텐츠의 다양한 공유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들과 그것이 확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과정에서 보여주는 정보의 공유 방식은 대체로 소극적 공유, 적극적 공유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정보의 확산 방식에 있어서는 매체를 통한 확산, 장소를 통한 확산구조를 이루고 있다.

가. 정보의 공유 방식

외국정보나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 방식에 있어 기본적인 특징은 계층별·세대별로 나타나는 공유 행위의 차이이다. 여기서 계층별은 권력집단과 일반집단, 혹은 부유계층과 취약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계층별 차이에 따라 외국정보 혹은 문화를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극적이면서도 정보공유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북한은 원래 독재가 심한 나라니까 당 일꾼이나 사범, 행정일꾼 모두 생활총화, 강연회, 학습을 통해 주의를 줘요. 이런 거(한국영상물) 절대 보지도 말고 유포시키지도 말고, 봤을 때는 즉시 신고도 하고 강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나 높은 층의 사람들은 지들 나름대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안보는 게 아니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가? 나도 전문 공무원을 하던 사람이니까... 나도 보면 그런 영상물이 있으면 가족이 딱 앉아서 보거든요, 그 누구도 개입 안 시켜요. 다른 간부들도 될수록 가족들끼리만 보거든요. (사례 13)

아빠가 당·행정일군인 자녀들은 한국 영상물이나 상품 공유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에는 정보의 공유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부모들이 없을 경우에는 영상물 청취가 가능하다고 증언한다. 반대로 사법검찰기관이나 군 부관료들의 자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유에 참여하거나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안정성이나 대응(검열·단속)차원에서 젊은 청소년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위계적 질서를 보여준다.

세대별로 나타나는 특징은 2000년대를 전후로 하는 세대별 차이이다. 2000년대 출신으로 10대, 20대 청소년들은 정보의 공유 방식에 있어서도 광범하거나 대담한 방식을 택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7년 이후로 10대, 20대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속에서 집단적으로 한국음악이나 영화를 통해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공유하려는 모습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활풍습, 언어, 연애, 패션, 도덕, 행동 방식의 다양한 변화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평양시는 물론 지방 도시들에서 거주했던 북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의식이다.

북한 내부로 외부의 콘텐츠를 나르거나 확산의 주체가 되는 매개체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들을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둘러싼 이동과 확산,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는 대체로 세 가지다. USB와 외장하드, 심 카드(유심 칩)이다. 1990년대에서는 라디오를 중심으로 TV(극히 제한된 지역), 전단 등이 지하의 외부정보를 나르는 중심 매체였다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엽까지는 라디오와 함께 CD, DVD, MP3, MP4 등 디지털장치들이 콘텐츠를 나르는 주요 매체로 등장했다. 김정은 정권을 향하면서 점차 USB가 가장 대중적인 저장매체로 등장하였고, 4GB, 8GB 등 일반용량의 메모리에서 48GB, 100GB를 초과하는 비교적 큰 용량의 외장하드들도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거의 모든 가정들에 두세 개 이상의 USB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안정성을 담보로 청소년들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저장매체는 유심 칩이다. 유심 칩은 용량에 따라 시중에서 10위안(중국 원)에서 50위안까지도 거래된다.¹⁸⁷⁾ 유심 칩은 다른 저장매체들에 비해 비교적 통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한다. 첫째, 우선 핸드폰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핸드폰을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둘째,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수시로 통제당국의 감시 하에 있지만, 유심 칩은 보다 은밀히 감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도로나 길거리에서 불의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고 한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위급한 순간 유심 칩을 빠르게 먹어버리는가 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브라에 감추고 다니기 때문에 쉽게 단속망을 벗어날 수 있다.¹⁸⁸⁾ 이 때문에 현재 북한의 도로나 철도, 지역 간 이동초소 등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동검열 목적의 기본은 저장매체들에 대한 검열 및 단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국경지역에서는 군인들을 통해 다방면적으로 공유되기도 한다. 국경연선에서는 ‘중국대방(중국 상인)’과 중국휴대폰으로 서로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이용하여 영화나 음악을 16GB 유심 칩에 전송받아 다시 컴퓨터로 압축하는 방식이다.¹⁸⁹⁾

USB는 유심 칩에 비해 복사나 공유가 간단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만 가능하다. 대신 유심 칩은 복사가 불가능하므로 대여나 판매가 일반적이다. 또한 단속에 대비해야 하므로 2중, 3중으로 된 암호

187)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6 (통일연구원, 2020.7.29.).

188)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0 (통일연구원, 2020.8.5.).

189)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0 (통일연구원, 2020.8.5.).

화는 필수적이다. 유심 칩을 통해 한국영화를 대여하는 전문 서비스도 김정은 정권에서 생긴 것이다. 초기 대여비용은 50위안으로 절친과 반반씩 영화를 나눠볼 경우, 대여비용을 10위안씩 나눠서 지불하고 25위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¹⁹⁰⁾ 일반 도시에서는 8GB 한국영화가 50~100위안(한화 약 8,700~17,500원)으로 거래된다. 한번 구입하면 서로 바꿔보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제작 기간이 최근에 가까울수록 거래되는 영상물의 가격은 비싸다. 예를 들어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지붕 뚫고 하이킥’과 같이 시기별로 빠르게 진입하는 드라마들은 한 편당 5,000위안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다.¹⁹¹⁾ 이는 그만큼 북한으로 유입되는 콘텐츠들의 흡수 정도가 지난 시기에 비해 상당히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거래되는 외부 콘텐츠의 유형은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① 특급영화 혹은 영상물(봄이 온다, 야동 등)로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최근 제작된 영상물, ② 중급은 촬영시기가 1년 내지는 3년 이상 지난 영상물, ③ 일반등급으로는 90년대 출품되고 공유된 영화 및 영상물이다.¹⁹²⁾

현재 많은 지역들에서 현금으로 USB를 구입하는 사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연좌제에 의한 단속과 통제에 대비하여 절대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타인과의 공유는 금기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속에 대비하여 절친들 사이에서만 비밀공유를 하고 상호 동일한 정보공유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네트워크는 수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둘만의 비밀공유가

190)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6 (통일연구원, 2020.7.29.).

191)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 (통일연구원, 2020.7.25.).

192)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1 (통일연구원, 2020.7.23.).

나중에는 수십, 수백 명의 정보공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하나의 USB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돌고 돌아 다시 원 위치로 복귀하게 되는 이른바 ‘중복공유’ 현상도 보편화되고 있다.

최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젠 “70% 이상의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며, 놀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다.¹⁹³⁾ ‘한국드라마를 보면서 디스크를 배우고 그 속에서 청바지를 만들어 입고, 그렇게 단속되고 처벌받으면서 우리도 이제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간다. 우리도 너희 추세를 따라간다’고 속삭인다. 도로에서 규찰대에 의해 청바지가 잘려나가면, 뒷골목에서 다시 청바지를 입고 춤을 춘다는 것이 북한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변화다.

나. 정보의 확산 방식

북한에서 정보의 확산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체를 통한 확산, 공식·비공식 장소를 통한 확산이다. CD나 DVD와 같이 디스크에 의한 콘텐츠확산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00년대 중반이다. 당국이 금기시했던 외국의 문화콘텐츠로는 한국, 미국, 홍콩, 인도, 일본산 문화콘텐츠이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들은 국경에서 유입되기도 하지만 주로 평양, 평성, 남포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한 편의 새 영화가 전국의 시장조사를 거쳐 많게는 몇만 장씩 복사되는데, 이때 복사된 디스크 거래는 안정성을 위해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만 거래됐다. 또한 디스크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몸체는 쉽게 사람들을 노출시키고 단속대상이 되게 했다.

그러나 이제 외부정보가 소장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저장매체를 이용한 복사, 편집, 암호화 등에 대한 전문 서비스도 늘

193)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4 (통일연구원, 2020.7.28.).

고 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정보의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보안을 필두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암호화, 복제, 복구 관련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고, 이에 맞는 시스템의 변화에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 초기 4GB, 8GB의 USB가 점차 인기를 모으면서 TV도 디지털 TV로 빠르게 바뀌었다. 이는 에너지 문제 해결과 동시에 TV, 노트북과 같이 태양광열판으로도 작동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을 선호하면서 유행처럼 나타난 태양열판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중고 컴퓨터는 1,200~2,000위안, 신품 컴퓨터는 3,800~4,000위안으로 거래된다.¹⁹⁴⁾

노트텔이 있는 가정들은 어김없이 한국영화, 음악, 드라마들을 소장한다. 따라서 단속에 따른 철저한 대비도 갖추고 있다. 단속에 걸릴 수 있는 매체나 제품들은 상시적으로 잘 감춰두고 검열에 미리 대비하여 노트텔과 북한영화를 저장한 USB를 미리 대기해놓는 것이 원칙이다. 낮 시간은 물론 잠자는 시간을 이용한 숙박검열에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컴퓨터나 노트텔과 같은 전자기기들은 영상을 시각화거나 저장매체를 암호화하고 자료복사, 삭제, 복원과 같은 일반적 전달 체계만을 수행한다. 때문에 일정 정도 컴퓨터 복원기술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다. 정책적으로나 시기별로 짐승검열이나 단속이 시작되면 컴퓨터나 노트텔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삭제했다 해도 1개월 후에는 다시 복원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109상무를 비롯한 통제기관들은 컴퓨터 복원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소장하고 다닌다. 그리고 이러한 요령들을 통제 관료들이나 주민들이 서로 역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소를 통한 확산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장소를 통해 이루어지

194)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0 (통일연구원, 2020.8.5.).

는 콘텐츠의 확산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강연회, 공개재판, 포고문 등과 같은 공식적인 매체에서 전달되는 당국의 메시지들을 통해 정보를 재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사례별, 사건별로 공개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의 단죄문구에는 주민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여러 콘텐츠의 제목들과 유형들이 공개된다. 사상교양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소집된 강연회나 공개재판들에서 한국영화나 드라마, 음악과 같은 최신 콘텐츠들이 공개되면 정보시장의 수요도 늘어난다. 즉 당국에 의해 오히려 외부정보가 재생산되는 방식이다.

단속기관 관료들도 정보의 재생산에 동참한다. 그들도 단속해야 하는 영화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영화가 얼마나 더 나쁜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청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가족 친척들을 통해 재생산된다. 또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다시 공유자와 공유지를 넓혀가며 정보는 다시 재생산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속에는 “우리 집에서 무슨 영화 봤다”고 하는 위험한 메시지들이 종종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광고들도 또 다른 재생산의 원천이 된다. 드라이기, 때밀이 등과 같은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광고들의 출현은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시장상품들을 개발하거나 생산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재탄생하기도 한다.¹⁹⁵⁾

4. 정보의 변형: 가치판단과 응용

정보의 변형(transform of information)은 정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행위 방식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195)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 (통일연구원, 2020.7.25.).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른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른바 정보의 변형은 외부정보에서 보이는 지식에 대한 자기 생산적 요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정보에 의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주민의식과 사회변동의 핵심 요소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정보의 변형은 생활방식에 있어서의 적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용 및 효과로 나타난다.

가. 정보의 가치판단

정보의 가치판단은 수집된 정보를 응용하기 전에 정보에서 보이는 여러 지식들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원인과 기술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국문화의 확산에 따른 일반적인 가치는 상대방의 패션이나 행동 방식에서의 미세한 변화와 그것을 번역하는 일반주민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안경을 썼고 어떤 지갑을 쓰고 있는지만 봐도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 한국 영화 좀 봤네...”라는 반응이다.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말씨 등을 따라하는 이른바 ‘한국 따라하기 현상’으로도 평가된다.¹⁹⁶⁾

정보적용의 효과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2017년 이후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가 보다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한국문화에 ‘감염’되어 있고, 자기들만의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활동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강화된 통제 속에서도 한국영화나 음악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나 행동방식의 여러 측면들을 바로 흡수시키거나 공유하려는 경향이 빠르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한국문화의 유입이 이제 호기심

196) 강동완, “북한의 정보화 실태 및 파급영향: 한류 및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p. 220.

이나 궁금증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 초반에 라디오와 DVD가 성행하던 시절에는 ‘남한이란 어떤 나라일까’라는 궁금증이 한국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이제는 그러한 문화들의 응용이 일상화되는 시기이다. 이는 외부정보의 장기간 노출과 축적이¹⁹⁷⁾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 가시적 결과로 나타나는 변곡점이 바로 김정 은 시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북한에도 관련 사건별 법적 처벌규정들이 부재했지만, 후자 단계에서는 행위유형에 따른 법률조항과 법적 처벌조치들이 제도화되거나 보다 강화되는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드라마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완전히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첫째, 한국드라마에 대한 유혹은 “일도 장사도 할 수 없고,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고, 또 이어서 보자니 잠도 잘 수 없고, 그러면 장사도 못하고, 나중에는 가정생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다.¹⁹⁸⁾ 둘째, 방탄소년단이나 모발 염색, 드라마 속 폭력영화, 엽기적인 영화들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극단적 자본주의’, ‘나쁜 영향’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다만 그 속에서 언어나 일련의 문화양식들을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측면에서는 한국드라마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⁹⁹⁾ 그리고 탈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한국드라마나 영화, 상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약 40% 이상을 차지한다.²⁰⁰⁾

국가별 제품의 선호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197) 손효중, “대북 정보유입과 북한의 변화,” 『북한』, 2017년 3월 통권 543호 (2017), p. 87.

198)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9 (통일연구원, 2020.8.4.).

199)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9 (통일연구원, 2020.8.8.).

200)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7 (통일연구원, 2020.7.29.).

199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의류, 차량 등 ‘JAPAN’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재일교포 출신들에 대한 선망(羨望)으로 이어졌다. 이후 중국산 제품들이 북한시장들을 대거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중국 의존성이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했다. 개성공단과 함께 한국산 제품의 유입이 중국산 제품들을 밀어내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의식을 이용한 중국 상인들의 짝퉁 유인 전략이 개성공단 폐쇄와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위생용품과 같은 상품들은 정품과 중간정품, 가품,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 판매되는데, 이러한 상품들도 중국에서 밀수를 통해 거래된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상품의 진가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식은 바코드의 첫 번째 숫자 8이다.

대학생들이나 지식인의 경우에는 외부정보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유엔이나 한국의 지원 소식을 접했을 때는 “언제 우리가 지원받는 나라가 아니고 지원하는 나라가 될까”라는 생각이다.²⁰¹⁾

나. 사회적 응용 방식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이는 정보의 응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방식에서의 적용대상이다. 둘째, 소통 방식에서의 교환수단이다. 셋째, 상업적 적용 방식에서의 거래(폭리) 수단이다.

201)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0 (통일연구원, 2020.8.8.).

(1) 생활방식에서의 적용

우선 외부문화의 유입은 생활환경과 방식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영화나 드라마, 노래와 음악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트로트와 아이돌, K-POP과 같은 한류문화는 10대 청소년들의 필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생활문화나 과외활동 방식에 있어서의 심층 부분들을 바꿔가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이러한 변화들은 급속도로 젊은 세대들의 문화와 행동방식을 바꿔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지속적인 통제에도 집단적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평양에서는 남녀 학생들의 연애 방식에서도 한국드라마 속 영상이 재현된다. 여자 친구에게 꽃을 선물하거나 간부 자녀들은 그룹 단위로 모여 앉아 부모들의 눈을 피해가며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한다.²⁰²⁾

결혼식 문화에서의 변화가 가장 충격적이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 이미 평양에서는 결혼식 식당이 호재다. 평양시에는 보통강구역 경흥관(웨딩홀 4개, 1인 비용 5달러),²⁰³⁾ 중구역 민속식당, 대동강구역 문수결혼전문식당 등 결혼 전문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추이가 지방 도시들에도 이어져 해산시에서는 ‘압록강식당’이 결혼식 식당으로 이용된다. 결혼 전문식당들에는 한국의 웨딩홀과 비슷한 구조로 전문 연예인들이 사회자로 등장하고 축하도 유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식 전문 업체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결혼식 문화가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막을 수 없

202)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0 (통일연구원 2020.8.8.).

203) “특권층 자녀들만의 결혼식당 경흥관,” 『자유아시아방송』, 2015.9.8.,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 (검색일: 2020.8.15.).

는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 결혼식 풍경이나 신부들의 헤어스타일, 의복 디자인, 결혼식 진행 과정 등에서는 한국의 웨딩 풍경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부유계층이나 특권 관료들의 특별 제작된 웨딩 영상물들은 비사회주의의 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지방주민들의 학습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 도시들에서 이러한 결혼식 문화의 이전은 2018년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했다.²⁰⁴⁾

주민들의 패션 감각과 예절, 언어의 표현방식에서도 한국드라마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길거리 패션을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이 구분되고, 핸드폰 문자 주고받기에서도 북한식 문자에서 한국식 문자로 변환되는 모습을 느낀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동사표현에서 ‘…니다’가 ‘…요’로 바뀌거나 예의범절에서도 북한식이 아닌 한국식 인사 및 예의범절을 따라하고 있다.²⁰⁵⁾ 젊은 층에서 습관처럼 한국 말씨를 따라하는 모습들은 이제 그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영화나 드라마 속 대화, 용어들을 평양을 비롯하여 지방의 모든 도시들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권력집단도 예외는 아니다. 시급기관들이 모여 즐기는 명절놀이에도 한국음악은 절대로 빠질 수 없이 등장한다. H시에서는 시당위원회, 시인민위원회, 시청년동맹 등 시급 간부들이 모인 명절놀이에서 연변노래로 시작된 흥이 나중에는 한국음악으로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년동맹 일꾼들은 술과 맥주가 오르면 안팎으로 문을 닫아걸고 한국음악에 한껏 디스코를 날리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관례라고 한다.²⁰⁶⁾ 공공기관 건물에서도 방문을 잠근 채 드라마를 보기도 한다.

204)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0 (통일연구원, 2020.8.5.).

205)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4 (통일연구원, 2020.7.26.).

206)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6 (통일연구원, 2020.7.29.).

(2) 소통 방식에서의 교환 수단

다음으로 정보는 소통 방식에 있어서의 교정 수단이고 변화 요인이다.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도 외부문화의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바꾸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을 계기로 도시의 공원들에 ‘에어로빅(aerobics)’이 생겨나고, 유일한 거주 공간인 아파트와 마을에서는 단체로 춤과 음악을 즐기는 문화들이 일상화되고 있다. 아파트나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단체로 ‘춤판’을 벌이는 사례가 주로 양강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일부에서 확산되었지만²⁰⁷⁾ 이제는 내륙 지역 도시들에서도 생활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에어로빅은 함흥시 청년공원을 중심으로 화교인의 무료서비스로 시작됐던 것이 여러 공원으로 확대되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던 에어로빅은 함흥시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1년 만에 북한당국의 통제로 무산됐다.²⁰⁸⁾

아파트 주변에서 펼쳐지는 단체 춤판은 이제 생일이나 명절 따로 없이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화다. 대형 증폭기들을 마당에 설치하고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춤판이 어느새 지나가던 행인들의 발목도 붙잡는가 하면, 흥겨운 노래와 춤판이 달아오르면 어느새 북한음악은 한국음악으로 바뀐다고 한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속해야 할 보안원이나 검열 상무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는 현상들도 종종 목격한다고 증언한다.²⁰⁹⁾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회만 된다면 외식을 즐기거나 분위기가 조성되면 명절, 생일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춤추고 즐긴다. 관광명소보다는 오히려 가

207) 조정아, “북한주민의 여가생활,” 『KDI북한경제리뷰』, 제19권 8호 (2017), pp. 8~9.

208)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5 (통일연구원, 2020.7.28.).

209)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4 (통일연구원, 2020.7.28.).

까운 곳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한국음악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이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유포단계(diffusion phase)에서 점차 응용단계(application phase)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3) 상업적 적용

또 다른 정보의 응용은 상업적 적용 방식이다. 영화나 드라마, 음악, 국가 간 외부정보는 이제 북한에서 또 다른 상업적 수단인 동시에 이윤과 폭리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한국 상품의 종류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의류, 식품, 화장품, 기초 생활용품 등이다. 의류는 대부분 중고품이거나 신제품의 경우 북한당국에 의해 상표가 제거된 상태로 시중에서 비공식적인 판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체적으로 상품의 유입 경로는 중국의 개인여행자들이나 외화별이 업자들, 밀수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유입이다. 중고제품의 경우에는 고강도로 압축 포장된 마대형태로 들여오기 때문에 그나마 일부 상표가 남아있다.

한국 상품의 판매경로는 이미 네트워크(networker)들에 의해 구축되어 있어 그들만의 거래방식이 선호된다. 대체로 이러한 거래방식은 은밀한 거래, 공식거래, 거짓정보에 의한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은밀한 거래는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따라 거래되는 방식이다. 돈주들이 이용하는 상점, 상류층들이 즐겨 찾는 장마당 등에서 시스템화 되어 이미 정해진 코스를 따라 이동한다고 본다.²¹⁰⁾ 일부 부유한 계층들에서는 한국산 제품 사용이 일반적이어서 평상시에도 중국이나 북한물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기업규모로 장사를 하는 돈주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한국산 제품을 고용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작업능률과 고용주에 대한

210)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0 (통일연구원, 2020.8.5.).

최적의 봉사의욕을 고취시키는 데도 좋은 경험이라고 한다.²¹¹⁾ 고용인들은 고용주가 선사하는 제품이 한국산임을 알면서도 침묵한다.

공식거래는 통제권자들의 보호 하에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이른바 권력형 거래방식이다. 통제 관료들의 뒤에는 반드시 그 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위험수당이 높은 품목일수록 통제 집단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 때문에 민감한 해외 정보들이 유입되는 길목에는 대체적으로 보안원·보위원들의 아내나 가족들이 있다. 이들은 밀수꾼들을 연결해주고 유심 칩이나 저장매체들을 거래하거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²¹²⁾

거짓정보에 의한 거래는 공급자가 수요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방식의 거래다. 이 경우 한국산 제품은 중국 연변이나 개성공단 제품으로 가공된다.

평양, 원산, 평성 등 내륙 지역들에서는 중국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는 반면에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상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인기는 생활적 욕구 외에도 가끔 사기와 비윤리적 상용화(unethical commercialization)의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개성공단 제품의 북한 내 응용과정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됐던 시기에 북한시장을 장악했던 공단 제품(식품, 의류, 치약, 칫솔, 화장품, 샴푸, 린스 등)들은 아직도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도 공단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제품들이 여전히 북한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 상인들이 한국산 용기나 포장지에 중국산 제품을 넣어 구매자들을 속이는 방식이다. 이는 물론 북한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국 상인들은 북한 상인들의 요청

211)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9 (통일연구원, 2020.8.4.).

212)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8 (통일연구원, 2020.8.5.).

으로 한국산 의류, 식품, 기초용품 등 여러 제품의 브랜드 상표들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한다. 이른바 짝퉁 상표로 대부분 밀수를 통해 거래된다.

(가짜) 한국 상표는 키로(kg)로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개당 조(세트별)로 파는 게 있어요. 뒷목, 혼솔 등 필요한 상표는 다 있어요... 중국에서 나진(나진경제무역지대) 쪽으로 들어와요. 의류,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모든 상품들에 필요한 한국산 상표, 포장지, 다 들어와요. (사례 19)

한국산 짝퉁 의류제품들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강선단지다. 이곳에서 생산된 의류제품들은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단골 도매상인들을 통해 평양이나 평성, 신의주 등 주요 도시들로 판매된다.

강선에서는 이런 가공품을 장마당에 내놓지 않고 딱 자기 집에서만 팔거나 평양으로 날라 가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 딸이 평양에서 사는데 강선상품을 10달러에 사서 평양 가서는 100달러에 팔았어요. (개성)공단상품이라고 하면서... (사례 19)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의 북한 유입이 주민들의 생활방식이나 의식수준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부패의 유형을 생산하는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하다. 단편적인 사례로 불법 음란영상물의 확산과 그에 따른 불건전한 성문화의 확산이 있다. 비교적 큰 규모의 도시들에서는 도·시급 단위 간부들이나 외화벌이업자들의 돈이나 권세 뒤에서 그 아내들이 연하남들과 연애를 즐긴다.²¹³⁾ 또한 한국영화나 음악은 기본이고 마약은 일상이 되고 있다. 학교

213)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9 (통일연구원, 2020.8.4.).

밖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한국영화나 음악으로 거의 동아리에 맞먹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세다.

핸드폰도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손전화봉사소’에서 구입해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관계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봉사소에서는 월 판매계획을 소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몇 기 정도만 봉사소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개인상인에게 전부 도매한다. 봉사소 가격이 2,000위안이라면, 100위안을 덧붙여 상인에게 도매로 팔고, 상인은 200~300위안을 덧붙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²¹⁴⁾

5. 정보접근에 대한 대응: 작용과 반작용

정보의 수집, 처리, 교환, 변형과정에 발생하는 대응관계(respond relation)는 정보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대응관계로 주민과 통치자 간의 작용과 반작용 결과로 형성되는 관계와 구조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주민과 통제 관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통제의 유형과 방식에 있어서의 상호 간 대응법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214)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0 (통일연구원, 2020.8.5.).

가. 통제유형과 제도

(1) 물리적 통제

북한에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단속, 검열, 처벌, 감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1990년 12월 15일에 처음으로 채택된 북한 형법에서는 ‘문화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²¹⁵⁾ 200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를 침해한 범죄’의 유형을 세부화하고 처벌수위를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외부정보의 유입 유형이나 그에 따른 처벌기준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부터 북한에서 외부정보의 유입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반영한다. 특히 외부정보의 유입 유형에 있어서도 적대국가와 일반국가들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형법적용의 세부화, 처벌강화에 방점을 둔 형법개정이 이루어진다.²¹⁶⁾ 2004~2015년 사이에 개정된 형법을 통해 북한 내 외부정보의 유형과 적용 방식, 재생산매체의 변화방식들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처벌규정의 확대배경을 전후로 외부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북한사회변동의 핵심 변수들을 추적할 수 있다.

215) 권오국, 『북한 형사법 체계 및 개정형법에 관한 연구』 (충남: 치안정책연구소, 2017), p. 31.

216) 이때 통제대상으로서의 외국 문화콘텐츠는 한국·미국 중심의 ‘적대국가’와 중국 중심의 홍콩, 대만 등 ‘중화권국가’, 그 외 국가들로 나뉜다. 한국을 중심으로 적대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콘텐츠는 그 외 국가들의 콘텐츠에 비해 처벌조항이라 규정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북한 형법상으로도 일반적인 외부의 문화콘텐츠 유입과는 별개로 강도 높은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표 III-2〉 북한 개정형법을 통해 본 외부정보의 확산 동태

퇴폐적 문화 반입·유포 관련				
구분	2004	2012	2013	2015
형법 조항	퇴폐적인 문화반입·유포죄(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유포죄(183조)	-	-
정보 유형	색정적이고 추잡한 내용의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유연성 자기원판, CD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의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전자매체	-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처벌 규정	허가 없이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한자-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정상이 무거운 경우 ²¹⁷⁾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반입·유포·보관한자-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여러 번 반입·유포·많은 양 보관한 자-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반입·제작·유포·보관한자-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여러 번 또는 대량인 자 5년 이하 노동교화형/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퇴폐적 행위 관련				
구분	2004	2012	2013	2015
형법 조항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19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184조)	-	-
정보 유형	색정적이고 추잡한 내용의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유연성 자기원판, CD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의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전자매체	-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처벌 규정	여러 번 보거나 듣거나 그리거나 행위를 한자-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보거나 들었거나 그리거나 행위를 한 자- 1년 이하 노동단련형/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그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보거나 들었거나 재현한자-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상습적으로 한 자-5년 이하 노동교화형/정상이 무거운 경우 5~10년 노동교화형
적대방송 관련				
구분	2004	2012	2013	2015
형법 조항	적대방송 청취·인쇄물·유인물 수집·보관·유포죄(195조)	적대방송 청취·인쇄물·유인물 수집·보관·유포죄(185조)	-	적대방송 청취·적지물 수집·보관·유포죄(185조)

적대방송 관련				
구분	2004	2012	2013	2015
정보 유형	반공화국방송 체계적으로 ²¹⁸⁾ 청취, 빼라, 사진, 녹화물, 인쇄물, 유인물	-	-	적방송·적지물
처벌 규정	수집, 보관, 유포한 자-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	듣거나 수집·보관·유포한자 /여러 번 혹은 대량인 자 / 정상이 무거운 경우 : 모두 앞항과 같음

출처: 박원규·이준삼·권오국,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북한법령 연구』 (총남: 경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법무부, “북한형법,” (www.moj.go.kr) (검색일: 2020.9.12.)을 참고하여 작성

그동안 김정은 정권에서 여덟 차례에 걸친 잦은 형법수정 (2012.4.24., 2012.5.14., 2013.6.19., 2013.9.26., 2013.11.21., 2014.4.24., 2015.1.21., 2015.7.22.)은 현재 북한사회의 잦은 변동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2004년 이후 수정형법들을 시기별로 고찰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함축할 수 있다.

첫째, 2004년 당시 외부정보의 유입은 음악, 춤, 그림, 사진, 녹화물, CD, 외부방송, 빼라 등 이었다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전자매체를 통한 대량유입이 북한당국으로서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둘째, 또한 1990년대 초 신설 당시 최장 6개월로 한정되었던 노동단련형이 2000년대에 들어 최대 2년까지로 확대·적용(외부정보의 유입과 관련하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에서는 1년 이하로 축소되고, 대신 노동교화형을 늘리는 방식으로 외부정보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다 강화되었다. 셋째, 반입·유포·

217)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공모하였거나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인쇄물, 유인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상 정신적 동요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의 책, p. 367.

218) 북한에 따르면, 적대방송의 ‘체계적 청취’는 5번 이상 청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양, 『법 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17), p. 367.

보관·재현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작용하면서 일회성에서 벗어나 다수 혹은 대량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으며, 형법적으로는 최장 5년에서 10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제 현장에서 통제 관료들은 한국음악이나 영화의 경우 형법보다는 뇌물을 목적으로 편당 형벌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외부문화의 유입은 대체적으로 ‘불순’과 ‘불량’행위의 일환으로 간주된다.²¹⁹⁾ 따라서 콘텐츠의 원산지와 내용, 제작방식에 따라 불순과 불량으로 나뉘어 처벌대상과 범주가 정해진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이 ‘적대국가’로 인식되는 국가들의 문화콘텐츠(영화, 음악, 게임, 다큐멘터리, 공연, 성경책 등)는 불순 콘텐츠에 해당된다. 이 외의 중화권 콘텐츠, 번역되지 않은 중국영화, 비공개된 콘텐츠들은 불량콘텐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순콘텐츠에 비해 처벌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외부정보의 유입, 유포, 보관, 행위 등은 반국가적·반사회적행위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물리적 통제의 우선 대상이다. 특히 현 정권에서 한국문화의 공유보다 확산, 또는 일반화의 경향이 높아지면서 물리적 통제의 수단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면접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 통제의 유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공식제도를 통한 검열통제, 신고체계에 의한 단속통제, 자백과 유인이다.

공식제도를 통한 검열통제는 여러 독립적이고 복합적인 통제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속과 통제다. 이러한 기구로는 당, 군, 사법검찰기관, 국가안전보위성 등이 있다. 여기에 ‘비사회주의’단속을

219)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1 (통일연구원, 2020.7.23.).

위해 시기적으로 조직되는 상무, 그룹 등 복합적인 검열조직들도 있다. 현재 외부정보의 통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상무들은 대체적으로 109상무, 727상무, 84상무, 130상무 등이다.²²⁰⁾ 이런 상무조직들은 일정한 지역, 일정한 장소에 사무실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민간지역들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단속과 검열을 일삼는다. 따라서 필요한 공공장소나 학교, 의료보건,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들에 임시사무실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이 때문에 상무조에 단속되는 경우 노트북이나 손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들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성봉유치원 건물 내가 며칠 좀 쓸게요. (검열)그루빠 사무실로 쓰려는데 협조해주세요.” 이렇게 사무실을 립시(임시)로 쓰다가 어느 날 사라지면…: 컴퓨터나 노트북을 빼앗긴 아이들과 부모들과 함께 갔는데, 그 검열조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를 어디 가서 찾아요? (사례 20)

한편 중앙 검열, 도급 검열, 시급 검열, 각종 유형의 검열조직들이 며칠에 한 번씩 들이닥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검열조직들이 파견되면 해당 인민반들에서는 사무실 운영비와 식사비용들을 충당해야 하는 고충을 겪는다. 동사무소가 출선 인민반 단위로 이들의 숙식비와 사무실비용을 각 세대 당 금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220) 109상무는 1990년대 초 '비사회주의'라는 용어의 출현과 함께 중앙당 검열조직으로 출범한 것이 1990년대 말에 군·보안·보위·기술전문가들을 망라하는 합동검열조직으로 전국 지역에 확대된 것이다. 727상무는 2000년대 초에 마약단속을 위해 군에서 조직된 특별검열조직이지만, 현재는 마약뿐만 아니라 불법 녹화물과 관련된 단속과 통제도 겸하고 있다. 130상무도 역시 2011년 초에 조직된 당·군·사법검찰기관들을 포함하는 합동검열조직이다. 다만 앞선 조직들과 다른 부분은 IT기술자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각각의 상무그룹들은 사실상 본연의 임무 영역이 분명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배타적인 이익경쟁과 검열경쟁의 딜레마 속에서 중복적인 단속과 통제에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

가정집들에 기습적, 혹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열과 통제방식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인민반장이 가정방문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전 통보나 연락이 따로 없이 인민반장을 앞세워 기습적으로 검열하는 방식이다.

신고에 의한 단속통제는 주민들의 유동성, 사상동향이나 정보원에 의한 신고체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은 가끔 친구들에 의해서, 또는 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을 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이 컴퓨터를 봤을 때, 이런 경우 아이들의 신고에 의해 유출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 3명 중 한 명은 보위부(혹은 보안서) 정보원일 수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주민도 있다.²²¹⁾ 이런 의심은 오랜 단속과 통제 속에서 외부정보를 접하게 되는 주민의 심리적 경계감이 이미 일상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백과 유인은 약자의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국영화나 드라마, 음악들에 대한 단속과정에 많이 동원되는 수단이다. 어린이들이나 취약자들의 심리적 자극을 발동하여 관련자들의 ‘죄’를 유도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도급 보위부랑 (109)그룹이 검열 나오면 일단 인민반장을 앞세워 집들을 검열하는데, 그 집에 애기(아기)가 있으면 애기한테 물어보거든요. “너희 엄마랑 아버지랑 뭐 봤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봤지? 이름이 뭐야?” ... 그리고 애들에게 “삼촌이 머(과자) 사줄게(해줄게)”라고 하면 애들은 그냥 다 말해버리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 봤어요. 거기서 말을 이렇게 하던데

221)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1 (통일연구원, 2020.7.23.).

요?”라면서 영화에서 나오는 한국말투를 그대로 따라한대요. 그렇게 부모가 집에 없을 때 들이닥쳐서 애들에게 유도 질문하니까. ... 애들 때문에 노출된 집들이 많았어요. (사례 20)

탁아유치원생들과 달리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강박과 위협으로 유도 질문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에 조카만 있는데 불쑥 쳐들어와서 “109상무에서 왔습니다. 너네 기계(컴퓨터) 금방 돌렸지? 컴퓨터 내놔”라고 하니까 애가 무서워서 후드(겉)를 먹은 거예요. 그래도 컴퓨터가 없다고 하니까 “너 임마, 컴퓨터 있는 거 알고 왔어. 당장 내놓지 않으면 잡아 갈 거야. 너 구류장 한번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결국 조카는 겉을 먹고 컴퓨터가 있다고 자백했어요. (사례 20)

최근 외부정보와 관련된 공개재판들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보다 많이 등장한다. 특히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어울려 한국영화를 보거나 한국음악을 전문적으로 응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관련 법률들도 적극적으로 개정되거나 적용되고 있다. 미성년 자들이라 하더라도 한국문화, 불법 성(性) 영상물과 연관된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²²²⁾ 그리고 컴퓨터나 노트북은 일단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 무조건 단속대상이다. 여기에 분명 불순녹 화물이 들어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에서 컴퓨터나 노트북,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들은 외부정보를 위한 전문기기로써의 인식이 보다 강하다. 특히 학생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222)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3 (통일연구원, 2020.7.25.).

내가 오기 전(2019년 1월 말)에도 한 번에 11명을 공개재판 했어요. 5, 6학년 고급중학교 학생들이는데 같은 또래 여자들이랑 (섹스 영화를 틀어놓고 그대로 재현) 그렇게 한 걸 잡아갔고... 이제는 미성년자에 관계없이 무자비하게 형사처벌해요. (사례 13)

이러한 방식은 직장인들의 사상 동향자료를 파악하는 데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의 한 세포비서가 당정책을 하달하면서 자신이 먼저 슬그머니 정책적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세포당원들의 사상동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세포비서의 이런 불만에 대해 먼저 호응하거나 응대하는 사람은 당 조직에 고발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될수록 듣기만 하고 절대 호응하지 않는다고 한다.²²³⁾

(2) 조직적 통제

외부정보의 유입과 관련한 조직적 통제는 당의 외곽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가 가장 유력하다. 즉 여맹은 당의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청년동맹은 당의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이다. 이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통제조직은 여맹규찰대, 대학생규찰대, 청년동맹규찰대, 학생규찰대이다.

여맹규찰대는 여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도(특별시)·시(구역)·군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성규찰대조직이다. 시기, 정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19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동 단위로 조직 운영된다. 여맹규찰대는 장마당으로 출근하는 여성들의 치마 착용(바지 금지), 김부자 배지 검열, 명절 조선

223)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5 (통일연구원, 2020.7.27.).

옷 검열 등을 학생규찰대나 노동자규찰대와 함께 정기적으로 검열·통제한다. 규찰대는 2인 혹은 3인으로 된 여맹원들을 2시간 간격으로 교차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규찰대가 배치되는 장소로는 아파트, 공장기업소, 학교, 시장 등 모든 거리와 아파트, 마을, 공공장소들이 해당된다. 특히 4월 15일(김일성 탄생일)이나 2월 16일(김정일 탄생일), 1월 8일(김정은 탄생일)과 같이 김부자의 탄생일이나 국가적인 명절을 앞두고 여맹규찰대의 통제권한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특히 외부정보의 유입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한 통제가 특별히 강한 편이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30대 여성이 여맹규찰대에 의해 복장문제로 단속(매직폼 머리와 USA상표 가방 착용)되면서 사상비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²²⁴⁾ 특히 해마다 5월과 10월 ‘농촌동원기간’에는 여맹원들의 조직적인 농촌동원을 통제하는 것이 여맹규찰대의 역할이다.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여맹규찰대의 통제항목이었으나 2009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학생규찰대는 학생들을 지도·통제하는 조직으로 문화생활 중심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당 대학교 학생들의 옷차림, 김부자 배지 착용 점검, 머리 등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외부정보와 관련된 단속·통제가 주 업무로 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등학교 학생들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학생규찰대도 있다. 최근에는 지역단위로 청년동맹이 운영하는 청년동맹규찰대가 한국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길가에서 오가는 학생들의 주머니나 소지품, 옷차림을 단속하면서 USB나 컴퓨터 단속도 겸한다. 각종 민간 규찰대들이 조직되면서 불과

224) “‘USA’ 씨진 가방 들고 다니다 비판대 오른 北 군인 가족,” 『데일리NK』, 2019. 6. 27., <<https://www.dailynk.com/usa-%EC%8D%A8%EC%A7%84>> (검색일: 2020. 8. 17.).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대학생규찰대와 여맹규찰대, 청년동맹규찰대, 학생규찰대 등이 경쟁적으로 옷차림, 행동, 움직임 등을 단속하여 해당 소속 기관에 통보하거나 처벌기관에 넘긴다고 한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주민단속에 사법검찰기관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에 이어 교원(교사)규찰대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단속받는 사람보다 단속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²²⁵⁾ 전체적으로 조직생활에 참여하는 주민 대부분이 소속 사회단체를 통해 통제대상이 되거나 통제주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3) 시스템 통제

김정은 정권에서 사회전반의 IT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이것이 당국의 입장에서는 외부정보 유통·공유의 간소화, 단속 통제의 요령·복잡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즉 기술이 발전하고 당국의 통제가 강화될수록 그에 대응하는 행위주체들의 기술적·기능적 대체능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더욱 주민통제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통제 불가능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주민이동과 통제의 간소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민감시체계를 일반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기존의 공민증을 전자카드형 공민증으로 교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그것이다. 북한은 2018년 평양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일부 농촌이나 산간지역을 제외한 주요 도시들에서 공민증 교부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한다.²²⁶⁾ 새로 교부된

225) “파리보다 파리채가 더 많다,” 『데일리NK』, 2020.8.18.,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9D%BD%EA%B8%B0>> (검색일: 2020.8.17.).

226) “북한, 새 공민증 발급... 관계자 ‘내부에 전자칩 삽입’ 주장,” 『데일리NK』, 2019.1.31.,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83%88>> (검색일: 2020.8.17.).

공민증에는 전자 칩이 삽입되어 있어 10호 초소나 지역 간 이동초소 컴퓨터들에 삽입하면 개인정보는 물론 과거 범죄경력까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민증교부에 앞서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각 지역 컴퓨터 전산망과 시스템구축은 평양시를 제외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발부된 전자칩 공민증으로 주민통제는 아직 불가능해 보인다.

공민증카드를 컴퓨터에 끼우면 교화소 갔던 경력까지 다 나온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서 줬어요. 증명서, 신분증 없이 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보위부초소에 그걸 가지고 들어갔더니 검열관이 모르죠. ...국가적인 시스템 망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도 돈 들어가야 되지 않소, 못하고 있는 거죠. (사례 20)

결국 평양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들은 카드식 공민증으로 주민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나. 통제의 작용과 반작용

(1) 통제와 뇌물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제와 뇌물 간의 일반적 동거는 비단 어제 오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통제와 뇌물의 이중 구조가 이른바 적대국가의 사상 문화적 교류를 둘러싼 이익과 보호의 이중 구조로 고착된 국가의 사례는 드물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알 권리’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북한 헌법이나 형법, 형사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도 없다. 그러한 법전이나 자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고, 이 때문에 주민들 자체가 관련법들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속이나 처벌을 받는 이유는 알지만, 불법행위나 사건별 형사법적 적용범위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직 실제 경험이나 ‘귀동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한다.²²⁷⁾ 이 때문에 북한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질서와 법률, 그에 따른 상식은 간부들이나 부유층, 관련 기관 연고자들이나 극히 제한된 사람들의 공유물이다. 따라서 일반주민의 대부분은 ‘비사회주의’라는 단순 용어상 이해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사건유형별 법률적 상식은 부재하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처벌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처벌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직간접적인 법적 조항의 일부나마 알 수 있다고 한다.

20년 가까이 당국과 주민 사이에서 한국 중심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밀고 당기기 게임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불법시장을 잉태하고 있다. 통제유형별 거래단가들이 정확히 명시된 하나의 ‘뇌물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유행되는 각종 뇌물시장들 중에서 한국콘텐츠와 관련된 뇌물시장은 그 규모나 일반화에 있어서 상위 등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문제와 관련된 이른바 ‘범죄’들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뇌물가격도 정해져 있다.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양강도 국가보위부(현재 국가보위성) 집결소에서 수감자가 풀려나려면 5,000~10,000위안, 양강도 인민보안국(현재 사회안전성) 구금소에서는 최소 2만에서 3만 위안까지가 필수다.²²⁸⁾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109상무나 관련기관에 단속될 경우 한국영화 1편당 5,000~6,000위안을 현장에서 즉시 지불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²²⁹⁾ 평양시에서는

227)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4 (통일연구원, 2020.7.28.).

228)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0 (통일연구원, 2020.8.5.).

229)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4 (통일연구원, 2020.7.28.).

109상무에 단속되면 끌려가기 전에 미리 검열원 1인당 2천 달러를 현장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검열원이 3명인 경우에는 6천 달러를 지불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²³⁰⁾ 그러면서도 관련 영상물이나 노트북, USB 등은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한국음악 1편당 500위안, USB에 저장된 음악이 1,600개라면 흥정해서 10,000위안, 대신 USB는 회수한다. 현장에서 즉시 현금지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음악 10개 이상이면 노동단련대, 20개 이상이면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²³¹⁾ USB는 양강도 혜산시보다도 신의주시나 평양 방면에서 많이 유입된다고 한다.

특히 외부정보와 관련된 통제는 국가별 취급기준과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속기준과 처벌과정, 수위도 상당히 다르다.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문화는 처벌수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통제 관료들도 단속대상을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한 신중성을 보인다. 초기 단속과정(1단계)에서 빠르게 뇌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급검열단위(2단계)로 이전되고, 다시 중앙급 검열기관(3단계)으로 사건이 이전될 경우 뇌물의 액수는 3배로 높아진다고 한다. 이런 대상의 경우에는 주변(인물)관계나 사건의 확산,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1단계, 2단계에서 뇌물로 해결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1단계에서 즉시, 혹은 빠르게 거액을 들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더 큰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경우 1단계에 소모되는 비용은 3만 위안이 일반적이다.²³²⁾

그러나 뇌물이 모든 수감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은

230)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9 (통일연구원, 2020.8.4.).

231)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 (통일연구원, 2020.7.25.).

232)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0 (통일연구원, 2020.8.5.).

아니다. 통제 관료들도 이러저러한 방법을 동원하여 역으로 뇌물로 인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엄격한 내적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한다.²³³⁾ 또한 단속된 자가 다소 공식적인 금액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단속기관의 단속계획과 건수를 채우는 데 이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즉 외부정보를 접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보다 활발하게 향유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단속기관의 실적이나 대리 희생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2) 통제와 인맥

도급 단위의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각종 통제에 대처하기 위해 뇌물과 인맥을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99% 이상이라고 한다.²³⁴⁾ 그 외 1%는 특정관료들의 자녀들이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비사회주의의 공범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들의 권위로 처벌에서 면제된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사례도 인맥이고 따라서 북한 주민의 100%가 뇌물과 인맥 속에서 살아간다고 호소한다.

주민들이 단속됐을 경우에 사용하는 인맥활용법은 우선 첫째, ‘하층 통일’이다. 하층 통일은 1선 검열관과 단속대상 간의 상호 거래방식으로 사건수사를 위해 조사실로 진입하기 이전에 사건담당자와 모종의 거래규모를 합의하는 방식이다. 만일 단속된 주민이 담당자와의 거래가 불가능한 조건(담당자와의 인맥이 없는 경우)이라면, 주변의 가족 친척이나 친구들을 동원해서라도 담당자와의 인맥을 빠르게 찾아내야만 한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통제 현장에서 1선 통제 관료들도 은근히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들도 나름대로 단속 계획

233)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0 (통일연구원, 2020.8.5.).

234)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4 (통일연구원, 2020.7.28.).

에 따른 현금성 계획(숙제)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²³⁵⁾ 즉 통제받는 자와 통제하는 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현금성 거래다. 둘째, ‘하층 통일’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급(기관)의 간부인맥을 찾아주는 브로커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브로커들을 포함하여 이른바 투자해야 하는 현금규모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 대부분 처벌대상은 그럴만한 능력도 돈도 없는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맥은 거주지역의 보위원, 보안원, 인민반장 인맥이다.

그냥 보위지도원도 있어야 되고, 담당 보안원도, 인민반장도 필요해요. 인민반장은 보안서에 매일 일일보고 하거든요. 인민반 주변에 외부인원 누구 들어왔다, 다닌다... 그니까 내가 무슨 돈벌이를 하거나 뭘 하자고 해도 다른 사람이 오면 인민반장이 눈을 감아야 하니까(모르는 척) 인민반장도 예외가 아니죠. (사례 14)

국경지역에서 검열기관 간부들은 국가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그리고 밀수나 불법행위들을 보호하거나 단속함으로써 얻어지는 대가가 훨씬 크다. 오히려 한국에 친척이 있거나 탈북자가 있는 가족들과는 될수록 친하게 지내려는 경향이 강하다.²³⁶⁾ 서로 동부상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인맥이나 돈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불 다수를 대표하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학생들 속에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열풍이 확대되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단속·

235) 각종 통제 집단들이 뇌물을 선호하는 데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부여되는 시기별·정책별 현금성과제에 대한 부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236)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4 (통일연구원, 2020.7.28.).

통제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집에서 친구들과 한국음악을 틀고 놓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한다.

학교라는 공간을 떠나서 어느 집에 모두 들어 앉아 컴퓨터를 보는데, 이제는 부모 몰래 학교 애들끼리 방에서 춤추고 놀고 한국영화에서처럼 생일파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한국노래를 팡팡 틀어놓고 문까지 잠그고 다 했는데 보안원이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그러면 와당탕 뛰다가 누구 하나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부모들이 나서서 20명은 풀려나고 그 중에서 한 두명은 몰아서 (노동)단련대 보내고... 부모가 항의를 해봤자 힘(뽕)도 없고 돈도 없는데 법관이 “재네가 다 증인 썼어, 애가 기본 주목이야”하면 뒤집어쓸 수밖에 없죠. (사례 20)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인맥과 뇌물이 필요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인맥과 뇌물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그래도 한국드라마, 음악, 생활문화 등에 대한 열풍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통제당국과 주민 간의 ‘심리전’

통제당국과 주민 간의 ‘심리전’은 한마디로 외부콘텐츠의 확산을 둘러싼 주민의식과 통제정책 간의 밀고 당기기 게임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인 외부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급속한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김정일 정권에 비해 김정은 정권에서는 통제의 강도와 주민의식의 변화속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이전까지 외부분화에 대한 통제가 북한 주민들이 무의식적으

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상생활의 ‘준칙’이었다면, 이제는 통제정책의 역이용, 통제정책의 의미를 재해석하기, 통제 관료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비례범죄(proportional crime)’의 유인 등 당국과 주민들 사이의 심리전이 보다 세련되고 노골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형색색의 통제 관료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례범죄’의 유형은 한마디로 ‘비사회주의’로 일컬은 외부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해 내적 공범 혹은 보호 의무를 정당화하는 심리적 수단이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통제가 강화될수록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이러한 의식수준의 변화를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통제의 대상이 되고, 그런 속에서 주민들의 호기심은 더 높아진다는 논리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한번 가보면 좋겠다” 등이다.²³⁷⁾

특별히 중요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USB는 3중, 4중으로 암호가 걸려있어 보위부나 통제기관에 단속된다 하더라도 일단 안심할 수 있다고 한다.²³⁸⁾ 그리고 단속기관에서 소환조사로 불러낼 때를 기다렸다가 동일한 유형의 USB(북한영화가 저장된)와 몰래 바꿔치기도 하면서 통제 관료들의 통제수단을 역이용하기도 한다.

통제수단이 진화하면 주민들의 대응 방식도 진화한다.

109에서 규칙적으로 (주택 주변을) 돌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수색은 안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정전이 됐는데도 “USB 내놔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USB는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못 사는 집들에서 “아, 우리는 배터리(배터리)도 없다. 무슨 USB냐” 해도

237)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20 (통일연구원, 2020.8.5.).

238)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 (통일연구원, 2020.7.24.).

그냥 USB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집들에서도 USB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컴퓨터에 딱 꼽고 검열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라고 하는 혁명적인 영화만 나오는 거죠. 이미 검열용으로 사람들이 다 준비해놓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간 다음에는 또 그 한국영화나 미국, 다른 나라 영화들을 보는 거죠. (사례 14)

북한당국이 특정 시기나 정책적 사안을 배경으로 시행하는 강연회나 학습회와 같은 정치적 수단들이 간접적인 외부정보유입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들도 있다.²³⁹⁾ 이는 주민 강연회나 포고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개되는 한국영화나 드라마 작품들의 제목, 혹은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사례들을 통해서다. 공개재판이나 사상투쟁회의와 같은 대중적 비판 및 처벌수단들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개 장소들에서 조목조목 나열되는 콘텐츠들이 바로바로 비공식 시장의 가격상승을 이끌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당국의 공식적인 통제수단과 주민의식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폭넓은 규모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6. 소결

1장 2절의 <그림 I-2> 연구 모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도출할 수 있다.

239)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3 (통일연구원, 2020.7.25.).

첫째,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생성된 신문과 방송, 도서와 텍스트화 된 전자자료, 이동전화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정보를 얻고 있다. 외부로 인입되는 정보는 국경지역을 넘나드는 공식·비공식적 사람, 상품, 공간, 매체뿐만 아니라 경험, 뉴스, 통제, 학습 등의 직·간접적인 수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다. 김정일 정권에 비해 김정은 정권 들어 다중경로·다중매체를 통해 외부정보가 복합적·다중적으로 유입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정부가 제공하는 외부정보는 연령이 낮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시설이 확보된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정보기기를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외부에서 인입되는 외부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많이 확보했을수록, 외부정보가 인입되기 용이한 지역에 거주할수록, 본인의 직업이 외부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수집하는 데 용이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의 유형을 각자의 경험의 맥락에서 말해주었다. 북한 주민이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의 성격을 띤 교육, 정치, 경제에 대한 정보는 사회적 정보로 분류하고 언어, 음악, 생활문화와 같은 문화의 면에서 본 또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문화적 정보로 분류하였다.²⁴⁰⁾ 북한 주민은 사회적 정보의 경우 북한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습득하며, 문화적 정보는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40) 분류를 위해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를 참조했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류하기에는 사례연구가 부족하여 대표적인 사례만 설명함을 밝힌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예일대학 인간관계연구소의 HRAF(Human Relation Area File)의 분류체계, UNESCO의 문화지표, 민속아카이브 분류검색,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콘텐츠목차의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여 문화적, 사회적, 자연적 영역의 순으로 정보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중 자연적 영역을 배제하고 문화적, 사회적 분류기준만 참조하였다. 이명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 연구,” 『한국문화정보학회지』, 제49권 1호 (2015), pp. 319~338.

〈표 Ⅲ-3〉 정보의 수집경로와 유형

구분	수집 경로	북한	외부	정보의 유형
북한 내부	신문 방송	↓	↑	사회적 정보
	도서 전자자료			
	이동전화			
외부 유입	통제와의 협력			문화적 정보
	친밀한 관계			

출처: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필자가 작성

셋째, 김정은 정권에서 외부정보에 대한 위협수당이 고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정보통신기기의 진화로 보다 빠르고 신속한 외부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에서 외부정보의 이용 매체들(DVD, CD, TV, 중국인, 라디오, 휴대폰, 전단지) 중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인 매체는 DVD, CD이며 21.8%로 나타난 바 있다. 콘텐츠로는 한국영화 및 드라마가 40%이고 다큐 및 교양시사물이 20% 정도다.²⁴¹⁾ 또한 주요 동기로는 ‘개인적 호기심’이 48%, ‘경제적 이유’가 30.1%이다. DVD나 CD, 라디오는 이제 보다 효율적이고 보관에도 편리한 USB나 유심 칩으로 바뀌었고, 저가의 중국산 EVD(Enhanced Versatile Disc)플레이어는 중저가 혹은 고가의 노트텔(노트북과 TV수신 가능)이 대체하고 있다. 또한 노트텔에 비해 충전시간도 짧고 10시간 이상 사용가능한 중국산 저가 테블릿 PC와 MP5의 보급과 확산도²⁴²⁾ 외부정보에 특별히 민감한 청소년들 속에서 인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정보의 유입에서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대하는 과정은

241) 위의 책, p. 22.

242)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p. 178.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북한사회 변동의 직·간접적인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외부정보의 영향력이 단순히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자신들의 삶의 재발견,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에 그쳤다면,²⁴³⁾ 이제는 삶의 질을 바꾸고 생활환경과 문화를 공유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당국의 2중, 3중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 접촉이 20년 이상 축적되고 장기화되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외부정보는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하나하나의 의문점을 쌓아가고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궁금증을 점차 증폭시키는 이른바 기폭제(spark) 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변형과 공유 방식을 거치며 사회적 일반화의 경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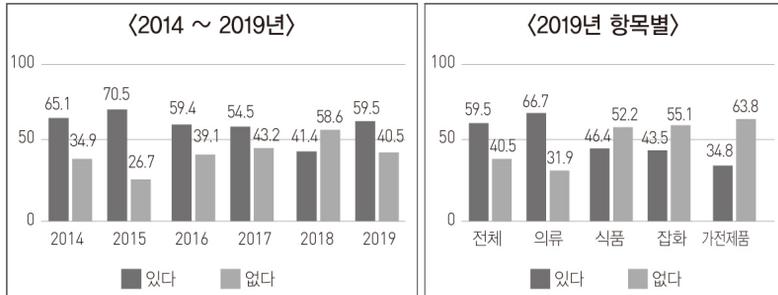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한류나 한국산 제품과 같은 문화적 가치의 공유는 이제 단순한 인식적 공유에서 ‘문명세계의 응용’이라는 핵심적인 가치수단으로 다가서고 있다. 적어도 북한 주민의 50% 이상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9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최근 입국(1년 이내)한 116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북한사회변동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²⁴⁴⁾

특히 2019년 조사결과에서 보면, 북한에서 거주 당시 한국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9.5%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중 의류제품에 대한 이용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도 전체 참여자들이 북한 거주시 다양한 한국산 제품을 사용했거나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43)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편, 『제2회 북한인권 개선공청회: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p. 24.

244) 천경효·강채연·박상민·이혜원·정은미·임경훈·조용신, 『북한사회변동 2019』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그림 III-1〉 북한 거주 시 한국제품 사용 현황



출처: 천경호 외, 『북한사회변동 2019』를 바탕으로 작성함.

다섯째, 외부정보를 받아들이고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지역별 격차에서 도시 간 격차(농촌이나 일부 산골지역 제외)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정보의 규모나 소장, 적용 방식, 그리고 전달 체계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빠른 속도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남포, 평양, 혜산, 함흥 지역을 비교할 때 지역별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이 있다. 남포특별시 강선지역은 전국적으로 한국문화의 적용 방식이나 그에 따른 변화에 있어 상당히 앞서있고, 평성이나 국경지역에 비해 상당히 개방적이다. 평성에서도 한국드라마는 문을 잠그고 보는 정도이지만, 남포지역에서는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불러다 보는 정도라고 한다.²⁴⁵⁾

여섯째, 현재 외부정보의 공유나 적용 방식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세대는 10대에서 30대까지의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방적이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

245) 이러한 증언은 주로 순천-강선(남포)지역을 터전으로 오랫동안 경제·사회활동을 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해당 면접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인척들도 주로 남포지역에 거주하면서 북한의 주요 시장 중심인 평양-남포-평성지역들에서 오랫동안 한국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9 (통일연구원, 2020.8.4.).

다.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외부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순히 흥밋거리나 새로운 생활방식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현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려는 의지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집단배치, 북한영화, 노동신문, 정책자료 등에 대한 해석들에서 오늘날의 북한사회를 비교 평가하는 방식이다.

〈표 III-4〉 핵심주제별 비교분석 및 평가 방식

주제	비교분석 및 평가내용
일제강점기 비난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시대 일본농들의 폭정이나 탄압이 지금 북한현실과 꼭 같고, 오히려 일본농들보다 더하다고 생각 - 일본농들은 탄광에서 일하면 적어도 돈이라도 썼지만, 북한은 너무 못하다고 함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부부가 머슴 꽃분이를 괴롭히는 장면에서 현재 자신들의 처지가 꼭 같다고 생각
조선예술영화 '임궏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당국에 의해 금지된 영화' - (왕에 대한) 반란을 형상한 영화여서 주제곡마저 단속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생각
혁명가요 '자유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가질 때 자유권을 꼭 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 것이나 목숨은 버려도 자유는 못 버려" 노래 가사에서 자신들의 자유권이 무엇인지를 비교함
김정일 명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김정일" - 김정일은 인민을 '순종밖에 모르는 머저리'로 생각하고 있다?
『노동신문』 국제정세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사스주 전기공급이 끊겨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 북한은 365일 전기가 안 와도 사는데, 재네는 며칠 잘린 거 가지고 난리냐?
『노동신문』 한국 실업자소개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실업자가 더 좋은데, 월급도 안주고 강제노동만 시키느니 차라리 부업이나 장사를 할 수 있게 실업자가 더 좋다고 생각

출처: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9 (통일연구원, 2020.8.8.)를 바탕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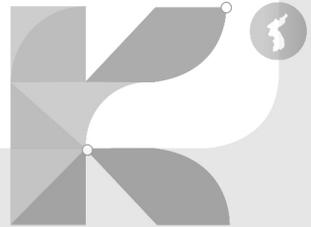
일곱째, 이제 통제관료들과 주민들의 밀고 당기기가 기존의 강제적인 뇌물구조에서 관련 법조항들에 따른 상호 대응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인 변화다. 이것은 수차례에 걸친 단속과 처벌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다. 즉 지속적인 단속·검열과정을 경험하면서 통제 관료들이 자신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예컨대 “법전을 찾아보니 강제수색이 실전법에 저촉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이제 그들의 통제수법을 역이용함으로써 단속이나 통제에 대응한다는 것이다.²⁴⁶⁾

여덟째, 외부정보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시기별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처벌 규모나 강도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18년 남측 평양공연과 삼지연음악단의 서울공연을 들 수 있다. 특정주제에 한해 주민들의 통제를 목표로 ‘목록화’된 콘텐츠들은 ‘마지막까지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처벌강도가 2배 이상 불어난다.

246) 북한이탈주민 증언, 사례 1 (통일연구원, 2020.7.24.).

IV.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증진 방향

김수암 통일연구원



1.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추진 전략과 동향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을 증진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왔다.

첫째, 유엔 인권이사회(전신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결의 내용을 통하여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오고 있다. 즉,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하여 북한 내 정보의 흐름을 증진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견해,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 신문과 기타 미디어의 설립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다른 권리 보장과의 연계 속에서 정보접근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둘째,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를 들 수 있다. UPR 과정에서 북한과 회원국 사이의 상호 대화를 통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안이 제시되는데, 제2차, 제3차 UPR에서 정보의 자유와 관련한 권고안들이 제안되었다.

셋째,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매년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정보접근권(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을 비롯하여 기본적 자유권 보장을 포함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성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를 들 수 있다.

동 보고서의 권고에 정보접근에 대한 증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²⁴⁷⁾

다섯째,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상황을 관장하는 유엔 조약기구(treaty-based bodies)에서도 북한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상호 대화를 거쳐 최종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개선 권고 속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아동권리협약 제5차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검토의견서에서 디지털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의 증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물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²⁴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 의회는 2016년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forcement Act of 2016, H.R. 757)」을 제정하였고, 동년 2월 16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검열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재를 통해 검열을 중지하도록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제104조에는 금지 행위를 한 인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지정할 수 있는 근거 행위로서 “북한정부에 의한 검열(censorship)에 관여하였거나 책임이 있는 인물 ((a)(1)(E)항)”이 적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검열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247)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 367.

248) UN Doc. CRC/C/PRK/CO/5 (23 October 2017).

-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금지, 제약, 처벌
- 인쇄물, 라디오 혹은 기타 방송미디어, 인터넷, 혹은 기타 전자 통신에 대한 접근의 제약
- 국제적 시그널을 막거나(jam), 제한하는 의도적 주파수 조작 (frequency manipulation)의 촉진 혹은 지지

이렇게 지정된 인물에 대한 지정의 효과는 자산과 자산의 이차 봉쇄(block)를 적시하고 있다((2)(A)항).²⁴⁹⁾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유입하려는 보다 직접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외부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을 촉진하는 것을 법안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인권법은 ‘정보의 흐름’, ‘정보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북한 내 정보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북한 내외부로의 자유로운 ‘정보흐름’의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및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있다.²⁵⁰⁾

미국은 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미국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등 두 개의 대북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북한인권법에서도 보듯이 대북 라디오방송은 미국 정부가 방송시간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249) Congress.Gov., “H.R.757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757>> (검색일: 2020.10.6.).

250) Congress.Gov., “H.R.4011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https://www.congress.gov/bill/108th-congress/house-bill/4011>> (검색일: 2020.10.7.).

정보유입 전략이다.²⁵¹⁾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정보접근 증진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정보접근 증진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로 미국 행정부가 단체활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북한인권법에 대통령은 정보유입활동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예산은 아직까지 책정되지 않았다.

둘째,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금(Grants) 제도를 통해 북한 내 인권 개선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19건의 지원금 공고를 게시하였다.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재정 지원 중 북한 내 정보유입에 대한 지원의 비중이 높다. 매년 각 기관 당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공고의 경우 북한 내외부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북한 내 대규모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탈북자나 서울 소재 기관들이 주도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의 제작과 송출도 포함된다.²⁵²⁾

셋째,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2020년의 경우 북한 인권 개선활동과 관련하여 2건의 지원 공고를 게시하였다.

251) 이원웅, 『미국의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p. 3; 김연호,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 p. 98.

252) “미 국무부 3년간 북한 관련 민간 지원 공고 31건…인권, 불법무기 겨냥,” 『미국의 소리』, 2020.4.8.

- 북한 내 인권, 책임규명, 정보접근을 위한 이해의 성명 (Statements of Interest for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DPRK):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표현과 이동,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북한 내 인권, 책임규명, 정보접근을 위한 고정 지원금(Fixed Amount Awards for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DPRK): 대북 정보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고정지원금²⁵³⁾

넷째, 미 국무부와 함께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도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NED는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1천 1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그 중 정보자유에 대한 지원은 22차례에 걸쳐 55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요 대상은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NK’ 등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을 지원하였다.²⁵⁴⁾

253) “미 국무부, ‘북한 인권 개선’ 지원금 2건 공고,” 『미국의 소리』, 2019.11.28.

254) “‘정보 자유’ 등 4년간 1천 1백만 달러 지원,” 『미국의 소리』, 2020.1.11.

〈표 IV-1〉 2019년 NED 지원 중 정보의 접근 관련 지원

단체명	프로그램	금액
Coalition for Let's Go Together	Analyzing North Korean State Media Reporting and Propaganda	100,000달러
Daily NK	Daily Internet Newspaper	400,000달러
North Korea Development	Encouraging Democratic Reform Through Radio Broadcast	280,000달러
국민통일방송(Unification Media Group)	Enhancing Access to Information in North Korea through Radio Broadcast and Media	600,000달러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	Enhancing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Radio Broadcast and Media	199,200달러
Democratic Ideas and Values	Facilitating Dialogue on Reform: 정보에 접근하려는 아시아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플랫폼 제공	90,000달러
Freedom of Information	Promot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250,000달러

출처: NED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필자가 작성.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orth Korea 2019: Advanc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Education for Defector Youth," (<https://www.ned.org/region/asia/north-korea-2019>) (검색일: 2020.10.7.).

이상의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정보에 대한 통제와 단속 및 처벌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 자유권규약을 포함하여 5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로서 조약에 규정된 정보 접근의 권리를 보호,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제2장에서 살펴본 북한 법은 국제기준에 여전히 부합하지 않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적 정보관에서 외부 세계 정보는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편 정보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견해가 주류다. 뿐만 아니라 정보는 공무에 참여할 권리와 강력한 연계성을 갖고 있고 있다. 정보가 표현의 자유, 공무에 참여할 권리와 강력한 연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외부로부터의 정보접근 증진전략으로 사회주의 체

제 유지를 기본 목표로 설정한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정보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제3장 5절의 ‘정보접근의 대응’에서 보듯이 외부의 증진전략에 대해 거부 및 주민에 대한 통제 일변도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의뢰로 국제사회의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노력의 영향에 대해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증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영향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의 실태 조사와 본 과제의 심층면접 조사 과정에서 대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이 미친 영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비공식, 비합법적 방식으로 북한 주민 스스로 외부정보를 추구, 접수, 전달하는 것이 주류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2.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추진 방향

정보의 접근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서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데, 정보접근권은 북한 주민의 전체 인권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의 결과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인권의 불가분리성이 강조되었다. 정보접근은 북한의 통제정책으로 인해 단속과 처벌 과정에서 다른 권리의 침해라는 연쇄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과 인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만 침해를 당하는 차별적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제2장에서 보듯이 정보접근은 북한 주민의 건강권 등 사회권 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보접근권의 부재는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로 인한 혜택을 누릴 권리 등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²⁵⁵⁾ 정보접근이 다른 자유권, 사회권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고려할 때 외부의 정보접근 증진전략은 행위 주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의 통제정책과 이로 인한 정보접근에 따른 다른 자유권의 연쇄적 침해를 고려할 때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가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당국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보편적 정례검토의 권고제도와 북한이 가입한 조약기구의 최종검토 의견서상의 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북한체제의 특성과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법·제도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 확대에 중점을 두고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제3장의 제1절에서 보듯이 북한당국이 관영매체에서 외부정보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관영매체에서의 외부정보 소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북한매체에서 외부정보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권고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접근 증진전략과 남북 교류협력, 평화 등 다른 가치들과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때 외부정보유입은 NGO가 주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접근이 건강권 등 사회권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대북지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북지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과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이 새겨진 쌀 포대의

255) 국제앰네스티,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p. 8; UN doc. A/HRC/17/27 (16 May 2011), para. 22.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미친 긍정적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당국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남한정부, 국제기구, 개별국가, 국내외 대북지원 민간단체 등 지원주체들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보유입의 일방향적 관점을 넘어 정보접근의 수혜 주체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보접근 전략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문의 분석에서 언급한 외부정보접근에 대한 북한 주민의 특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정보통신기기의 진화로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비공식 정보접근을 통한 남한과의 문화 접촉이 20년 이상 축적되면서 남한으로부터의 정보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문화 공유의 기반이 되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비공식 외부정보접근의 속도와 규모의 증가, 남한으로부터의 정보가 북한 주민의 문화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일방적 외부정보 유입보다는 남북한의 접촉면 확대가 효과적인 정보접근 증진전략이 될 수 있다.

남북한 인적 접촉과 교류협력의 확대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인적 접촉과 교류협력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필자 강조)하고 해외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 및 시민 단체들이 문화, 과학, 스포츠, 선정(good governance), 경제 개발 등 분야에서 인적 대화 및 교류기회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²⁵⁶⁾

256)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ara. 1223.

외부정보의 해석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문화 공유 현상을 고려할 때 남북 직접적인 접촉면 확대는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문화 공유 현상을 심화시켜 남북한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남북 대화, 교류를 통한 남북 화해 증진을 권고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남북 주민들이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남북대화는 친선 스포츠 경기, 학술·재계 교류, 북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 및 직업 실습 사업, 학생 간 교류, 적십자 등 시민 단체 간의 교류, 전문가 및 여성 단체 등의 교류, ‘자매도시’ 관계 수립, 궁극적으로 교통 및 통신망 재건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²⁵⁷⁾

개발협력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증진을 핵심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여와 정보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강화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참여는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 적절한 조직 역량, 위협의 부재 등을 필요로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참여를 위한 요구로 연결되고 참여가 확대되면 정보에 대한 접근도 확대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정치적 참여를 내세울 경우 수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선 개발협력 과정에서 참여 요소를 반영해 나가도록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개발협력의 전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때 접촉면이 확대되는 동시에 인적 접촉을 통하여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198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발전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서도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동 선언에 따르면 ‘참여’는 단순한 형식적 혹

257) *Ibid.*, para. 1222.

은 의례적인 접촉이 아니라 활동적이며, 자유로우며, 의미 있는 성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⁸⁾

국제사회에서는 개발협력 과정에서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를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의 증진과 함께 개발협력 과정에서 지식공유를 통해 전문지식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증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과정에서 전문지식 중심의 정보접근이 확대되면 정보접근과 함께 북한 주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지식공유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적 접촉을 동반한다는²⁵⁹⁾ 점에서 전문지식에 관한 정보와 함께 일반적인 남한사회에 관한 정보 접근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

개발협력 과정에서 인적 접촉, 지식공유, 북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부터 개발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산림의 황폐화로 인해 산림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취약한 의료 체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분야는 2019년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협력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산림 협력과 보건의료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인적 접촉, 지식공유, 북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북한이 잘 이행하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보접근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중 목표 16의 세부 계획 10항에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258) UN Doc. A/RES/41/128 (4 December 1986),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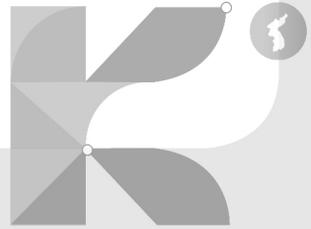
259) 이규창 외,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체육·문화예술 및 인도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168.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다.²⁶⁰⁾ 즉, 북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지원 공개 등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60) UN Doc. A/RES/70/1 (21 October 2015).

V. 결론

김수암 통일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수집, 정보의 처리, 정보의 교환, 정보의 변형, 정보에 따른 대응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연구 모형을 조작적으로 설정하고 2018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모형의 각 단계별로 이미 기존의 실태 분석이나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사실들과 함께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나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의 경우에도 북한 내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해석, 북한당국이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정보, 비공식적으로 북한 주민이 접근하는 외부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먼저 북한 주민이 접근하는 두 가지 외부정보 수집경로가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추구에 미치는 연관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으로부터 북한 주민이 접하게 되는 외부정보의 경로는 관영매체의 콘텐츠와 강연회 등의 자료이다. 북한주민들은 당국이 사상교양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정보를 통해서도 외부정보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다. 강연회 등에서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적시하는 외부정보의 내용을 보고 능동적으로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당국이 비사회주의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외부정보를 역으로 활용하여 외부정보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적인 외부정보접근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면서 관영매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저하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북한당국이 관영매체를 통한 외부정보의 콘텐츠를 한계 내에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제공하는 외부정보가 북한 주민이 외부정보를 접근하는 데 어떻게 정보로써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관 구조, 비공식적

외부정보접근의 확산이 통제와 관영매체를 통한 외부정보 제공 확대 등 당국의 대응에 미치는 연관구조를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접근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에 대해 통제 일변도로 접근하여 왔는데, 통제와 함께 관영매체를 통한 외부정보 제공의 제한된 확대 등 다양한 북한당국의 대응 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 제1절에서 보듯이 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정보와 문화적 정보로 구분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내부정보와 외부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정보는 북한당국이 제공하는 내부정보, 문화적 정보는 외부정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를 포괄하여 정보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복합적으로 추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보의 변형의 관점에서 정보가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떻게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도 ‘한류’라는 관점에서 남한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북한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하여 남한의 정보가 북한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주민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북한당국의 지속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한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이 20년 이상 축적되고 장기화되면서 호기심을 넘어 남한과의 문화 공유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신속하고 대규모 외부정보접근, 공유 및 재생산 확산은 남한과의 문화공유 현상을 보다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이상의 요소를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문제는 권리의 측면, 삶의 질의 측면, 남북한 통합의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 정보의 접근은 북한 주민이 향유해야 할 핵심 권리이지만 다른 자유권 침해와의 연관성은 핵심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북한당국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접근권리의 향유는 신체의 자유 침해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정보접근권리를 개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뇌물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상은 인권의 핵심원칙인 비차별에 위배된다. 뇌물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차별현상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보는 북한 주민의 건강권, 식량권 등 사회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을 제공할 때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대북지원 사실에 대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외부정보의 접근을 통한 남한과의 문화공유 확산 현상은 남북한 이질감 해소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남북한 통합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남북통합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근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남한문화에 대한 공유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과 남북 교류협력 및 남북통합은 상호 연계되고 강화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 인적 접촉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도 증진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증진되면 대남 우호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남북 교류협력 및 통합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측면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림, 보건의료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개발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의 참여 확대, 지식 공유사업 확대 등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이 갖는 복합적 영향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외부의 전략은 일방향적 정보유입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 남한정부, 유엔 인권 메커니즘, 개별국가, NGO 등 행위주체들의 역할 분담 아래 북한당국의 정책변화 유도, 외부정보유입,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의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시장화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접근에 대한 욕구와 접근 속도 및 규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외부정보접근의 전체 과정 변화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적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3.
- 국가인권위원회.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 고문방지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6.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편집. 『제2회 북한인권 개선공청회: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증진방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 국가인권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제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 국제엠네스티.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 세계 정보 제한 실태』. 런던: 국제엠네스티, 2016.
- 권오국. 『북한 형사법 체계 및 개정형법에 관한 연구』. 충남: 치안정책연구소, 2017.
- 박원규·이춘삼·권오국.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북한법령 연구』. 충남: 경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 보리스 그로이스 지음. 김수환 옮김. 『코뮤니스트 후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7.
- 삐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下』. 서울: 새물결, 1996.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이규창·김수경·이지순·정은미·임예준. 『북한인권백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이규창·김수암·민태은·이우태·하범식.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체육·문화예술 및 인도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이원웅.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채형복. 『국제인권법』. 서울: 높이깊이, 2009.
- 천경효·강채연·박상민·이혜원·정은미·임경훈·조용신. 『북한사회변동 2019』.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20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0.
- Amnesty International. *Connected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2016.
- Baek, Jieun. *North Korea's Hidden Revolution: How the Information Underground Is Transforming a Closed Society*.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6.
- Kretchun, Nat and Jane Kim. *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Washington D.C.: InterMedia, 2012.
- Lemieux, Victoria L. and Stephanie E. Trapnell.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for Development: A Guide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ight to Information Law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up, 2016.
- Nowak, Manfred.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2nd revised edition. Strasbourg/Arlington, Virginia: N.P. Engel, 2005.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New York/Geneva: United Nations, 2003.
- Svensson-McCarthy, Anna-Lena,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and States of Excep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ravaux Préparatoires and Case-Law of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rgans*, Hague/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 van Dijk, P. and G.J.H. van Hoof, *Theory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3rd edition,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 Williams, Martyn, *Digital Trenches: North Korea's Information Counter-Offensive*, Washington D.C.: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2. 논문

-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0권, 2014.
- _____, “북한의 정보화 실태 및 파급 영향: 한류 및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4년 2월호, 2014
- 강동완·김현정,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통일과 평화』, 7집 1호, 2015.
-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 2010.
- 김민관. “최근 북한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시사점.” 『주간 KDB 리포트』, 제890호, 2020.
- 김배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 김상겸. “정보기본권의 체계와 보장에 관한 연구-정보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0.
- 김연호.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 『KDI북한경제리뷰』, 2016년 12월호, 2016.
- 명재진·이한태.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정보화정책』, 제18권 제1호, 2011.
- 박대광·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2.
- 박진아. “인권조약상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2019.
- 서경미.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의 기본권성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2호, 2018.
- 손효중. “대북 정보유입과 북한의 변화.” 『북한』, 2017년 3월 통권 543호, 2017.
- 송인호·최귀일.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북한의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9.
- 우 정. “외부의 정보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압력수단으로 활용.” 『북한』, 2009년 2월 통권 446호, 2009.
- 이광백. “민간대북방송 진단과 제도개선 방안.”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11., 2012.
- 이명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9권 1호, 2015.

- 이민규·우형진.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문화 계발 효과와 문화 동화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8권 6호, 2004.
- 이승택.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동아법학』. 제86호, 2020.
- 이주철. “김정은 시대 북한 방송언론의 변화: 조선중앙TV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 _____. “북한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의식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0호, 2003.
- _____.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수용 태도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46호, 2008.
- _____. “조선중앙TV 2000년대 프로그램 변화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2011.
- 임석준·강동완·김현정. “북한의 한류연구: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10권 제2호, 2014.
-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 조정아. “북한주민의 여가생활.” 『KDI북한경제리뷰』. 제19권 8호, 2017.
- 홍석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44권, 2009.
- McDonagh, Maeve. “The Right to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uman Rights Law Review*. Vol. 13, 2013.
- Weeramantry, C.G.. “Access to Information: A New Human Rights. The Right to Information.”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 1994.

〈북한 자료〉

- 김일성. 『김일성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교육의 전당에 깃든 어버이사랑 인민의 대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3.
- 김지호. 『조선에 대한 이해 (문화)』.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 백옥련. 『사회주의생활문화사연구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해설논문집』.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8.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평양. 『법 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17.
- 김정옥. “규범적법문건의 명칭을 정하는 데서 나서는 립법기술적요구.” 『력사·법학』. 제48권 제4호, 2002.
- 리철호. “물절약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가물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누계 174호, 2017.

3. 기타 자료

〈언론〉

- 『길림신문』.
- 『노동신문』.
- 『데일리NK』.
- 『미국의 소리』.
-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NK경제』.

〈웹자료〉

국제인권소식 “통”. <<http://www.tongcenter.org>>.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 <<http://www.ryongnamsan.edu.kp>>.

리처드 클레이더만 홈페이지. <www.clayderman.co.uk>.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 <<http://dprktoday.com>>.

한창완 외 22인. “세계 애니메이션 백과.”

<<https://terms.naver.com/list.nhn?cid=58544&categoryId=58544>>.

ARTICLE 19. <<https://www.article19.org>>.

Comparitech. <<https://www.comparitech.com>>.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

Council of Europe. <<https://www.coe.int>>.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https://www.ned.org>>.

Reporters without Borders. <<https://rsf.org>>.

Social Progress Imperative. <<https://www.socialprogress.org>>.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http://www.oas.org>>.

We are Social & Hootsuite. <<https://wearesocial.com>>.

〈법령·법규〉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0)」.

「미주인권협약(1969)」.

「북한인권법」.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1989)」.

「유럽연합기본권헌장(2000)」.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198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1950)」.

북한 「법제정법」.

북한 「사회주의 헌법」.

북한 「인민보안단속법」.

북한 「출판법」.

북한 「형법」.

〈UN 기구 및 문서〉

OHCHR, “Fact Sheet No. 2 (Rev.1),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UN Doc. A/64/Add.1. (31 January 1947).

UN Doc. A/HRC/11/4 (30 April 2009).

UN Doc. A/HRC/17/27 (16 May 2011).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UN Doc. A/RES/41/128 (4 December 1986).

UN Doc. A/RES/59(I) (14 December 1946).

UN Doc. A/RES/70/1 (21 October 2015).
UN Doc. CCPR/C/21/Rev.1/Add.11 (31 August 2001).
UN Doc. CCPR/C/21/Rev.1/Add.13 (26 May 2004).
UN Doc. CCPR/C/21/Rev.1/Add.7 (27 August 1996).
UN Doc. CCPR/C/65/D/33/1995 (5 May 1999).
UN Doc. CCPR/C/87/D/1009/2001 (8 August 2006).
UN Doc. CCPR/C/95/D/1334/2004 (29 April 2009).
UN Doc. CCPR/C/95/D/1457/2006 (24 April 2009).
UN Doc. CCPR/C/GC/32 (23 August 2007).
UN Doc. CCPR/C/GC/34 (12 September 2011).
UN Doc. CCPR/COP/1 (2 April 1982).
UN Doc. CRC/C/PRK/CO/5 (23 October 2017).
UN Doc. E/C.12/2000/4 (11 August 2000).
UN Doc. E/C.12/GC/19 (4 February 2008).
UN Doc. E/CN.4/2000/63 (18 January 2000).
UN Doc. E/CN.4/2005/64 (17 December 2004).
UNESCO. “Brisbane Declaration: Freedom of Information, The
Right to Know (3 May 2010).”

〈판례〉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Groppera Radio AG
and Others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10890/84).
Judgment of 28 March 1990.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Társaság A
Szabadságjogokért v. Hungary (Application no. 37374/05).
Judgment of 14 April 2009.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Özgür Gündem v.

Turkey (Application no. 23144/93). Judgment of 16 March 2000.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Loiseau v. France [Translation-Extracts] (Application no. 46809/99). Judgment of 18 November 200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République tchèque (Application no. 19101/03). Judgment of 10 July 2006.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 Case of Claude Reyes et al. v. Chile. Merits. Reparations and Cost. Judgment of 19 September 2006. Series C No. 151.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Case of XYZ v. Victoria Police (General) [2010] VCAT 255. Judgment of 16 March 2010.

〈보고서·자료집〉

NK지식인연대. 『대북미디어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2011.7.5.), 2011.

Joseph E. Stiglitz. “On Liberty, the Right to Know, and Public Discourse: The Role of Transparency in Public Life, Oxford Amnesty Lecture.” January 27, 1999.

Kim, Yonho. “Cell Phones in North Korea: Has Entered the Telecommunications Revolution?”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 Voice of America Report, 2014.

OECD. *Data-driven Innovation: Big data for Growth and Well-being*. Paris: OECD, 2015.

〈인터뷰〉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 (2020.7.24.,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 (2020.7.25.,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3 (2020.7.26.,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4 (2020.7.26.,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5 (2020.7.27.,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6 (2020.7.30.,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7 (2020.8.1.,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8 (2020.8.2.,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9 (2020.8.8.,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0 (2020.8.8.,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1 (2020.7.23.,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2 (2020.7.23.,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3 (2020.7.25.,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4 (2020.7.28.,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5 (2020.7.28.,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6 (2020.7.29.,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7 (2020.7.29.,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8 (2020.8.4.,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19 (2020.8.4., 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 (2020.8.5., 통일연구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운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중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중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	----------------------	-------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 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욱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이해정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2020-27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2	홍 민 외	13,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KINU Insight

-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 2020-03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희영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